

2012. 12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aT

Monitoring Export Issues of Main Countries

주요국 수출현안 모니터링

중 국



CHAPTER

01

통관제도

제1절 통관제도 일반 1

 I. 관리체계 3

 II. 수입관리제도(법률&행정법규) 8

 III. 세관관리 33

제2절 수입 통관절차 54

 I. 수입화물의 통관절차 54

 II. 수입식품(일반)의 통관절차 55

 III. 수입식품의(품목별) 통관절차 56

통관부서 연락처 61

자료출처 및 참고자료 62

CHAPTER

02

검역제도

제1절 검역제도 일반 67

 I. 관리체계 67

 II. 검험검역제도 70

제2절 검역제도 및 기타 행정법규 80

 I. 품목별 검역제도(국가질검총국 행정법규) 80

 II. 기타 행정법규 및 주요공고 116

 III. 검험검역 관리 119

자료출처 및 참고자료 129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Monitoring Export Issues of Main Countries

CHAPTER

03

라벨링제도

제1절 라벨링제도 일반 133

제2절 품목별 라벨 표기방법 138

- I. 정량포장식품라벨통칙
GB7718-2011(중화인민공화국 위생부 2012.04.20실시) . . . 138
- II. 정량포장식품영양라벨통칙
GB28050-2011(위생부, 2013.01.01실시) 154
- III. 정량포장특수식용식품라벨통칙
GB13432-2004(국가질검총국, 2005.10.01실시) 171
- IV. 정량포장음료주라벨통칙
GB10344-2005(국가질검총국, 2006.10.01실시) 172

제3절 라벨링 사례 174

자료출처 및 참고자료 176

Monitoring Export Issues of Main Countries

CHAPTER

04

통관보류 및 억류사례

제1절 수입식품의 반품, 폐기사례 179

제2절 지식재산권 보호사례 182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통관제도

제1 절 통관제도 일반

I. 관리체계

1. 세관 관리체계

□ 세관총서

- 세관총서는 국무원 직속기구로서 전국 세관기구, 인원편제, 경비물자와 각종 세관업무를 관리하는 최고 영도기구로 현재 광주에 광동분서가 있으며, 세관총서의 파견기구로 천진과 상해에 특파원사무소가 설립됨

□ 직속세관

- 직속세관은 세관총서에서 직접 영도하며 일정 구역범위의 세관업무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세관임
 - 현재 직속세관은 41개 : 북경(北京), 천진(天津), 석가장(石家庄), 태원(太原), 호화호특(呼和浩特), 만주리(满洲里), 대련(大连), 심양(沈阳), 장춘(长春), 하얼빈(哈尔滨), 상해(上海), 남경(南京), 항주(杭州), 영파(宁波), 합비

(합肥), 복주(福州), 하문(厦門), 남창(南昌), 청도(靑島), 정주(鄭州), 무한(武漢), 장사(長沙), 광주(廣州), 심천(深圳), 공북(拱北), 산두(汕頭), 황포(黃埔), 강문(江門), 잠강(湛江), 남녕(南寧), 해구(海口), 중경(重慶), 성도(成都), 귀양(貴陽), 곤명(昆明), 라사(拉莎), 서안(西安), 란주(蘭州), 서녕(西寧), 은천(銀川), 우루무치(烏魯木齊) 등으로 31개 성, 직할시, 자치구에 분포되어 있음

□ 소속세관

- 소속세관은 직속세관에서 영도하며 구체적 세관업무를 책임지고 처리하는 세관으로 일반적으로 항구와 세관업무가 집중된 지역에 설치되었으며 현재 소속세관은 600개임

□ 세관 밀수단속 경찰기구

- 밀수범죄를 전문적으로 단속하는 경찰조직으로 세관총서와公安부의 영도를 받으며 2003년 1월 1일부터 세관밀수단속국으로 명칭을 변경

2. 세관 관리업무

□ 감독관리

- 감독관리는 세관의 4가지 기본업무의 기초이며 기타 세관의 업무도 감독 관리의 기초에서 진행
 - 세관의 감독관리는 관리제도 및 절차에 따라 출입국 운송공구, 화물, 물품의 출입국활동에 대해 실시하는 행정관리임
- 감독관리의 대상에 따라 세관 감독관리는 운송공구 감독관리, 화물 감독관리, 물품 감독관리 3개 체계로 분류되며 체계별로 규범화된 관리절차와 방법이 있음

■ 수입관련 세관 감독관리 Code ■

Code	증서내용	증서 발급기구
1	수입허가증 import licence	상무부쿼터허가증사무국
2	군민양용제품과 기술수입허가증 import licence for dualuse item and techndog-ines	상무부
6	중고전기기계제품 수입금지 Used machinery and elestrical products are on the list of prohidited import licence	
7	자동수입허가증 Automatic import licence	상무부쿼터허가증사무국
9	수입금지상품 Articles on the list of prohidited import goods	
A	입경화물통관단 Certificate of inspection for goods inward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기구
D	출/입경화물통관단(다이아몬드 반제품용) Certificate of inspection for goods inward/outward(for semifi-nished diamonde)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기구
F	멸종위기물종수입허가증명서 Import licencing certificate for endangeted species	국가멸종위기물종수출입관리사무소
I	정신약물수출입허가증 Import or export permit for psychotropic drugs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J	황금및황금제품수출입허가증 Import or export permit for gold products	중국인민은행
L	약품수출입허가증 Import or export of medicines permit licence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M	암호제품과 설비 수입허가증 Import permit for encryption products and equipment	국가암호관리국
O	자동수입허가증(전기기계제품) Automatic import licence(machiney and electrical products, whether used or not)	상무부
P	고체폐기물수입허가증 Import permit for solid wastes	국가환보총국
Q	수입약품통관단 Report of inspection of soundness on import medicines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R	수입수약통관단 Clearance form for import veterinary drugs	농업부

Code	증서내용	증서 발급기구
S	수출입농약등기증명 Import or export registration certificate for pesticides	농업부
T	은행현금조달출입경허가증 Entry or exit permit for foreign currency cash transfer and reallocation between banks	중국인민은행화폐금융국
U	합법어획채취제품통관증명 Lawful fish for products clearance certificate	농업부
W	마취약품수출입허가증 Import or export permit for narcotic drugs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X	유독화학품환경관리통과통지단 Environment control release notice for poisonous chemicals certificate of origin	국가환보총국
Z	음향제품수입허가증 Issuance permit for audio/or video products	광전총국
e	관세쿼터외 특혜세율수입목화쿼터증 Quota certificate for importing cotton beyond the tariff quota at a preferential rate	상무부쿼터허가증사무국
q	국별관세쿼터증명 Country-specific tariff quota certificates	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
t	관세쿼터증명 Certificate of customs quota	상무부쿼터허가증사무국
v	자동수입허가증(가공무역) Automatic import licence(processing trade volume)	상무부쿼터허가증사무국

※ 자료원 : 2012년 중화인민공화국세관수출입세칙

□ 세금징수

- 세금징수는 대외무역 관리제도의 중요한 보조적 수단으로 세금징수는 관세징수와 수입부분에 대한 세관 대리징수가 있음
- 세관은 수입 화물과 물품에 대해 관세를 징수하는 동시에 기타 기구를 대리하여 증치세, 소비세, 선박톤세 등 수입부분세금을 징수함

□ 밀수단속

- 밀수단속은 세관에서 감독관리와 세금징수 등 업무를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한

보장조치임

- “세관법”에는 “국가에서 연합 밀수단속, 통일적 처리, 종합적 처리의 밀수단속 체제를 실시하고 세관은 밀수단속을 책임지고 조직, 협조, 관리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

□ 세관통계

- 세관통계는 세관의 감독관리, 세금징수의 기초에서 진행하며 세관통계는 실제 수출입화물을 대상으로 수출입화물 통관서 또는 세관에서 비준한 기타 신고서류를 수집, 정리, 가공, 처리하여 수출입화물의 품목, 수량(중량), 가격, 국가(지역), 업체, 목적지, 화물 공급원, 무역방식, 운송방식, 세관별 등의 항목을 각각 종합 분석함

3. 관리 법률체계

- 중국의 수입관리제도는 국가주석 령(令)으로 발표되는 <중화인민공화국대외무역법>, <중화인민공화국해관법> 등 국가법,
- 국무원 령(令)으로 발표되는 <중화인민공화국화물수출입관리조례>, <중화인민공화국기술수출입실시조례> 등 행정법규,
- 주관부서 령(令)으로 발표되는 <중화인민공화국해관수출입화물징세관리방법>, <중화인민공화국세관수출입화물검사관리방법> 등 규장제도로 구성

■ 중국 수출입 관리제도의 법률체제 ■

구분	분류	주요법규
1	법 률 (전인대 또는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제정하고 국가주석이 반포하는 규범성 문건의 총칭)	- 대외무역법 - 세관법 - 특허법 - 상표법 - 저작권법
2	행정법규 (국무원에서 헌법과 기타 관련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국무원 직책범위에서 제정하	- 기술수출입관리조례 - 화물수출입관리조례 - 저작권법실시조례

구분	분류	주요법규
	는 기본 행정관리 규범성 문건의 총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표법실시조례 - 수출입관세조례 - 지식재산권세관보호조례 - 보장조치조례 - 반보조조례 - 반덤핑조례 - 수출입화물원산지조례 - 세관행정처벌조례 - 선박톤세잠행조례 - 외환관리조례
3	부서규장제도 (국무원 부서에서 법률과 국무원의 행정법규, 결정과 명령에 의해 부서 직책범위에서 발표하는 규범성 문건의 총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수출입화물징세관리방법 - 세관수출입화물검사관리방법 - 세관수출입화물관세지급필가격확정방법 - 세관수출입화물감면세관리방법 - 세관지식재산권보호조례실시방법 - 화물자동수입허가증관리방법 - 대외무역경영자등록관리방법 - 농산물수입관세쿼터관리잠행방법 - 화물수입허가증관리방법 - 수입약품관리방법 - 정신약품관리방법 - 방사성약품관리방법 - 수입가축약품관리방법 - 외상투자기업자동수입허가관리 실시세칙

II. 수입관리제도(법률&행정법규)

1. 국가 법률

1) 중화인민공화국대외무역법(국가주석 령 15호, 2004.07.01)

대외무역경영자 관리

대외무역경영자 등록

- 화물&기술 수출입에 종사하는 경영자는 국무원대외경제무역주관부서 혹은

기타 위탁기구에 등록(备案)登記. 단 등록 등기가 필요 없다고 법률, 행정법규와 국무원대외경제무역주관부서에서 규정한 경우 제외(9조)

Ⅰ 대외무역경영자등록시스템 Ⅰ

1. 등기표 작성

- 대외무역경영업체는 상무부 웹사이트를 통해 “대외무역경영업체등기표”를 다운로드하거나 소재지 등록기구로부터 수령,
- 대외무역경영업체는 모든 사항의 정보를 “대외무역경영업체등기표”에 기입하며 내용이 정확하고 진실하다는 것을 확인하며, 동시에 “대외무역경영업체등기표” 뒷면의 조항을 열람하며 법인대표 또는 개인사업자가 사인하고 날인

2. 등록서류 제출

- 대외무역경영업체등록표
- 영업집조 원본 및 복사본(공인)
- 조직기구대마중 원본 및 사본(공인)
- 외상투자기업은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 원본 및 사본 제출
- 공상등기를 한 개인사업자(독자경영자)는 공증기구의 재산공증증명을 제출, 공상등기를 한 외국기업은 공증기구의 자금신용증명을 제출

3. 자료접수

- 등록기구는 대외무역경영업체가 제출한 상기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내에 등록수속을 밟아야 하며 “대외무역경영업체등록표”에 등록인장을 날인해야 함
- 대외무역경영업체는 등록인장을 날인한 “대외무역경영업체등록표”를 30일 내에 소재지 세관, 검험검역, 외환관리, 세무 등 부서에 제출하여 대외무역업무와 필요한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대외무역경영업체등록표”는 자동으로 실효됨

※ 자료원 : <http://www.mofcom.gov.cn>

○ 국영무역업체 관리

- 부분 화물의 수출입은 국영무역관리를 실시, 권한을 수여받은 기업에서만 수출입경영. 단 국가가 국영무역관리화물의 부분 할당량을 권한이 없는 기업에 허용한 경우 제외(11조)

○ 대외무역업무의 위탁 및 대리

- 대외무역경영자는 타인의 위탁을 접수할 수 있으며 경영범위 내에서 대외무역업무 대리(대외무역법 12조항)

□ 화물&기술수출입 관리

○ 수출입허가

- 국가는 화물과 기술의 자유수출입을 허가. 단 법률, 행정법규에서 별도 규정한 경우 제외(14조)
- 국무원대외경제무역주관부서는 수출입상황 모니터링수요차원에서 부분 자유수출입화물에 대하여 수출입자동허가 실행, 자동허가 실행 수출입화물은 세관신고 전에 국무원대외경제무역주관부서 혹은 위탁기구에 신청(15조)

■ 2012년 자동수입 허가관리 농산물 ■

품목	HS코드	비고
소고기	0201 1000 10	신선 혹은 냉장
	0201 1000 90	
	0201 2000 10	
	0201 2000 90	
	0201 3000 10	
	0201 3000 90	
	0202 1000 10	냉동
	0202 1000 90	
	0202 2000 10	
	0202 2000 90	
	0202 3000 10	
	0202 3000 90	
	0206 1000 00	내장 등 기타부위
	0206 2100 00	
	0206 2200 00	
	0206 2900 00	
돼지고기	0203 1110 10	신선 혹은 냉장
	0203 1110 90	
	0203 1190 10	
	0203 1190 90	
	0203 1200 10	
	0203 1200 90	
	0203 1900 10	
	0203 1900 90	
	0203 2110 10	냉동
	0203 2110 90	
0203 2190 10		

품목	HS코드	비고	
	0203 2190 90 0203 2200 10 0203 2200 90 0203 2900 10 0203 2900 90		
	0206 3000 00 0206 4100 00 0206 4900 00	내장 등 기타부위	
양고기	0204 1000 00 0204 2100 00 0204 2200 00 0204 2300 00	신선 혹은 냉장 면양류	
	0204 3000 00 0204 4100 00 0204 4200 00 0204 4300 00	냉동 면양류	
	0204 5000 00	신선 냉장 냉동 산양	
	0206 8000 10 0206 9000 10	내장 등 기타부위	
	닭고기	0207 1311 00 0207 1319 00 0207 1321 00 0207 1329 00	신선 혹은 냉장
		0207 1411 00 0207 1419 00 0207 1421 00 0207 1422 00 0207 1429 00 0504 0021 00	냉동
신선우유	0401 1000 00 0401 2000 00 0401 4000 00 0401 5000 00	설탕 단물질 미 첨가	
분유	0402 1000 00 0402 2100 00 0402 2900 00		
	1901 1000 10	영유아용 조제분유	
유청	0404 1000 00		
대두	1201 1000 00 1201 9010 00		

품목	HS코드	비고
	1201 9020 00 1201 9030 00 1201 9090 00	
유채씨	1205 1010 00 1205 1090 00 1205 9010 00 1205 9090 00	
식용유	1507 1000 00 1507 9000 00	대두유
	1509 1000 00 1509 9000 00 1510 0000 00	올리브유
	1511 1000 00 1511 9010 00 1511 9020 01 1511 9090 00	팜유
	1514 1100 00 1514 1900 00 1514 9110 00 1514 9190 00 1514 9900 00	겨자유
옥수수채강	2303 3000 10	
대두박	2304 0010 00 2304 0090 00	
담배	2401 2090 00 2401 3000 00 2402 1000 00 2402 2000 00 2402 9000 01 2402 9000 09 2403 1100 00 2403 1900 00 2403 9100 10 2403 9100 90 2403 9900 10	담배
	4813 1000 00 4813 2000 00 4813 9000 00 5601 2210 00	담배 종이 필터 등

※ 자료원 : <http://www.mofcom.gov.cn>

- 자유수출입에 속하는 기술은 국무원대외경제무역주관부서 혹은 위탁기구에 계약등록(备案) 등기(登记)(15조)

Ⅱ 수출입 금지&제한 상황 Ⅱ

구분	내 용
16조	1. 국가안전, 사회공공이익 혹은 공중도덕보호를 위하여 수출입제한&금지 수요 시 2. 인체건강&안전보호, 동식물생명&건강보호, 환경보호를 위하여 수출입제한&금지 수요 시 3. 황금 혹은 은 수출입관련조치 실시를 위하여 수출입제한&금지 수요 시 4. 국내공급 부족 혹은 고갈가능 자연자원 보호를 위하여 수출제한&금지 수요 시 5. 수출대상국가 혹은 지역시장의 용량 제한으로 수출제한 수요 시 6. 수출경영질서에 엄중한 혼란이 나타나 수출제한 수요 시 7. 국내특정산업의 구축을 위하여 수입제한 수요 시 8. 농업, 목축업, 어업제품에 대하여 수입제한 필요 시 9. 국제금융지위와 국제수지균형 보장을 위하여 수출입제한&금지 수요 시 10.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기타 수출입제한&금지 수요 시 11. 국제조약, 협정의 규정에 따라 기타 수출입제한&금지 수요 시
17조	- 국가안보차원에서 핵분열, 핵융합물질 혹은 파생물질의 화물, 기술수출입 및 무기, 탄약 혹은 기타 군수물자 관련 수출입에 대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전시 혹은 국제평화안전의 보호를 위하여 화물, 기술수출입에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수출입 제한화물의 관리

- 국가는 수출입을 제한하는 화물에 대하여 쿼터(配額), 허가증(许可证) 등 방식으로 관리하며 수출입을 제한하는 기술에 대하여 허가증 관리를 실행
- 쿼터 및 허가증관리를 하는 화물, 기술은 국무원규정에 따라 국무원대외무역주관부서에서 직접 혹은 국무원 기타 관련부서와 공동으로 허가를 해야 함.
- 국가는 부분 수입화물에 대하여 관세쿼터(关税配額)관리를 실행(19조)

○ 쿼터할당

- 수출입화물의 쿼터, 관세쿼터는 국무원대외무역주관부서 혹은 국무원 기타 관련부서에서 직책범위 내에 공개, 공평, 공정과 효익 원칙하에 할당(20조)

○ 상품검사

- 국가는 통일적인 상품합격평정제도 실행, 관련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수출입상품에 인증, 검험, 검역 및 원산지관리 진행(21/22조)

□ 지식재산권 보호

- 수입화물이 지식재산권 침해로 대외무역질서를 해치는 경우 국무원대외무역주 관부서는 일정기한 내 관련화물의 수입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음(29조)

□ 대외무역질서 관리

- 대외무역경영에서 독점행위로 시장공평경쟁을 해치는 경우 반독점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 대외무역경영에서 부당경쟁행위는 반부당경쟁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처리(32/33조)

■ 대외무역경영원칙 금지사항(34조) ■

1. 수출입화물의 원산지표기 위변조, 수출입화물의 원산지증명, 수출입허가증, 수출입쿼터증 명 혹은 기타증명문서의 위변조 및 매매
2. 수출환급세 편취
3. 밀수
4.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인증, 검험, 검역 도피
5.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기타행위 위반

2) 중화인민공화국세관법(국가주석 령 35호, 2000.07.08)

□ 수입화물 관리

- 세관신고
 - 수입화물의 수령인은 운송도구 입경신고일로부터 14일내에 세관에 사실대로 신고하고 수입허가증 및 관련 증서를 제출, 기한 초과 시 체납금 징수(24조)
 - 세관에서 통관신고 접수 후 통관신고서 및 내용은 수정, 철회하지 못하며 확실한 정당사유가 있고 세관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26조)
 - 수입화물은 세관의 검사를 받으며 세관 검사 시 수령인은 현장에 화물의 이동,

개봉, 재포장을 책임, 세관은 필요시 직접검사를 진행. 수령인의 신청과 함께 세관총서 허가 시 검사 면제(28조)

- 세관의 특별 허가 외 수입화물은 수령인이 세금납부 혹은 담보제공 후 세관에서 날인하여 통관허가(29조)

○ 신고기한

- 수입화물 수령인이 운송도구 입경신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세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수입화물을 처리하며 소득은 각항비용과 세금을 공제 후 여액 발생 시 처리일로부터 1년 내에 수령인 신청에 따라 반환
- 국가가 수입을 제한하는 화물은 관련 허가증서 제공 시 반환가능, 기한 내 신청하지 않거나 관련 허가증서 미 제공 시 여액 국고로 상납
- 과오인도가 확실한 화물은 하역일로부터 3개월 사이에 반송 혹은 수입수속을 받아야하며 필요시에는 세관 허가 하에 3개월 연장가능
- 수령인 혹은 소유인이 수입화물 포기성명 시 세관은 법에 따라 매각처리하며 소득은 각항 비용 공제 후 국고로 상납(30조)

○ 가공무역화물

- 가공무역 종사자는 관련 허가문서와 가공무역계약으로 세관에 등록(备案)해야하며 가공무역 완성품의 원재료 소비량은 세관에서 관련규정에 따라 사정
- 가공무역 완성품은 규정 기한 내에 수출해야하며 사용한 원재료가 국가 규정에 보세화물로 허가한 경우 세관에서 심사 후 장부에서 삭제하며 세금을 우선 징수한 화물은 세금 환급
- 가공무역으로 수입한 보세화물이 내수판매 시 세관은 내수판매허가문서를 근거로 보세화물에 대하여 세금을 징수, 국가가 제한규정이 있는 보세화물은 수입허가증서 제출(33조)

○ 통관지점

- 수입화물은 입경지역 세관에서 통관수속을 받아야하나 수령인의 신청과 세관의 동의하에 세관이 설치되어 있는 지정운송지역에서 통관수속을 받을 수 있음(35조)

○ 기타사항

- 국가가 수출입금지 혹은 제한한 화물, 물품에 대하여 세관은 법률, 행정법규, 국무원 규정 혹은 국무원관련부서에서 법률과 행정법규가 수여한 권한에 따라 내린 규정 등을 근거로 감독관리 실행(40조)
- 수출입화물의 원산지는 국가 관련 원산지규정에 따라 확정하며 상품분류 역시 국가의 관련 상품분류규정에 따라 확정(41/42조)

□ 관세

○ 관세지급필가격(完税价格)의 산정

- 수입화물의 관세지급필가격은 세관에서 화물이 거래가격을 기초로 확정, 거래가격 확정이 어려운 경우 세관에서 법에 따라 사정
- 수입화물의 관세지급필가격은 화물가치, 수입항 하역전 운송비 및 관련비용, 보험료 등 포함(55조)

■ 감·면세 대상 ■

구분	내 용
56조	1. 상업가치가 없는 광고물 혹은 샘플 2. 외국정부, 국제조직의 무상증정 물자 3. 세관 통과 전에 파손 혹은 손실을 입은 화물 4. 규정액수 내 물품 5. 법률이 규정한 기타 감, 면세 화물, 물품 6. 중국이 체결 혹은 참가한 국제조약이 규정한 감, 면세 화물, 물품
57조	- 국무원 규정 특정지역, 특정기업 혹은 특정용도의 수입화물
58조	- 56/57조항 외 국무원이 정한 임시 감, 면세화물

○ 세금납부

- 수입화물의 납세의무자는 세관 세금납부서 발행일로부터 15일내에 납부. 기한을 초과 시 체납금 징수. 3개월경과 시 은행예금 공제, 수입화물 매각, 기타 재산 매각 등 강제조치로 집행(60조)
- 수입화물의 납세의무자가 규정한 납세기한 내에 과세화물 및 기타 재산에 대

한 이전, 은닉 징조가 있는 경우 세관은 납세의무자에게 담보를 요구하며 담보 미제공시 예금공제, 화물 자산 억류 등 보전조치(61조)

2. 국무원 행정법규

1) 중화인민공화국화물수출입관리조례(국무원 령 332호, 2002.01.01실시)

수입금지 화물

- 대외무역법 제17조 규정상 화물은 수입을 금지하며 기타법률, 행정법규가 수입을 금지한 규정은 규정에 따라 처리. 수입금지화물목록은 국무원대외경제무역주관부서서 국무원경제관리부서와 회동하여 제정 및 조정 발표(8조)

■ 수입금지화물목록 ■

구분	발표시간	주관부서	비고
1차	2001.12.20	대외무역경제합작부	호골, 서우각, 아편 외 화학제품 등 7항
	http://wms.mofcom.gov.cn/aarticle/zcfb/j/z/200501/20050100330045.html		
2차	2001.12.27	대외무역경제합작부	중고 기계, 전자제품 68항
	http://wms.mofcom.gov.cn/aarticle/zcfb/j/z/200501/20050100330053.html		
3차	2001.12.23	대외무역경제합작부	폐기물 18항
	http://wms.mofcom.gov.cn/aarticle/zcfb/j/z/200208/20020800036838.html		
4차	2002.07.03	대외무역경제합작부	폐기물 16항
	http://wms.mofcom.gov.cn/aarticle/zcfb/j/z/200208/20020800036915.html		
5차	2002.07.03	대외무역경제합작부	폐기 기계, 전자제품 21항
	http://wms.mofcom.gov.cn/aarticle/zcfb/j/z/200208/20020800036915.html		
6차	2005.12.31	상무부	화학제품 17항
	http://wms.mofcom.gov.cn/aarticle/zcfb/j/z/200512/20051201262360.html		

※ 자료원 : <http://www.mofcom.gov.cn>

수입제한 화물

- 대외무역법 제16조 1, 4, 5, 6, 7항 규정상 화물은 수입을 제한. 기타법률, 행정

법규가 수입을 규제한 규정은 규정에 따라 처리. 수입제한화물목록은 국무원대외경제무역주관부서서 국무원경제관리부서와 회동하여 제정 및 조정 발표(10조)

- 국가에서 수량제한을 규정한 수입제한화물은 쿼터(配额)관리를 실행하며 기타 수입제한화물은 허가증(许可证)관리를 실행, 관세쿼터(关税配额)관리 수입화물은 별도 규정에 따라 집행(관세쿼터관리화물 참조)(11조)

👉 쿼터관리 화물

- 쿼터관리를 실행하는 수입제한화물은 국무원대외경제무역주관부서와 국무원경제관리부서(이하 수입쿼터관리부서)에서 국무원규정에 따라 직책을 구분하여 관리(12조)

■ 쿼터관리 수입제한화물의 쿼터총량 발표 및 할당(13조) ■

일 시	내 용	비 고
~7월31일	차 연도 수입쿼터총량 발표	수입쿼터관리부서
8월1일~31일	차 연도 수입쿼터 신청	수입쿼터관리부서
~10월31일	차 연도 수입쿼터 할당	수입쿼터관리부서

■ 수입쿼터관리부서 수입쿼터 할당원칙(16조) ■

1. 신청인의 수입실적
2. 과거 할당 쿼터의 충분한 사용여부
3. 신청인의 생산능력, 경영규모, 판매상황
4. 신규 수입경영자의 신청 상황
5. 신청쿼터의 물량상황
6. 기타요소

- 수입경영자는 수입쿼터관리부서에서 발급한 쿼터증명으로 세관에 통관, 검사 신청. 미사용 연도쿼터는 9월 1일전에 수입쿼터관리부서에 반납(17/18조)

☞ 허가증관리 화물

- 허가증관리를 실행하는 수입제한화물은 수입경영자가 국무원대외경제무역관리부서 혹은 국무원관련부서(이하 수입허가증관리부서)에 신청. 수입허가증관리부서는 신청일로부터 30일내에 허가여부를 결정. 수입경영자는 수입허가증관리부서에서 발급한 수입허가증으로 세관에 통관, 검사 신청(19조)

■ 2012년 수입허가증관리화물 ■

No	품목	내용	비고
1	화학공업설비	3항 (HS 코드별)	http://wms.mofcom.gov.cn/aarticle/zcfb/c/201112/20111207910199.html
2	금속제련설비	2항 (HS 코드별)	
3	공정기계류	17항 (HS 코드별)	
4	크레인운송설비	6항 (HS 코드별)	
5	제지설비	3항 (HS 코드별)	
6	전력전기설비	20항 (HS 코드별)	
7	식품가공&포장설비	8항 (HS 코드별)	
8	농업기계류	4항 (HS 코드별)	
9	인쇄기계류	7항 (HS 코드별)	
10	방직기계류	4항 (HS 코드별)	
11	선박류	9항 (HS 코드별)	
12	토너	1항 (HS 코드별)	
13	오존층 소모물질	48항 (HS 코드별)	

※ 자료원 : <http://www.mofcom.gov.cn>

□ 자유수입 화물

- 자유수입화물의 수입은 제한을 받지 않으며 화물수입상황 모니터링차원에서 국무원대외무역주관부서는 부분 자유수입화물에 대하여 자동수입허가증관리를 실행(21/22/23조)
- 자동수입허가증관리화물은 수입경영자가 세관신고 전에 국무원대외경제무역관리부서 혹은 국무원 관련 경제관리부서에 자동수입허가신청을 하며 관리부서는 신청접수 즉시 자동허가증명을 발급, 특수상황 시 10일내 발급, 수입경영자

는 장동수입허가증명으로 세관에 통관신고(24조)

□ 관세쿼터관리 화물

- 관세쿼터관리를 실행하는 수입화물목록은 국무원대외경제무역주관부서서 국무원관련경제관리부서와 회동하여 제정 및 조정 발표. 관세쿼터 내 수입화물은 쿼터 내 관세 세율 적용. 관세쿼터 외 수입화물은 쿼터 외 관세세율 적용(25/26조)

■ 2012년 농산물 수입관세 할당량과 신청조건 ■

No	품목	할당량	국영무역	신청조건
1	밀	963.6	90%	1) 국영무역업체 2) 국가비축기능의 중앙업체 3) 2011년 수입실적이 있는 업체 4) 일가공량 400톤 이상의 생산업체 5) 2011년 수입실적이 없지만 수출입 경영권이 있으며 가공무역 생산능력 증명이 있고 밀을 원료로 하는 가공무역업체
2	옥수수	720	60%	1) 국영무역업체 2) 국가비축기능의 중앙업체 3) 2011년 수입실적이 있는 업체 4) 옥수수를 원료로 연간 수요량이 5만 톤 이상인 배합사료 생산업체 5) 옥수수를 원료로 연간 수요량이 10만 톤 이상인 기타 생산업체 6) 2011년 수입실적이 없지만 수출입 경영권이 있으며 가공무역 생산능력 증명이 있고 옥수수를 원료로 하는 가공무역업체
3	쌀	532 (장립: 266/ 중단립: 266)	50%	1) 국영무역업체 2) 국가비축기능의 중앙업체 3) 2011년 수입실적이 있는 업체 4) 식량 도소매자격이 있는 연간 매출액 1억 위안 이상 식량업체 5) 식량 연간 수출입액이 2,500만 달러 이상의 무역업체 6) 2011년 수입실적이 없지만 수출입 경영권이 있으며 가공무역 생산능력 증명이 있고 벼와 쌀을 원료로 하는 가공무역업체 ※ 장립, 중단립 구분신청
4	목화	89.4	33%	1) 국영무역업체 2) 2011년 수입실적이 있는 업체 3) 방적설비 5만 방추 이상의 면방적업체

No	품목	할당량	국영무역	신청조건
5	설탕	194.5	70%	1) 국영무역업체 2) 국가비축기능의 중앙업체 3) 2011년 설탕 관세할당이 있으며 수입실적이 있는 업체 4) 일원당가공량≥600톤, 등록자본금≥1,000만 위안, 연간 매출액≥4.5억위안인 제당업체 5) 설탕을 원료로 가공무역에 종사하는 업체
6	양모	28.7		1) 2011년 양모, 섬수모 관세할당이 있고 수입실적이 있는 업체 & 신설 가동한 양모, 섬수모 가공능력 5,000톤 이상 업체 2) 2012년 1월 1일 전에 공상관리부서에 등록하고 연도 검사를 통과한 업체
7	섬수모	8.0		3) 전년도 세관, 공상, 세무, 품질검험, 외환, 사회보장, 환경보호 등에서 위법기록이 없는 업체 4) “농산물수입관세할당관리임시시행방법”, “2011년 양모, 섬수모 수입관세할당관리실시세칙”, “2011년 양모, 섬수모 수입국가별관세할당관리실시세칙”을 위반하지 않은 업체

※ 자료원 : <http://www.mofcom.gov.cn>

■ 2012년 관세쿼터관리 농산물 수입관세 ■

No	품목	HS 코드	할당 내 세율	할당 외 세율	
				최혜국	일반
1	밀	10011100	1	65	180
		10011900			
		10019100			
		10019900			
2	옥수수	10051000	1	20	180
		10059000		65	
3	쌀	10061011	1	65	180
		10061019			
		10061091			
		10061099			
		10062010			
		10062090			
		10063010			
		10063090			
4	목화	52010000	1	40	125
		52030000			

No	품목	HS 코드	할당 내 세율	할당 외 세율	
				최혜국	일반
5	설탕	17011200	15	50	125
		17011300			
		17011400			
		17019100			
		17019910			
		17019920			
17019990					
6	양모	51011100	1	38	50
		51011900			
		51012100			
		51012900			
		51013000			
		51031010			
7	섬수모	51051000	3	38	50
		51052100			
		51052900			

※ 자료원 : 2012년 중화인민공화국세관수출입세칙

■ 관세쿼터관리 화물의 관세쿼터총량 발표 및 할당(27/29조) ■

일 시	내 용	비 고
9월15일~10월14일	차 연도 관세쿼터총량 발표	수입쿼터관리부서
10월15일~10월30일	차 연도 관세쿼터 신청	수입쿼터관리부서
~12월31일	차 연도 관세쿼터 할당여부 확정	수입쿼터관리부서

- 수입경영자는 수입쿼터관리부서에서 발급한 관세쿼터증명으로 세관에 통관, 검사 신청. 미사용 연도쿼터는 9월 15일전에 수입쿼터관리부서에 반납(30/31조)

□ 국영무역 및 지정경영관리

☞ 국영무역관리

- 국가는 부분화물의 수출입에 대하여 국영무역관리를 실시하며 국영무역관리화물목록과 국영무역기업목록은 국무원대외경제무역주관부서서 국무원경제관리부서와 회동하여 제정 및 조정 발표(45/46조)

Ⅱ 중국의 국영무역관리 농산물목록 Ⅱ

No	품목	HS코드
1	밀관련	10011000 / 10019010 / 10019090 / 11010000 / 11031100 / 11032100
2	옥수수관련	10051000 / 10059000 / 11022000 / 11031300 / 11042300
3	쌀관련	10061011 / 10061019 / 10061091 / 10061099 / 10062010 / 10062090 10063010 / 10063090 / 10064010 / 10064090 / 11023010 / 11023090 11031921 / 11031929
4	대두유	15071000 / 15079000
5	팜유	15111000 / 15119010 / 15119090
6	겨자유	15141010 / 15141090 / 15149110 / 15149190 / 15149900
7	설탕	17011100 / 17011200 / 17019100 / 17019910 / 17019920 / 17019990
8	담배	24011010 / 24011090 / 24012010 / 24012090 / 24013000 / 24021000 24022000 / 24029000 / 24031000 / 24039100 / 24039900 / 48131000 48132000 / 48139000 / 55020010 / 56012210
9	목화	52010000 / 52030000

※ 자료원 : <http://www.mofcom.gov.cn>

Ⅱ 중국의 국영무역 농산물 수입업체목록 Ⅱ

No	품목	업체명
1	식량	- 중국양유식품진출구(집단)유한공사(中国粮油食品进出口(集团)有限公司)
2	식용유	- 중국양유식품진출구(집단)유한공사(中国粮油食品进出口(集团)有限公司) - 중국토산축산진출구총공사(中国土产畜产进出口总公司) - 중국남광진출구총공사(中国南光进出口总公司) - 중국양유(집단)공사(中谷粮油(集团)公司) - 화간물자유한공사(华垦物资有限公司) - 교건공무투자발전유한공사(侨建工贸投资发展有限公司)
3	설탕	- 중국양유식품진출구(집단)유한공사(中国粮油食品进出口(集团)有限公司) - 중국출구상품기지건설총공사(中国出口商品基地建设总公司) - 중국당업주류집단공사(中国糖业酒类集团公司) - 중국상업대외무역총공사(中国商业对外贸易总公司)
4	담배	- 중국연초진출품(집단)공사(中国烟草进出口(集团)公司)
5	목화	- 중국방직품진출구총공사(中国纺织品进出口总公司) - 북경구달방직집단공사(北京九达纺织集团公司) - 천진방직공업공소공사(天津纺织工业供销公司) - 상해방직원료공사(上海纺织原料公司)

※ 자료원 : <http://www.mofcom.gov.cn>

- 국영무역관리 화물의 부분물량은 국영무역기업 외 타 기업에서도 수출입을 허용(47조)
 - ☞ 지정경영관리 : 중국이 WTO 가입과 함께 3년 사이에 지정경영을 개방키로하여 2004년 12월 11일자로 지정경영 취소
- 관리조례 47조항이 규정한 상황 외 국영무역기업목록 외 기업과 조직은 국영무역관리를 실행하는 화물의 수출입무역에 종사하지 못함(51조)

□ 수출입모니터링 및 임시조치

- 국가는 국제수지균형을 위하여 수출입화물의 가치 혹은 수량에 대하여 임시제한조치 실시(54조)
- 국가는 국내 특정산업의 구축을 위하여 현행조치 외 임시 수입제한 혹은 금지조치 실시(55조)
- 국가는 이하조치 집행에 있어서 필요시 모든 농수산물에 대하여 임시 수입제한조치 실시(56조)
 - 동일제품 혹은 직접경쟁제품의 국내생산 혹은 판매에 제한조치 실시
 - 소비보조형식으로 국내 과잉 동일제품 혹은 직접경쟁제품 해소
 - 완전 혹은 주로 수입농수산물로 형성한 동물제품에 제한조치 실시

2)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관세조례(국무원 령 392호, 2004.01.01실시)

□ 수입화물의 관세세율

☞ 관세세율 설치

- 수입관세로는 최혜국세율, 협정세율, 특혜세율, 일반세율, 관세쿼터세율 등을 설치하며 수입화물에 대하여 일정기한 내 잠정세율을 실행할 수 있음(9조)

☞ 관세세율 적용

- 최혜국세율 적용범위 : 공동으로 최혜국대우를 적용하는 세계무역조직성원이

원산지인 수입화물; 중화인민공화국과 상호 최혜국대우를 부여하는 조항이 포함된 양자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 혹은 지역이 원산지인 수입화물, 원산지가 중화인민공화국경내인 수입화물

- 협정세율 적용범위 : 중화인민공화국과 관세혜택조항을 포함한 지역성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 혹은 지역이 원산지인 수입화물
- 특혜세율 적용범위 : 중화인민공화국과 특수관세혜택조항을 포함한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 혹은 지역이 원산지인 수입화물
- 일반세율 적용범위 : 최혜국, 협정, 특혜세율 외 국가 혹은 지역이 원산지인 수입화물과 원산지불명 수입화물(10조)

☞ 잠정세율 및 관세쿼터세율 적용

- 최혜국세율을 적용하는 수입화물이 잠정세율이 있는 경우 잠정세율 적용; 협정세율, 특혜세율을 적용하는 수입화물이 잠정세율이 있는 경우 낮은 세율로 적용;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수입화물은 잠정세율 적용하지 않음(11조)
- 국가규정에 따라 관세쿼터관리화물은 관세쿼터 내는 관세쿼터세율 적용, 관세쿼터 외는 10/11조항 규정에 따라 집행(12조)

☞ 반덤핑 조치 및 보복성 관세 적용

- 관련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수입화물에 반덤핑, 반보조, 보장조치를 취할 시 세율은 <중화인민공화국반덤핑조례>, <중화인민공화국반보조조례>, <중화인민공화국보장조치조례>의 규정에 따라 적용(13조)
- 중화인민공화국과 체결 혹은 공동으로 참여한 무역협정 및 관련협정을 어기고 중화인민공화국과의 무역에서 금지, 제한, 관세추징 및 기타 정상무역에 영향을 주는 조치를 취할 경우 원산지가 기 국가 혹은 지역인 수입화물에 대하여 보복성관세를 징수할 수 있으며 보복성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14조)

☞ 관세세율 적용시점

- 수입화물은 수입신고일자 실시세율을 적용, 세관 승인 하에 사전 신고한 수입화

물은 운송도구 입경신고일자 실시세율 적용(15조)

■ 납세수속일자 실시세율 적용 상황(16조) ■

1. 허가를 받고 반출 하지 않아도 되는 보세화물
2. 허가를 받고 양도 및 기타 용도로 전이한 감, 면세화물로
3. 허가를 받고 반출하지 않아도 되는 임시 입경화물로
4. 임대화물, 세금분할납부화물

□ 수입화물의 관세지급필가액

■ 수입화물 거래가격 부합조건(18조) ■

1. 구매자가 수입화물에 대한 처리 및 사용에 제한이 없어야함. (단 법률, 행정법규가 실시한 제한 및 수입화물의 판매지역에 대한 제한과 화물가치에 실질적인 영향이 없는 제한은 제외)
2. 거래가격 확정이 불가능한 요소가 없어야함
3. 판매자는 구매자가 수입화물을 판매, 처리 및 사용하여 발생한 수익에서 직접 혹은 간접적 수익이 없어야함, 단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조례 19/20조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 가능해야함.
4. 매매쌍방은 특수관계가 없어야함, 단 특수관계시 거래가격에 영향 주지 말아야함

■ 관세지급필가액 포함사항(19조) ■

1. 구매자가 부담하는 구매수수료 외 수수료
2. 판매자가 부담하는 수입화물의 일부로 간주되는 용기비용
3. 구매자가 부담하는 포장재비용과 포장노동력비용
4. 수입화물의 생산과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판매와 관련된 구매자가 무료 혹은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되어 적당한 비율로 부담하는 부품, 도구, 주형, 소모재 및 유사화물 대금 및 경외 개발, 설계 등 관련 서비스비용
5. 수입화물이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판매조건으로 구매자가 지불해야하는 수입화물과 관련된 특허사용비
6. 판매자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구매자로부터 화물이 수입 후 판매, 처리 혹은 사용에서 얻은 수익

■ 관세지급필가격 불포함사항(20조) ■

1. 작업장, 기계, 설비 등 화물 수입 후 구축, 설치, 조립, 유지보수 등 비용
2. 수입화물이 수입지점에 도착하여 하역 후 운송 및 관련비용, 보험료
3. 수입관세 및 국내세수

■ 거래가격 확정이 불가능한 경우 거래가격 확정(21조) ■

1. 수입화물과 동시 혹은 비슷한 시기에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판매한 동일화물의 거래가격
2. 수입화물과 동시 혹은 비슷한 시기에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판매한 유사화물의 거래가격
3. 수입화물과 동시 혹은 유사시에 수입한 동일 혹은 유사화물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를 대상으로 최초(1차) 판매환절 단가(조례 22조항 규정 항목 공제)
4. 수입화물 생산에 사용한 부품원가와 가공비용+동급 혹은 동일품종화물을 중화인민공화국경내로 판매하여 발생하는 통상이윤고하 일반비용+수입지점에 도착하여 하역 전까지 운송 및 관련비용 보험료
5.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산한 가격

※ 순차로 적용하나 3~4항은 신청 시 순차전도 가능

■ 21조항 3항 공제항목(22조) ■

1. 동급 혹은 동일품종화물이 중화인민공화국경내에서 최초(1차) 판매환절에서 발생하는 통상이윤과 일반비용 및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수수료
2. 수입지점에 도착하여 하역 후 운송 및 관련비용 보험료
3. 수입관세 및 국내세수

□ 수입화물의 관세징수

- 수입화물의 납세의무자는 운송도구 입경신고일로부터 14일내에 해당 세관에 신고. 세관의 승인 하에 수입화물 도착 전 사전 신고할 수 있음(29조)
- 수입화물의 관세는 종가징수, 종량징수 혹은 국가가 규정한 기타방식으로 징수(36조)
 - 종가징수 : 관세세액=관세지급필가격*관세세율
 - 종량징수 : 관세세액=화물수량*단위세액

- 납세의무자는 세관이 세금납부서 발급일로부터 15일내에 지정은행을 통하여 세금을 납부해야하며 기한 초과 시 0.5%/일 체납금 추징. 단 불가항력 혹은 국가의 세수정책조정으로 기한 내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세관의 허가 하에 최장 6개월로 연장(37/39조)
- 관세 및 체납금은 인민폐 위안화로 징수하며 환율은 중국인민은행 기준환율을 적용(38조)
- 수입화물의 납세의무자가 규정 납세기한 내에 수입화물 혹은 기타재산을 이전, 은닉상황이 포착된 경우 세관은 납세의무자에 담보를 제공토록 요구하여 담보 미제공시 세관법 61조항 규정에 따라 세수보전조치를 실시. 납세의무자 및 담보인이 납세기한만료일로부터 3개월 사이에 세금 미납부시 세관법 60조항 규정에 따라 강제조치 실시(40조)
- 국가의 규정에 따라 보세수입한 가공무역 수입부품, 원료는 완성품 혹은 수입부품, 원료가 규정기한 내에 수출하지 않으면 세관은 규정에 따라 관세 징수. 수입에서 이미 관세를 징수한 가공무역 수입부품, 원료는 완성품 혹은 수입부품, 원료가 규정기한 내 수출시 징수한 관세 환급(41조)
- 세관 허가 하에 잠시 입경한 이하 화물은 납세의무자가 세관에 납세액에 해당되는 보증금 혹은 기타담보 제공시 관세를 잠시 납부하지 않으며 입경일로부터 6개월 내에 반출(42조)

Ⅱ 42조항 화물 Ⅱ

1. 전시회, 교역회, 회의 등 유사행사에 전시 혹은 사용하는 화물
2. 문화, 체육교류행사에 사용하는 공연, 경기용품
3. 뉴스보도 혹은 영화, TV촬영제작에 사용하는 기계, 설비 및 용품
4. 과학연구, 교학, 의료활동에 사용하는 기계, 설비 및 용품
5. 1)~4)항 행사에 사용되는 교통공구 및 특수차량
6. 화물샘플
7. 설치, 실험가동, 설비검사에 사용되는 기계, 기구
8. 화물을 포장한 용기
9. 기타 비상업목적의 화물

■ 관세면제화물(45조) ■

1. 관세세액이 인민폐 50위안 이하 화물
2. 상업가치가 없는 광고물 및 화물샘플
3. 외국정부, 국제조직의 무상증여화물
4. 세관 통관허가 전에 손실한 화물
5. 출입경 운송도구에 적재한 운송필수 연료, 물자와 식재

※ 세관 통관허가 전에 손해를 입은 화물은 세관이 인정한 손해수준에 따라 감세하여 징수하며, 기타 법률이 규정한 감, 면세화물은 규정에 따름.

- 관세를 징수한 수입화물이 품질 혹은 규격원인으로 원상태 반출시 납세의무자는 세금납부일로부터 1년 사이에 세관에 관세 환급을 신청(50조)
- 수입화물이 통관허가 후 발견된 적게 징수하거나 혹은 누락한 세금은 세금납부일 혹은 통관허가일로부터 1년 내에 보충 징수할 수 있으며 납세의무자의 규정 위반으로 적게 징수 혹은 누락한 세금은 세금납부일 혹은 통관허가일로부터 3년 내에 추징할 수 있으며 0.5‰/일 체납금 부가(51조)

3)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화물원산지조례(국무원 령 416호, 2005.05.01실시)

□ 조례 적용범위

- 본 조례는 최혜국대우, 반덤핑과 반보조, 보장조치, 원산지표기관리, 국가별수량제한, 관세쿼터 등 비특혜성무역조치의 실시와 정부구매, 무역통계 등 활동의 수출입화물원산지확정에 적용되며 특혜성무역조치 실시에서 원산지확정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 혹은 참가한 국제조약, 협정의 관련규정에 따라 별도 제정(2조)

□ 원산지 확정

- 1개 국가(지역)에서 완전하게 취득한 화물은 기 국가(지역)를 원산지로, 2개 이상 국가(지역)가 생산에 참여한 화물은 최후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온 국가(지역)를 원산지로 정함(3조)

■ 1개 국가(지역)에서 완전하게 취득한 화물(4조) ■

1. 기 국가(지역)에서 출생 및 사육한 활 동물
2. 기 국가(지역)에서 야생포획, 어획 혹은 수집한 동물
3. 기 국가(지역)의 활 동물에서 취득한 가공하지 않은 물품
4. 기 국가(지역)에서 수확한 식물과 식물제품
5. 기 국가(지역)에서 채굴한 광물
6. 기 국가(지역)에서 취득한 1)~5)항 외 기타 천연적으로 생성한 물품
7. 기 국가(지역)에서 생산과정 나타난 방치해야하거나 회수하여 원료로 사용하는 폐기물
8. 기 국가(지역)에서 수집한 수리불가 혹은 수리한 물품, 혹은 기 물품에서 회수한 부품 및 원료
9. 합법적으로 기 국가 국기를 게양한 선박이 영해 외 해역에서 취득한 해양어획물과 기타 물품
10. 합법적으로 기 국가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서 9)항 물품을 가공하여 취득한 제품
11. 기 국가 영해 외 전문 채굴권을 가진 해저에서 취득한 물품
12. 기 국가(지역)에서 완전하게 1)~11)항 물품에서 생산한 제품

■ 완전취득여부 확정에서 제외상황(5조) ■

1. 운송, 저장기간 화물보존을 위한 가공 혹은 처리
2. 화물의 하역편리를 위한 가공 혹은 처리
3. 화물의 판매를 위한 포장 등 가공 혹은 처리

- 최후 실질적인 변화의 확정기준은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세칙> 상품분류변화를 기본으로 확정이 불가능한 경우 가공 후 화물가치에서 부가가치 백분비 및 제조 혹은 가공공정절차를 보충기준으로 함(6조)

□ 수입화물의 원산지신고 및 제재조치

- 수입화물의 수령인은 세관신고에서 본 조례 원산지확정 규정에 따라 수입화물의 원산지를 신고(11조)
- 본 조례 규정을 위반하여 수입화물의 원산지를 신고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대외무역법>, <중화인민공화국세관법>, <중화인민공화국세관행정처벌실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처벌(22조)
- 수입화물의 원산지표기가 본 조례 규정에 따라 확정된 원산지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 세관은 시정을 명함(24조)

4) 중화인민공화국지식재산권세관보호조례(국무원 령 572호, 2010.04.01 수정실시)

□ 지식재산권 세관보호

- 지식재산권 세관보호는 수출입화물과 관련하여 중국 법률, 행정법규의 보호를 받는 상표 전용권, 저작권 및 저작권과 관련된 권리, 특허권에 대한 보호로 국가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화물의 수출입을 금지(2/3조)

□ 지식재산권 세관보호등록

■ 등록신청서 내용(7조) ■

1. 지식재산권 관리자의 명칭 혹은 성명, 등록지역 혹은 국적 등
2. 지식재산권 명칭, 내용 및 관련정보
3. 지식재산권 허가 행사상황
4. 지식재산권 관리자가 합법적으로 지식재산권을 행사하는 화물의 명칭, 산지, 출입경지세관, 수출입상, 주요특징, 가격 등
5. 이미 알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제조사, 수출입상, 출입경지세관, 주요특징, 가격 등
* 외 증명문서 있는 경우 증명문서 첨부

■ 등록불가 상황(8조) ■

1. 신청서류가 미비하거나 무효한
2. 신청자가 지식재산권 관리자가 아닌
3. 지식재산권이 법률, 행정법규 보호를 받지 않는

□ 지식재산권 세관보호등록유효기한

- 지식재산권의 세관보호등록은 세관총서 등록허가일로부터 발효하며 유효기한은 10년으로 유효기한 만료 6개월 전에 세관총서에 신청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매번 연장한 유효기한 역시 10년. 지식재산권 세관보호등록 유효기한 만료와 함께 연장신청을 하지 않거나 지식재산권이 법률과 행정법규보호를 받지 않는 경우 세관보호등록은 실효(10조)

□ 권리침해혐의화물 압류신청

○ 권리자 발견 시

- 지식재산권 권리자가 권리침해혐의화물의 수출입상황을 발견 시 화물의 출입 경지역 세관에 압류신청(12조)

▮ 압류 신청서 내용(13조) ▮

1. 지식재산권 권리자의 명칭 혹은 성명, 등록지역 혹은 국적 등
 2. 지식재산권 명칭, 내용 및 관련정보
 3. 권리침해혐의화물의 수령인, 선적인 명칭
 4. 권리침해혐의화물의 명칭, 규격 등
 5. 권리침해혐의화물의 수출입항, 시간, 운송도구 등
- * 외 이미 세관보호등록한 경우 세관등록번호

- 지식재산권 권리자는 세관에 권리침해혐의화물 압류신청에서 수출입화물 가치보다 ≥담보를 제공. 세관은 화물을 압류하고 화물수령인 혹은 발송인에 서면통지와 동시 세관압류증서 발송(14/15조)

○ 세관에서 발견 시

- 세관에서 권리침해혐의화물 발견 시 지식재산권 권리자에 서면으로 통지하며 권리자는 통지접수일로부터 3일내에 조례 13조항에 따라 압류신청 동시에 14조항의 담보를 제공. 세관은 화물을 압류하고 화물수령인 혹은 발송인에 서면통지와 동시에 세관압류증서 발송(16조)

□ 지식재산권침해혐의화물의 처리

- 압류한 지식재산권침해혐의화물이 세관의 조사를 거쳐 침해사실이 확인되면 세관에서 몰수하고 지식재산권 권리자에 서면통지

- 몰수한 지식재산권침해화물이 사회공익사업 사용에 가능한 경우 공익기구에 전달. 지식재산권 권리자가 수매의향이 있는 경우 유상으로 권리자에 양도
- 사회공익사업에 사용할 수 없으며 지식재산권 권리자가 수매의향이 없는 경우 지식재산권 침해특징을 제거한 후 법에 따라 경매. 침해특징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 폐기처리(27조)

Ⅲ. 세관관리

1. 세관 세금징수

1) 관세지급필가격 평가방법

□ 일반 수입화물 관세지급필가격 평가

- 일반 수입화물 관세지급필가격은 세관에서 수입화물 거래가격법, 동류 화물 거래가격법, 유사 화물 거래가격법, 감점가격법, 계산가격법, 합리적인 방법 등 방법을 차례로 적용하여 평가하며, 세관의 동의를 받아 감점 가격법과 계산 가격법을 바꾸어 적용할 수 있음

■ 일반 수입화물 관세지급필가격 평가방법 ■

구분	분류	평가방법
1	거래가격 평가방법	“수출입세관조례”와 “수출입화물관세지급필가격심의방법”에서 규정한 첫 번째 평가방법으로 우선 거래가격을 기초로 관세지급필가격을 평가하여 확정
2	동류화물 거래가격 평가방법	수입화물과 동시 또는 비슷한 시기에 중국 경내에서 판매되는 동류화물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관세지급필가격을 평가하여 확정
3	유사화물 거래가격 평가방법	수입화물과 동시 또는 비슷한 시기에 중국 경내에서 판매되는 유사화물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관세지급필가격을 평가하여 확정
4	감점가격 평가방법	수입화물의 동류 또는 유사 수입화물이 중국시장에서 처음으로 판매되는 가격을 기초로 중국 경내에서 발생하는 관련 세금과 비용을 공제한 후 관세지급필가격을 평가하여 확정

구분	분류	평가방법
5	계산가격 평가방법	세관에서 수입화물 생산국 또는 생산지역의 생산원가, 판매이윤, 운송 및 관련비용, 보험비 등을 기초로 수입화물 관세지급필가격을 평가하여 확정
6	합리적인 방법	세관에서 상기 방법으로 관세지급필가격을 확정할 수 없을 경우, 공평, 통일, 객관의 평가원칙에 따라 객관적 수량화한 데이터를 기초로 수입화물 관세지급필가격을 평가하여 확정

□ 특수 수입화물 관세지급필가격 평가

▮ 징세해야하는 가공무역 수입원료&부품 또는 완성품 ▮

무역방식	화물유형	평가방법	
원료수입가공 (비보세부분)	원료	원료 수입을 신고할 때의 거래가격으로 확정	
원료수입가공 (보세부분)	원료	원료 기존 수입 거래가격을 기초로 확정	내수신고 접수시 동시 또는 대략 동시 수입한 원료와의 동류 또는 유사 화물 수입 거래가격을 기초로 확정
	완제품 (불량품, 부산품)	원료 기존 수입 거래가격을 기초로 확정	
위탁가공	원료 또는 완제품 (불량품)	내수신고 접수시 동시 또는 대략 동시 수입한 원료와의 동류 또는 유사 화물 수입 거래가격을 기초로 확정	
수출가공구	완제품, 불량품	내수신고 접수시 동시 또는 대략 동시 수입한 원료와의 동류 또는 유사 화물 수입 거래가격을 기초로 확정	
	조각, 부산품	세관에서 평가하여 확정된 내수가격	
보세구 가공기업	수입원료 또는 완제품(불량품)	내수신고 접수시 동시 또는 대략 동시 수입한 원료와의 동류 또는 유사 화물 수입 거래가격을 기초로 확정	
	원료수입가공 완제품(경내 구매원료 포함)	완제품에 포함된 경외 구입한 원료의 기존 수입 거래가격을 기초로 확정	
		원료 기존 수입 거래가격을 확정할 수 없을 경우, 내수신고 접수시 동시 또는 대략 동시 수입한 원료와의 동류 또는 유사 화물 수입 거래가격을 기초로 확정	
	위탁가공 완제품(경내 구매원료 포함)	내수신고 접수시 동시 또는 대략 동시 수입한 원료와의 동류 또는 유사 화물 수입 거래가격을 기초로 확정	
	조각, 부산품	세관에서 평가하여 확정된 내수가격	
보세구, 수출가공구, 보세물류구, 보세물류센터 입국	-	원료 및 그 완제품을 수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경내 판매가격을 기초로 확정	

- 수출하여 수리한 후 다시 수입한 화물
 - 규정한 기한에 다시 수입할 경우 경외 수리비와 원료비로 평가하여 확정
 - 규정한 기한에 다시 수입하지 못할 경우 일반 수입화물로 평가하여 확정
- 수출하여 가공한 후 재수입한 화물
 - 정상적으로 재수입할 경우 경외 가공비, 원료비, 재수입 운송비, 보험비로 평가하여 확정
 - 정상적으로 재수입하지 않을 경우 일반 수입화물로 평가하여 확정
- 임시 수입한 화물
 - 납세해야 할 경우 일반 수입화물 관세지급필가격으로 확정
 - 남겨서 판매할 경우 세관에서 평가하여 확정된 남겨서 판매하는 가격을 관세지급필가격으로 확정
- 임대방식으로 수입한 화물
 - 임대방식으로 지급할 경우 임대료를 관세지급필가격으로 확정
 - 남겨서 판매할 경우 세관에서 평가하여 확정된 남겨서 판매하는 가격을 관세지급필가격으로 확정
 - 일회로 납세할 경우 규정한 평가방법으로 관세지급필가격을 확정하거나 임대료를 관세지급필가격으로 확정
- 감세, 면세 화물
 - 비준을 받아 매각, 양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화물은 세금을 보충할 때에 징세함
 - 화물의 기존 수입가격에서 감가상각 부분의 가치를 공제한 후에 관세지급필가격으로 확정됨
 - * 관세지급필가격 = 세관에서 평가하여 확정된 그 화물의 기존 수입가격×(1-세금 징수 (또는 보충)시 실제 수입한 월/감독연한×12)
- 거래가격이 없는 화물
 - 물물교환 무역, 위탁판매, 기증, 증여 등 방식의 수입화물에 대해 거래가격법을 적용하지 못하여 기타 방법으로 관세지급필가격을 확정

○ 소프트웨어 매질

- 매질 자체 가치 또는 원가를 기초로 관세지급필가격을 확정

■ 수입화물 관세지급필가격에서의 운송비와 보험료 계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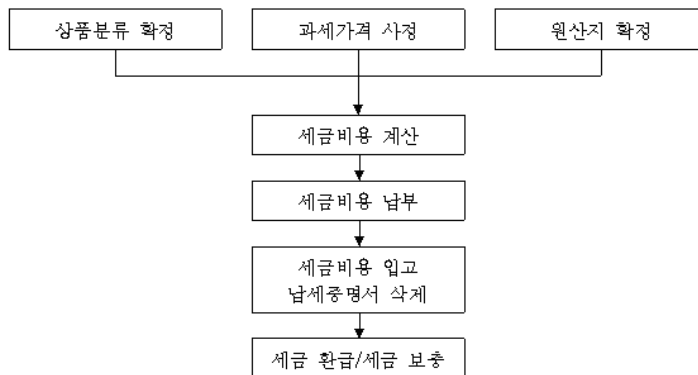
구분	계산방법
운송비	- 실제로 지급한 비용으로 계산 - 자체 동력으로 수입할 경우, 운송비를 계산하지 않음 - 불확정일 경우, 수입 동기에 발표된 운송비로 계산
보험비	- 실제로 지급한 비용으로 계산 - 불확정 또는 실제 미발생일 경우, 보험비=(화물가격+운송비)×3‰
우송화물 운송비	- 그 우편료를 운송비, 보험비로 확정
변경항구 운송비	- 경외 변경항구가격의 1%로 운송비, 보험비로 계산

2) 세금징수

□ 징세절차

- 세관은 상품분류의 확정, 관세지급필가격의 사정, 원산지 확정을 통해 관세지급필가격과 세율을 확정하여 세금과 비용을 계산하며 세관의 징세절차는 다음과 같음

■ 세관의 징세절차 ■



□ 징수화폐

- 세관에서 징수하는 관세, 수입증치세, 수입소비세, 선박톤세, 체납금, 신고 지체금 등의 세금과 비용은 모두 인민폐로 계산·징수하며 인민폐 50위안부터 징수하며 과세가격 및 관세는 사사오입하여 산정
- 수출입화물의 거래가격과 관련비용을 외화로 계산할 경우, 세금을 계산하기 전 세관에서 화물에 대해 세율을 적용한 날의 적용환율에 따라 인민폐로 환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
- 세관에서 매달 적용하는 환율은 지난달 셋째 주 수요일 중국인민은행에서 공개한 외화 기준 환율이며 인민폐 위안 이하는 사사오입

□ 수입관세 계산

구 분	계산공식	계산절차
증가관세	수입관세=과세가격×증가관세세율	- 화물 CIF가격을 확정 - 환율 적용원칙으로 외화를 인민폐로 계산 - 공식에 따라 징수할 관세를 계산
종량관세	수입관세=화물수량×단위세액	- 화물 실제 수입수량을 확정 - 공식에 따라 징수할 관세를 계산
복합관세	수입관세=화물수량×단위세액+과세가격×관세세율	- 과세가격 평가방법에 따라 과세가격 확정 - 환율 적용원칙으로 외화를 인민폐로 계산 - 공식에 따라 징수할 관세를 계산
슬라이딩 관세	수입관세(증가)=과세가격×잠정세율 수입관세(종량)=화물수량×잠정세율	- 과세가격 평가방법에 따라 과세가격 확정 - 관세 세율 계산공식에 따라 세율을 계산 - 환율 적용원칙으로 외화를 인민폐로 계산 - 공식에 따라 징수할 관세를 계산

□ 수입 소비세 계산

구 분	계산공식	계산절차
증가징수	소비세=징세가격×소비세 세율 징세가격=(과세가격+관세)/(1-소비세 세율)	- 화물 CIF가격을 확정 - 환율 적용원칙으로 외화를 인민폐로 계산
종량징수	소비세=소비품 수량×소비세 세율	- 공식에 따라 징수할 관세를 계산
복합징수	소비세=증가 소비세+종량 소비세	

□ 수입 증치세 계산

구분	계산공식	계산절차
증가징수	$\text{증치세} = \text{징세가격} \times \text{증치세 세율}$ $\text{징세가격} = \text{과세가격} + \text{관세율} + \text{소비세}$	- 과세가격과 관세를 계산 - 소비세를 계산 - 증치세를 계산

□ 기타 비용 계산

○ 체납금

- “세관법”과 수출입 “관세조례”의 규정에 따라 기한을 넘어 납부하는 수출입화물의 관세, 수입 증치세, 소비세, 선박톤세 등에 대해 세관은 매일 0.5%의 체납금을 징수

* $\text{체납금} = \text{납세액} \times 0.5\% \times \text{체납일}$

○ 신고지체금

- 법정 신고기간 동안 세관에 수입화물을 신고하지 않은 수하인에 대해 세관에서 징수하는 경제 제재 성격의 비용임

* $\text{신고지체금} = \text{수입화물 과세가격} \times 0.5\% \times \text{연기일}$

3) 관세 보충징수

□ 관세 추징, 보충징수

- 납세인 또는 그 대리인이 관세를 납부한 후, 세관에서 확정하여 징수한 관세가 과세관세보다 적을 경우 세관에서 납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부족한 관세를 보충 납부할 것을 요구함
- 만약 그 원인이 납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있으면 세관에서 관세를 추징하고 그 원인이 납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있지 않으면 세관에서 관세를 보충 징수함

□ 추가징수와 보충징수의 기한과 요구

- 수출입화물이 통관된 후 세관에서 관세를 적게 징수했거나 누락한 사실을 발견

될 경우, 반드시 납세일 또는 통관일로부터 1년 내에 납세인으로부터 세금을 보충 징수

- 납세인이 규정을 위반하여 세관에서 관세를 적게 징수했거나 누락했을 경우 반드시 납세일 또는 통관일로부터 3년 내에 관세를 추가징수하며, 적게 징수했거나 누락한 세금의 0.5%의 체납금을 추가 징수(납세일 또는 통관일로부터 발견일까지)
- 감독관리 화물이 납세인이 규정을 위반하여 관세를 적게 징수했거나 누락 징수했을 경우 반드시 납세일 또는 통관일로부터 3년 내에 관세를 추가징수하며, 적게 징수했거나 누락 징수한 세금의 0.5%의 체납금을 추가징수(납세일 또는 통관일로부터 발견일까지)
- 상기 관세 보충징수 납세서 발급한 후, 15일 내에 보충납부하지 않으면 계속 체납금을 징수

4) 관세환급

□ 관세환급의 경우

- 수입관세를 납부한 수입화물이 품질 또는 규격 원인으로 인해 원래 상태로 반품하여 재수출된 경우
- 수출관세를 납부한 수출화물이 품질 또는 규격원인으로 원래 상태로 반품되어 재수입되어 수출로 인해 환급된 관련 세금을 다시 납부한 경우
- 수출관세를 납부한 화물이 어떤 원인으로 수출되지 않아 수출이 철회된 경우
- 관세를 징수하여 통관된 산적 수출입화물이 부족하여 화물의 발송인, 운송인 또는 보험회사가 부족한 부분의 화물대금을 반환 또는 배상했을 경우
- 수출입화물이 파손, 품질 불량, 규격 미달 등으로 인해 화물의 발송인, 운송인 또는 보험회사가 관련 화물대금을 배상했을 경우
- 세관에서 잘못 징수하여 납세인이 세금을 많이 납부했을 경우

□ 관세환급 기한과 요구

- 세관은 반드시 관세 환급 신청의 접수일로부터 30일 내에 확인하여 납세인에게 관세 환급수속을 밟도록 통보해야 함
- 납세인은 반드시 상기 통보접수일로부터 3개월 내에 관세 환급수속을 밟아야 함
- 관세 환급은 반드시 관세를 징수한 세관에서 처리해야 함

5) 관세감면

□ 법정 관세감면

- 법정 관세감면은 “세관법”, “관세조례”와 기타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수출입 화물에 대한 관세감면을 가리키며, 세관에서 법정 관세감면의 화물에 대해 일반적으로 후속관리를 하지 않음
- 법정관세감면 범위
 - 관세가 인민폐 50위안 이하인 화물
 - 상업가치가 없는 광고물과 화물 샘플
 - 외국정부, 국제조직에서 무상 증정한 물자
 - 세관에서 통관을 허용하기 전에 파괴 또는 파손된 화물
 - 출입국 운송공구가 적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연료, 자재와 음식물
 - 중국이 체결하거나 참가한 국제조약에서 관세감면을 규정한 화물, 물품
 - 법률에서 관세감면을 규정한 기타 화물, 물품

□ 특정 관세감면

- 특정 관세감면은 세관에서 국가 규정에 의해 특정지역, 특정용도, 특정 기업에 대해 관세와 세관이 수입과정에서 징수하는 세금을 감면하는 혜택을 지칭하며 정책성 관세감면이라고도 함
- 특정 관세감면을 신청하는 업체는 화물을 수입하기 전에 세관에 신청해야하며,

세관은 관련 규정의 절차에 따라 심사비준을 함

- 세관은 관세감면관련 정책에 부합될 경우, 관세감면 증명을 발급하고 업체는 관세감면 증명 및 관련 통관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 관세감면 수입화물의 통관수속을 밟음

○ 특정 관세감면의 화물은 지역, 업체와 용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세관은 후속 관리를 해야 함

○ 특정관세감면 범위

- 외상투자 프로젝트의 투자한도에서 수입하는 자체 사용 설비
- 외상투자기업의 투자총액 외에 수입하는 자체 사용 설비
- 국내투자 프로젝트가 수입하는 자체 사용 설비
- 대출 프로젝트가 수입하는 물자
- 특정지역 물자
- 과학교육용품
- 과학기술 개발용품
- 무상원조 프로젝트가 수입하는 물자
- 장애인용품
- 원양어업 프로젝트가 수입하는 자체 어획 수산물
- 원양선박 및 설비부품 프로젝트
- 집적회로 프로젝트
- 해상 석유, 육상 석유 프로젝트
- 대출 낙찰 프로젝트가 수입하는 부품
- 구제, 기증 물자
- 자선, 기증 물자

□ 임시 관세면제

○ 임시 관세면제는 법정 관세면제와 특정 관세면제 외의 기타 관세면제를 지칭하며, 국무원에서 어떤 업체, 어떤 상품, 어떤 시기 또는 화물의 특수한 상황과 수

요에 의해 특별한 임시적인 관세면제 혜택을 줌

- 임시 관세면제 화물은 단위, 품목, 기한, 금액, 수량 등에 대한 엄격한 제한이 있어 시효가 비교적 짧고 혜택정책이 집행되면 종료
- 임시 관세면제의 신청업체가 소재지 세관에 신청하고 세관은 사실을 심사한 후 세관총서에 보고하며, 세관총서 또는 세관총서와 재정부가 공동으로 국무원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비준한 후에 문건을 발급하며, 세관총서는 관련 세관에 관세감면 수속을 밟도록 통보

□ 관세감면 비준원칙과 비준관리

- 현재 중국 세관의 관세감면 정책에서 특정 관세감면에 관한 규정이 많고 관련된 분야가 다양함
- 관세감면의 적용대상은 주로 국가에서 배려해야 할 특정지역, 특정기업, 특정용도, 특정자금과 무역방식 등을 지칭하며, 감면범위는 주로 생산물자 등에 제한
- 현재 세관은 초심, 재심, 삼심의 “3급 비준” 원칙으로 관세감면을 비준
- 세관의 관세감면비준관리 시스템은 주로 관세감면 항목등록, 관세감면 증명비준, 관세감면 데이터검색, 통계분석과 관세감면 화물의 후속관리 등을 포함

2. 세관 행정처벌

1) 세관 행정처벌 종류

- “세관법”, “세관행정처벌실시조례”와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세관 행정처벌은 경고, 벌금, 몰수, 당사자의 일부 권리를 임시 중단, 당사자의 일부 권리를 중지, 행정구류, 압수가 있음

Ⅰ 세관의 행정처벌 종류 Ⅰ

구분	종류	정의 및 해석
1	경 고	세관에서 불법 당사자에 질책과 경고를 주어 당사자 행위의 불법성을 인식하도록 하여 향후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처벌
2	벌 금	세관에서 불법 당사자에게 일정한 금액의 납부를 강박하여 당사자가 경제적으로 손실을 받아 향후 불법행위를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처벌
3	몰 수	세관에서 불법 당사자에게 불법 출입국 화물, 물품 및 불법소득을 몰수하여 공유로 소유시키는 처벌로서 밀수화물 등 불법재산과 불법소득을 몰수
4	당 사 자 일부권리 임시중지	기업 또는 자연인이 세관 허가를 받아 관련 업무를 종사한 후, 불법행위를 하여 세관에서 일정한 기간에 업무권리를 박탈하는 처벌 (“세관법”과 “세관행정처벌실시조례”에 의해 세관은 통관업체의 통관업무를 임시중지, 통관인원의 보고업무를 임시중지, 세관에서 허용한 세관 감독관리 화물의 운송, 저장, 가공, 조립, 위탁판매, 전시 등 업무를 임시중지)
5	당 사 자 일부권리 중 지	세관에서 당사자가 일부 경영활동의 권리 또는 자격을 박탈하는 처벌로서 세관에서 일반적으로 세관 등록을 철회하며 통관업무 대행자격을 취소
6	행정구류	국가기관(공안기관)에서 치안관리를 위반한 자연인에게 인신자유를 단기로 박탈하는 처벌
7	압 수	세관은 특수상황에서 압수를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압수는 몰수와 유사하지만 행정처벌에 속하지 않음

2) 세관 행정처벌 절차

□ 일반규정

- 세관에서 기타 행정기관 또는 형사 수사부서에서 처리해야 하는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사건 이송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제 때 관련 행정기관 또는 형사 수사 부서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해야 함
 - 조사시 업무인원은 2명 이상이어야 하며 당사자에게 관련증서를 제시해야 함
- 사건 조사처리원이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될 경우 배제됨
 - 당사자의 친족일 경우
 - 본인 또는 그 친족이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 사건 당사자와 기타 관계가 있어 사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경우

□ 사건조사

- 사건조사는 입건, 조사 및 증거 수집, 조사 중지와 종결, 사건 심사, 통보, 재심사와 청문 순으로 진행

□ 간단한 사건처리

- 우송물, 특급화물, 화물관리, 보세 감독관리 등 업무현장과 불법사실이 명확하며 불법상황이 가벼운 사건은 간단한 사건처리절차를 적용할 수 있음
 - 간단한 사건처리절차를 적용하는 사건은 직접 행정처벌 통지서를 발급하여 당사자가 현장에서 사인하도록 할 수 있음

3) 세관관리감독규정 위반사항과 제재조치

-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밀수행위와 세관 감독관리 규정을 위반한 행위, 법률과 행정법규에서 세관에서 행정처벌을 실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2004년 9월 19일 국무원에서 발표한 “세관행정처벌실시조례”를 적용

■ 세관관리감독규정 위반사항과 제재조치 ■

위반상황	제재조치
금지화물을 수출입할 경우	반송 및 100만 위안 이하 벌금
허가증이 없이 제한화물을 수출입할 경우	통관 불가능, 화물가치의 30% 이하 벌금
자동허가증이 없이 자동수출입허가관리의 화물을 수출입할 경우	통관 불가능
품명, 세척번호, 수량, 규격, 가격, 무역방식, 원산지, 출하지, 도착지, 최종 목적지 또는 기타 신고해야 할 항목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할 경우	- 세관통계의 정확성에 영향을 줄 경우, 경고 또는 1,000위안~1만 위안 벌금 - 세관 감독관리 질서에 영향을 줄 경우, 경고 또는 1,000위안~3만 위안 벌금 - 국가의 허가증 관리에 영향을 줄 경우, 화물가치의 5~30% 벌금 - 국가의 세금 징수에 영향을 줄 경우, 탈세액의 30~100% 벌금 - 국가의 외화, 수출관세 환급관리에 영향을 줄 경우, 신고가격의 10~50% 벌금 - 불법소득이 있을 경우 불법소득을 몰수

위반상황	제재조치
<p>송·수하인이 통관업체에 위탁한 통관사항을 허위 제공하여 “세관행정처벌실시조례”의 제15조에 규정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p>	<p>“세관행정처벌실시조례”의 제15조 규정에 따라 위탁인을 처벌</p>
<p>통관업체, 통관인원이 위탁인의 제공서류 진실성을 합리적으로 심사하지 않았거나 직무를 소홀히 하여 “세관행정처벌실시조례”의 제15조에서 규정한 관련 상황이 발생할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관업체에 대해 화물가치의 10% 이하 벌금, 6개월 내에 통관업무 또는 관련업무의 대행이 불가능 - 엄중할 경우, 등기증명을 철회하고 통관업무 대행자격을 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 감독관리 화물을 해체, 인출, 교부, 발송, 교환, 개조, 담보, 저당, 유치, 양도, 표기 변경, 타인에게 넘겨 사용 또는 기타 처분을 하였을 경우 - 세관 감독관리 화물을 세관 감독관리 구역 외에 저장할 경우 - 세관 감독관리 화물에 대한 운송, 저장, 가공, 조립, 위탁판매, 전시 등 업무를 경영할 경우, 화물의 분실, 수량 부족 또는 기록 허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 - 보세화물의 운송, 저장, 가공, 조립, 위탁판매, 전시 등 업무를 경영할 경우, 수탁, 교부, 이월, 확인삭제 등 수속을 밟지 않았거나 관련계약을 해제, 연장, 변경, 양도할 경우, 세관에 수속절차를 밟지 않았을 경우 - 세관에 가공무역 완제품의 단위 재료 소모량을 허위 신고할 경우 - 규정한 기간에 통과, 중계운송, 통행화물을 경외로 운송하지 않고 경내에 보관할 경우 - 규정한 기간에 임시로 수출입화물을 경외로 재운송하거나 경내로 재운송하지 않고 경내 외에 보관할 경우 - 세관 감독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세관에서 감독관리를 할 수 없거나 중단하였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물가치의 5~30% 벌금, 불법소득 몰수 - 제한화물의 허가증을 제공할 수 없을 경우, 화물가치의 30% 이하 벌금, 탈세할 경우, 탈세액의 1배 이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 허가가 없이 통관하지 못한 수출입물품을 해체, 교부, 우편송부, 이전 또는 기타 형식으로 처분하였을 경우 - 수량을 초과한 개인용 물품을 운송, 휴대, 우편 송부하여 출입국할 때에 세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 개인이 규정한 수량을 초과하나 개인용 출입국 제한물품을 운송, 휴대, 우편 송부하여 출입국할 때에 은닉, 위장 등 방식으로 세관 감 	<p>경고처분, 물품가치의 20% 이하 벌금, 불법소득 몰수</p>

위반상황	제재조치
<p>독관리를 회피 또는 세관에 미신고할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이 물품을 운송, 휴대, 우편 송부하여 출입국할 때에 허위 신고할 경우 - 세관 등록을 거쳐 임시면세의 출입국 물품으로 허가 받은 경우, 경내외로 다시 휴대하지 않았을 경우 - 세관 허가가 없이 통과인원이 물품을 경내에 남겨두었을 경우 	
<p>출입국 금지물품을 운송, 휴대, 우편송부방식으로 출입국할 때에 은닉, 위장 등 형식으로 세관 감독관리를 회피 또는 미신고할 경우</p>	<p>화물을 몰수, 화물을 반송, 세관 감독관리 하에 소각 또는 기술처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송공구가 세관을 설치한 지역을 경과하지 않고 출입국할 경우 - 세관 허가가 없이 세관 감독관리 구역에 정박한 출입국 운송공구를 이탈시켰을 경우 - 세관 수속절차를 밟지 않았거나 세관 허가가 없이 중도에 경내외 세관 미설치 지점으로 이동시켰을 경우 - 출입국 운송공구가 세관을 설치한 지역에 도착 또는 이동할 때에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공하여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허위로 증빙서류를 제공할 경우 	<p>경고처분, 10만 위안 이하 벌금, 불법소득 몰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 허가가 없는 출입국 운송공구가 수출입 화물, 물품을 하역 또는 출입국 관광객을 운송할 경우 - 세관 동의를 없이 수출입 운송공구가 경내 여객운송을 경영, 기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 - 세관 수속절차가 없이 출입국 운송공구가 경내 운송 업무를 경영할 경우 - 규정한 기간에 세관에 선적목록 등 전자데이터를 미전송, 전자데이터가 부정확, 전자데이터를 미저장할 경우 - 입국 운송공구가 세관에 신고하기 전 또는 출국 운송공구가 세관 수속절차를 밟은 후 출국 전에 교통 주관부서 또는 세관의 지정 코스에 따라 이동하지 않을 경우 - 세관 감독관리 화물을 선적한 선박, 차량이 세관 지정코스에 따라 이동하지 않을 경우 - 출입국 선박 및 항공기가 불가항력으로 인해 세관을 설치하지 않은 지점에 정박, 착륙하거나 화물, 물품을 경내에 하역할 때에 정당 	<p>경고처분, 5만 위안 이하 벌금, 불법소득 몰수</p>

위반상황	제재조치
<p>한 이유가 없이 부근 세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 사정이 없이 출입국 선박, 기차, 항공기의 도착시간, 정박지점 또는 변경된 시간, 지점을 사전에 세관에 통보하지 않을 경우 - 세관의 출입국 운송공구, 화물, 물품 검사 및 조사를 접수하지 않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 봉인을 개봉 또는 훼손할 경우 - 세관의 감독관리 증명서류를 분실할 경우 - 세관 감독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세관의 출입국 운송공구, 물품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행할 수 없거나 중단할 경우 	경고처분, 3만 위안 이하 벌금
세관 증명서류를 위조, 변조, 매매할 경우	5만~50만 위안 벌금, 불법소득 몰수, 범죄를 구성할 경우 형사책임 추궁
중국 법률, 행정법규의 보호를 받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화물을 수출입할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물 몰수, 화물가치의 30% 이하 벌금 - 범죄를 구성할 경우 형사책임 추궁
송·수하인/대리인이 세관에 지적재산권 관련 상황을 허위로 신고 또는 합법적 사용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공하지 못 할 경우	5만 위안 이하 벌금
<p>통관 대행업체, 통관 대행인원 및 세관의 허가를 받아 세관 감독관리 화물의 운송, 저장, 가공, 조립, 판매, 전시 등 업무에 종사하는 업체가 아래 상황이 발생할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금 체불 또는 납세의무를 미이행할 경우 - 통관 대행업체가 타인에게 명의를 양도하여 수출입화물 통관납세 관련사항을 처리하게 할 경우 - 세관 감독관리 화물을 손실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 정당한 이유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 관련업무 또는 업종을 임시 중지해야 할 기타 불법행위 	시정을 명령, 경고처분, 6개월 이내 관련업무 중지
<p>통관 대행업체, 통관 대행인원 및 세관 허가를 받아 세관 감독관리 화물의 운송, 저장, 가공, 조립, 판매, 전시 등 업무에 종사하는 업체가 아래 상황이 발생할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 내에 3회 이상 세관에 의해 업무를 중단된 경우 - 세관에 의해 관련 업무를 회복한 후 1년 내에 “세관행정처벌실시조례” 제26조 규정을 재위반할 경우 - 기타 등록 증명서류를 철회 또는 통관업무 	등록 증명서류 철회, 통관업무 대행자격 취소

위반상황	제재조치
대행자격을 취소해야 하는 기타 위법행위	
통관업체, 통관인원이 불법으로 통관업무를 대행 또는 세관에서 허용한 업무범위를 초과하여 통관수속을 대행할 경우	- 시정을 명령, 5만 위안 이하 벌금, 6개월 이내 통관업무 또는 관련업무 중지 - 엄중할 경우, 등록 증명서류 철회, 통관업무 대행자격 취소
송·수하인, 통관업체, 통관인원이 세관 요원에게 뇌물을 줄 경우	- 등록 증명서류 철회, 통관업무 대행자격 취소, 10만 위안 이하 벌금 - 범죄를 구성할 경우 형사책임 추궁, 통관업체로 재등록 불가능
세관에 통관대행을 등록하지 않고 통관업무 대행자격이 없이 통관업무를 대행할 경우	즉시 단속하며 불법소득 몰수, 10만 위안 이하 벌금
허위 서류를 제공하여 세관에 통관업체로 등록 또는 통관자격을 취득할 경우	등록 증명서류 철회, 통관업무 대행자격 취소, 30만 위안 이하 벌금
법인이나 기타 조직이 세관법을 위반할 경우	법인이나 조직에 처분, 주관인원과 책임자에게 경고처분, 5만 위안 이하 벌금, 불법소득 몰수

3. 납세분쟁 처리방법

1) 납세분쟁 범위

- 세관 납세분쟁은 세관의 세수 관리직책을 행사시 구체적 행정행위에 불복하여 발생하는 행정분쟁임
- 세관 납세분쟁의 범위는 비교적 넓으며 “수출입관세조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 대상자가 세관의 납세 의무자 확정, 과세가격 확정, 상품 분류, 원산지 확정, 세율과 환율 적용, 세금 감면 또는 면제, 세금 보충징수와 환급, 체납금 징수, 징세방식 확정, 납세장소 확정 등에 질의를 제출할 경우 등이 속함
- “세관법”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 대상자는 세수 감독관리 결정을 내린 세관의 상급 세관에 행정재심의를 제출해야 하며, 행정재심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 “행정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2) 세관 행정재심의

□ 정 의

- 세관 행정재심의는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세관과 그 인원의 구체적 행정행위가 합법적 권익을 침해했다고 인정하여 법에 따라 세관 재심의기관에 재심의 신청하며 세관 재심의기관은 법정 절차에 따라 상기 구체적 행정행위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심사하며 결정을 내리는 활동임
- 세관 행정재심의의 특징
 - 세관 재심의 신청인은 세관이 구체적 행정행위에 불복한 이해관계자임
 - 세관 재심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해 구체적 행정행위를 내린 세관임
 - 세관으로부터 구체적 행정행위를 받은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세관의 구체적 행정행위가 그 합법적 권익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세관 재심을 제출
 - 세관 행정재심의 재심의기관은 구체적 행정행위를 내린 세관의 상급 세관이 세관총서 구체적 행정행위에 불복할 경우, 세관총서에 재심을 제출

□ 세관 행정재심의 범위

구분	세관 행정재심의 범위
1	세관의 경고, 벌금, 화물·물품·운송공구와 특별제조 설비 몰수, 몰수할 수 없는 화물·물품·운송공구의 등가대금 추징, 특정 감면세 우대를 임시중지 또는 취소, 관련 업무 또는 자격 임시중지, 등록 철회, 통관신고 자격 취소 및 기타 행정처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2	세관의 관련 화물, 물품, 불법소득, 운송공구, 특별제조 설비에 대한 압수결정에 불복할 경우
3	세관의 인신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성 행정조치에 불복할 경우
4	세관의 관련 화물, 물품, 운송공구, 장부, 증서 또는 기타 재산에 대한 압류, 관련 수출입화물, 장부, 증서에 대한 밀봉 보존 등 행정조치에 불복할 경우
5	세관의 담보를 수취하는 구체적 행정행위에 불복할 경우
6	세관의 강제 집행조치에 불복할 경우
7	세관에서 납세 의무자 확정, 과세가격 확정, 상품 분류, 원산지 확정, 세율과 환율 적용, 세금 감면 또는 면제, 세금 보충징수와 환급, 체납금 징수, 징세방식 확정, 납세장소 확정 등 기타 세금 징수와 관련되는 구체적 행정행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구분	세관 행정재심의 범위
8	법정 조건에 부합된다고 인정하여 세관에 행정허가사항 또는 행정비준사항을 신청했지만 세관에서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을 경우
9	세관에서 운송공구와 장소를 검사하고 화물, 물품을 검사하거나 기타 감독관리 조치를 취한 것에 불복할 경우
10	세관의 반품 명령, 통관 불가, 시정 명령, 해체 명령과 매각 등 행정결정에 불복할 경우
11	세관 검사 결정 또는 기타 검사 구체적 행정행위에 불복할 경우
12	세관의 기업분류 결정과 그 분류결정에 따른 관리조치에 불복할 경우
13	세관에서 법에 따라 지적재산권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거나 세관에서 채택한 지적재산권 보호조치에 불복할 경우
14	세관에서 법에 따라 통관신고, 통관 등 세관수속을 처리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경우
15	세관에서 불법으로 신고지체금 또는 기타 비용을 수취하고 불법으로 기타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고 인정할 경우
16	세관에서 법에 따라 인신권리, 재산권리를 보호하는 법정 직책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경우
17	세관에서 정부정보 공개업무에서의 구체적 행정행위가 합법적 권익을 침해했다고 인정할 경우
18	세관의 기타 구체적 행정행위가 합법적 권익을 침해했다고 인정할 경우

□ 세관 행정재심의 절차

○ 세관 행정재심의 신청

-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세관의 구체적 행정행위가 합법적 권익을 침해했다고 인정할 경우, 60일 내 관할권이 있는 세관에 행정재심의를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음

○ 세관 행정재심의 신청의 수리

- 행정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후 5일 내에 수리결정을 내리며 “행정재심의 수리통지서”와 “행정재심의 담복통지서”를 발급해야 함

○ 세관 행정재심의 심리

- 세관 행정재심의 사건은 3명 이상의 홀수 행정재심의인원이 합의제 심리를 실시하며 그 중에서 1명 행정재심의인원이 주심을 담당
- 사실이 명확하고 사건이 간단하며 분쟁이 크지 않는 사건에 대해 합의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2명 이상 행정재심의인원이 심리에 참여해야 함

- 세관 행정재심의 결정
 - 세관 행정재심의기관은 신청 수리일로부터 60일 내(특별 상황에서 30일 연장 가능)에 행정재심의 결정을 내리며 신청인에게 송달
- 세관 행정재심의 집행
 - 신청인이 법정 기한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세관 행정재심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세관은 자체로 강제 집행조치를 취하거나 법원에 강제 집행조치를 할 수 있음

□ 행정재심의 기한

- 신청인의 행정재심의 신청기한
 - 신청인이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구체적 행정행위를 발견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행정재심을 신청하며 불가항력 또는 기타 정당한 이유로 법정 신청기한을 지체할 경우, 신청기한은 장애를 해소한 날로부터 계산
- 재심의기관의 수리 결정기한
 - 세관 재심의기관은 행정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후 5일 내에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수리를 결정할 경우에 재심의기관은 재심의 신청일을 수리일로 정함
- 행정재심의 신청서류 보정기한
 - 행정재심의 신청서류가 부족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 세관 행정재심의기관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5일 내에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보정할 것을 통보
 - 신청인은 보정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세관 행정재심의기관에 보정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류 보정에 소요되는 시간은 행정재심의 수리기한에 포함되지 않음
- 팩스, 이메일방식으로 행정재심의 신청서류 원본 제출기한
 - 세관 행정재심의기관에서 신청인이 팩스, 이메일방식으로 제출한 행정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후, 반드시 신청인에게 “행정재심의 신청 수리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관련서류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고 통보해야 함
- 피신청인의 서면 답변과 증거서류 제출기한

- 피신청인은 신청서 부분 또는 신청기록 복사본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서면 답복을 제출하며 최초 구체적 행정행위를 내린 증거, 근거와 기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신청인에 대한 “행정재심의 답복서” 부분 송달기한
 - 세관 행정재심의기관은 피신청인이 제출한 “행정재심의 답복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함
- 재심의기관의 재심의 결정기한
 - 세관 행정재심의기관은 신청 수리일로부터 60일 내에 행정재심의 결정을 내려야 하며, 특별 상황에서는 재심의기관의 책임자의 비준을 받아 최대로 30일 연장할 수 있음
- 신청인의 행정소송 제출기한
 - 신청인이 재심의기관의 재심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재심의 결정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재심의기관이 기한을 넘어 재심의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경우, 신청인은 재심의 기한 만기일로부터 15일 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납세분쟁 등 법률, 법규에서 반드시 행정재심의기관에 행정재심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재심의 결정에 불복하여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행정재심의기관에서 수리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은 수리하지 않는다는 결정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4) 세관 행정소송

□ 정 의

- 인민법원에서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청구에 따라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의해 세관의 구체적 행정행위의 합법성을 심사하며 판결하는 국가 소송활동임

□ 세관 행정소송 범위

구분	상세내역
1	세관의 행정처벌에 불복할 경우
2	세관의 압수행위에 불복할 경우
3	세관의 인신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성 행정조치에 불복할 경우
4	세관의 강제성조치에 불복할 경우
5	세관의 담보를 수취하는 구체적 행정행위에 불복할 경우
6	세관의 강제 집행조치에 불복할 경우
7	납세분쟁에 불복할 경우
8	행정처가 관련사항에 불복
9	세관의 검사와 검사행위에 불복할 경우
10	세관의 행정결정에 불복할 경우
11	세관 검사 결정에 불복할 경우
12	세관의 기업분류 결정에 불복할 경우
13	세관에서 법에 따라 지적재산권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에 불복할 경우
14	세관에서 통관신고, 통관 등 세관수속 등 처리행위에 불복할 경우
15	세관에서 불법으로 체납금, 보증금과 기타 비용을 수취하는 행위에 불복할 경우
16	세관에서 법에 따라 인신권리, 재산 권리를 보호하는 행위에 불복할 경우
17	세관에서 규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행위에 불복할 경우
18	세관의 기타 구체적 행정행위가 합법적 권익을 침해했다고 인정할 경우

□ 행정소송 법정기한

-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직접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구체적 행정행위를 발견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함

□ 세관 행정소송 기본절차

- 세관 행정소송 수리절차는 제1심 절차, 제2심 절차, 심판감독 절차를 포함하며 제1심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하며 전체 심판절차의 기초임
- 제1심 절차는 인민법원에서 세관 행정소송 사건을 수리한 후 그 사건 수리에 적용하는 절차로서 개정 준비, 법정 조사, 법정 변론, 합의법정 평의, 판결 선고

등을 포함

- 만약 제1심에서 당사자가 제1심 판결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상소를 제기할 경우, 사건은 제2심 절차에 들어가며 제2심에서 사실이 명확한 사건에 대해 서면 심리를 할 수 있으며 제2심 법원의 판결은 종심 판결로서 상소를 다시 제기하지 못함
- 행정소송판결 감독관리 절차는 인민법원에서 당사자의 신청, 검찰기관의 항소를 통해 또는 인민법원에서 스스로 발견한 법률효력을 발생한 판결, 재결이 잘못되었을 경우, 법에 따라 다시 수리하는 절차임

제 2 절 수입 통관절차

I. 수입화물의 통관절차

- 화물별 수입 통관절차

구 분	초기단계	출입국단계	후속단계
일반수입화물	/	수입신고 세금비용 납부 검사 및 통과 화물 수령	/
보세수입화물	가공무역 등기/매뉴얼 신청		심의삭제
특정감면세화물	감면세증명 신청		세관 감독관리 해소
임시입국화물	전시품입국 등기		사건 취소

- 일반 수입화물의 세관 통관절차
 - 1) 신청인 사전입력신고
 - 2) 세관 서류심사진행
 - 3) 신청인 세관 현장 통관관련서류제출
 - 4) 세관 세금납부서 발행
 - 5) 신청인 세금 납부
 - 6) 세관 화물검사

- 7) 세관 화물통과
- 8) 신청인 화물수령
- 9) 세관 증명서 발급

○ 수입화물의 통관관련서류

구분	세부내역
기본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 선하증권 - 상업송장 - 포장명세서 - 무역계약서 - 원산지증명서
특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허가증서 - 상무부서의 비준증서 - 가공무역등록매뉴얼 - 감면세증명 - 외환송금심사증서 - 담보증서 등

II. 수입식품(일반)의 통관절차

○ 일반 수입식품의 세관 통관절차

☞ 검험검역 1단계

- 1) 신청인 검험검역신고
- 2) 출입경검험검역기구 입경화물통관단 발행

☞ 통관단계

- 1) 신청인 사전입력신고
- 2) 세관 서류심사진행
- 3) 신청인 세관 현장 통관관련서류제출
- 4) 세관 세금납부서 발행
- 5) 신청인 세금 납부
- 6) 세관 화물검사

- 7) 세관 화물통과
- 8) 신청인 화물수령
- 9) 세관 증명서 발급

☞ 검험검역 2단계

- 1) 출입경검험검역기구 샘플검사
- 2) 출입경검험검역기구 위생검역증서 발행

○ 일반 수입식품의 통관관련서류

구분	세부내역
출입경검험검역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 선하증권 - 상업송장 - 포장명세서 - 무역계약서 - 원산지증명서 - 위생증명 - 중문라벨
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 선하증권 - 상업송장 - 포장명세서 - 무역계약서 - 입경화물통관단

Ⅲ. 수입식품의(품목별) 통관절차

1. 육제품

- 검역조건 : 국가질검총국 2002년 공고 2호 <검역심사허가를 받아야 하는 진경 동식물, 동식물제품 및 기타 검역물 목록>에 근거 수입자는 대외무역계약 체결 전에 국가질검총국에 <진경동식물검험검역허가증>을 신청하여 취득
- 통관조건 : 7A

Code	명 칭	발급기구
7	자동수입허가증 Automatic import licence	상무부
A	입경화물통관단 Certificate of inspection for goods inward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기구

※ 7 자동수입허가증은 소, 돼지, 양, 닭에만 적용

- 통관절차 : 일반식품과 동일 단 통관서류에서 소, 돼지, 양, 닭은 상무부 발급 자동수입허가증 추가

2. 수산동물

- 검역조건 : 국가질검총국 2004년 공고 111호<진경검역심사허가를 취소하는 동 식물제품>에 근거 <진경동식물검험검역허가증> 발급이 필요 없이 일반 식품과 동일
- 통관조건 : AU

Code	명 칭	발급기구
A	입경화물통관단 Certificate of inspection for goods inward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기구
U	합법어획채취제품통관증명 Lawfu fish for products clearance certificate	농업부

※ 멸종위기 수산물은 농업부에서 발급한 멸종위기물종수입허가증명서 제공

※ U 합법어획채취제품통관증명은 비막치어(tooth fish), 눈다랑어(bigeye tunas), 대서양 참다랑어(atlantic bluefin), 황새치(sword fish)에만 적용

- 통관절차 : 일반식품과 동일 단 통관서류에서 비막치어(tooth fish), 눈다랑어(bigeye tunas), 대서양 참다랑어(atlantic bluefin), 황새치(sword fish) 농업부 발급 합법어획채취제품통관증명 추가

3. 채소&과일류

- 검역조건 : 신선과일 및 토마토, 가지, 고추는 국가질검총국 2002년 공고 2호 <검역심사허가를 받아야 하는 진경동식물, 동식물제품 및 기타 검역물 목록>에 근거 수입자는 대외무역계약 체결 전에 국가질검총국에 <진경동식물검험검역허가증>을 신청하여 취득

- 통관조건 : A

Code	명 칭	발급기구
A	입경화물통관단 Certificate of inspection for goods inward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기구

- 통관절차 : 일반식품과 동일

4. 식량&가공품

- 검역조건

- 식량은 국가질검총국 2002년 공고 2호 <검역심사허가를 받아야 하는 진경동식물, 동식물제품 및 기타 검역물 목록>에 근거 수입자는 대외무역계약 체결 전에 국가질검총국에 <진경동식물검험검역허가증>을 신청하여 취득
- 식량 가공품(쌀, 쌀가루, 밀가루, 옥수수가루, 등)은 국가질검총국 2004년 공고 111호<진경검역심사허가를 취소하는 동식물제품>에 근거 <진경동식물검험검역허가증> 발급이 필요 없이 일반 식품과 동일

- 통관조건 : At

Code	명 칭	발급기구
A	입경화물통관단 Certificate of inspection for goods inward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기구
t	관세쿼터 증명 Certificate of customs quota	상무부쿼터허가증사무국

※ t 관세쿼터 증명은 밀, 옥수수, 벼 및 가공품에만 적용

- 통관절차 : 일반식품과 동일 단 밀, 옥수수, 벼 및 가공품은 통관서류에 상무부 발급 관세쿼터 증명 추가

5. 유제품(조제분유 포함)

- 검역조건 : 한국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발급한 <Attached Health certificate for dairy products exported to China from Republic of Korea>, 신선우유는 국가질검총국 2002년 공고 2호 <검역심사허가를 받아야 하는 진경동식물, 동식물제품 및 기타 검역물 목록>에 근거 수입자는 대외무역계약 체결 전에 국가질검총국에 <진경동식물검험검역허가증>을 신청하여 취득
- 통관조건 : 7A

Code	명칭	발급기구
7	자동수입허가증 Automatic import licence	상무부
A	입경화물통관단 Certificate of inspection for goods inward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기구

※ 7 자동수입허가증은 크림, 밀크, 유장, 조제분유에만 적용

- 통관절차 : 일반식품과 동일 단 통관서류에서 크림, 밀크, 유장, 조제분유는 상무부 발급 자동수입허가증 추가

6. 약재&기능성 식품(대표 인삼류)

- 검역조건(약재) : 신선인삼을 제외한 기타인삼(홍삼, 백삼 등)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 수입약재허가증서를 신청하여 취득(수입약재는 통관지역 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검사하여 수입약품통관단 발급)
- 검역조건(기능성 식품) : 중국위생부 보건식품 사용가능 원료목록에 수록된 원

료를 사용한 식품은 수입 전에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 수입보건식품등록을 신청하여 수입보건식품허가증서 취득

○ 통관조건 : AQ

Code	명 칭	발급기구
A	입경화물통관단 Certificate of inspection for goods inward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기구
Q	수입약품통관당 Report of inspection of soundness on import medicines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 Q 수입약품통관단은 신선인삼을 제외한 기타(홍삼, 백삼 등)에만 적용

○ 통관절차 : 기능성 식품은 일반식품과 동일하며 신선인삼을 제외한 기타(홍삼, 백삼 등)는 지정 세관(약품수입 허가세관&약재수입 허가세관)을 통하여 수입

※ 첨부 1) 약품수입 허가세관&약재수입 허가세관

구분	세관
약품수입허가세관 (19)	북경(北京), 천진(天津), 대련(大连), 상해(上海), 남경(南京), 항주(杭州), Ningbo(宁波), 복주(福州), 하문(厦门), 청도(青岛), 무한(武汉), 광주(广州), 심천(深圳), 주해(珠海), 해구(海口), 중경(重庆), 성도(成都), 서안(西安), 남녕(南宁)
약재수입허가변경세관 (19)	흑하(黑河), 동녕(东宁), 집안(集安), 장백(长白), 도문(图门), 삼합(三合), 이련호특(二连浩特), 만주리(满洲里), 빙상(凭祥), 동흥(东兴), 용방(龙邦), 서리(瑞丽), 천보(天保), 경홍(景洪), 하구(河口), 아라산구(阿拉山口), 콕이과사(霍尔果斯), 토이소트(吐尔尕特), 홍기랍보(红其拉普), 장목(樟木)

※ 첨부 2) 보건식품 사용가능 원료목록

人參、人參葉、人參果、三七、土茯苓、大蓟、女貞子、山茱萸、川牛膝、川貝母、川芎、馬鹿胎、馬鹿茸、馬鹿骨、丹參、五加皮、五味子、升麻、天門冬、天麻、太子參、巴戟天、木香、木賊、牛蒡子、牛蒡根、車前子、車前草、北沙參、平貝母、玄參、生地黄、生何首烏、白及、白朮、白芍、白豆蔻、石決明、石斛(需提供可使用證明)、地骨皮、當歸、竹茹、紅花、紅景天、西洋參、吳茱萸、懷牛膝、杜仲、杜仲葉、沙苑子、牡丹皮、芦荟、苍朮、補骨脂、诃子、赤芍、远志、麥門冬、龟甲、佩兰、侧柏叶、制大黃、制何首烏、刺五加、刺玫果、泽兰、泽泻、玫瑰花、玫瑰茄、知母、罗布麻、苦丁茶、金荞麦、金櫻子、青皮、厚朴、厚朴花、姜黃、枳壳、枳实、柏子仁、珍珠、绞股藍、胡芦巴、茜草、葶苈、韭菜子、首烏藤、香附、骨碎補、党参、桑白皮、桑枝、浙貝母、益母草、积雪草、淫羊藿、菟絲子、野菊花、银杏叶、黃芪、湖北貝母、番泻叶、蛤蚧、越橘、槐实、蒲黃、蒺藜、蜂胶、酸角、墨旱莲、熟大黃、熟地黄、鳖甲
--

통관부서 연락처

■ 직속세관 통관연락처 ■

No	세관명칭	주소	전화
○ 총서 및 분서			
총서	중국세관총서	北京市建国门内大街6号	86-10-6519-4114
분서	광동분서	广州市沙面五街2号	86-20-8110-8000
○ 직속세관			
1	북경세관	北京市朝阳区光华路甲10号	86-10-8573-6114(감독관리통관처)
2	천진세관	天津市经济技术开发区宏达街15号	86-22-6520-6319(감독관리통관처)
3	석가장세관	石家庄市和平路528号	86-311-8786-9191(감독관리통관처)
4	태원세관	太原市学府路112号	86-351-711-9057(종합업무처)
5	후허호터세관	呼和浩特市新城区东库街19号	86-471-698-2500
6	만주리세관	满洲里市东五道街75号	86-470-229-9805(감독관리통관처)
7	대련세관	大连市金马路219号	86-411-8261-8114
8	심양세관	沈阳市沈河区青年大街56号	86-24-2269-5555
9	장춘세관	长春市自由大路4448号	86-431-460-1676(감독관리통관처)
10	하얼빈세관	哈尔滨市南岗区嵩山路88号	86-451-8238-1770(감독관리통관처)
11	상해세관	上海市中山东一路13号	86-21-5505-1199(감독관리통관처)
12	남경세관	南京市龙蟠中路360号	86-25-8442-2114
13	항주세관	杭州市黄龙路7号	86-571-8666-6114
14	닝파세관	宁波市马园路89号	86-574-8909-0000(감독관리통관처)
15	합비세관	合肥市长江西路669号	86-551-354-9656(감독관리통관처)
16	복주세관	福州市江滨东大街76号	86-591-8708-2999
17	하문세관	厦门市鹭江道269号	86-592-235-5151(감독관리통관처)
18	남창세관	南昌市沿江中大道100号	86-791-8630-7114
19	청도세관	青岛市西陵峡二路2号	86-532-8295-5112
20	정주세관	郑州市农业路东30号	86-371-6559-9000(감독관리통관처)
21	무한세관	武汉市汉口沿江大道95号	86-8276-8114
22	장사세관	长沙市东二环一段678号	86-731-8478-1095(감독관리통관처)
23	광주세관	广州市天河区珠江新城花城大道83号	86-20-8112-2000
24	심천세관	深圳市和平路1089号	86-755-8439-8000
25	공북세관	珠海市拱北水湾路18号	86-756-816-1205(감독관리통관처)
26	산두세관	汕头市珠江路34号	86-754-8819-8114

No	세관명칭	주소	전화
27	황포세관	广州市经济技术开发区保金路36号	86-20-8213-0000
28	강문세관	江门市蓬江区海傍街43号	86-750-326-3892(감독관리통관처)
29	잠강세관	湛江市人民大道中54号	86-759-325-1118
30	남녕세관	南宁市桃园路65号	86-771-536-8114
31	해구세관	海口市滨江大道61号	86-898-6851-6888(감독관리통관처)
32	중경세관	重庆市渝北区龙山一路1号	86-23-6770-9438
33	성도세관	成都市天顺中街66号	86-28-8539-1120(감독관리통관처)
34	귀양세관	贵阳市遵义路9号	86-851-578-6235(종합업무처)
35	곤명세관	昆明市北京路618号	86-871-301-6999
36	라사세관	拉萨市北京中路72号	86-891-628-3145
37	서안세관	西安市高新区唐延路19号	86-29-8319-6063(감독관리통관처)
38	란주세관	兰州市安宁区银安路9号	86-931-770-5076(종합업무처)
39	서녕세관	西宁市八一中路19号	86-971-886-6316
40	은천세관	银川市正源南街220号	86-951-567-9114
41	우루무치세관	乌鲁木齐市北京南路295号	86-991-362-7532(감독관리통관처)

※ 전국 세관 통일 서비스 핫라인 : 12360

자료출처 및 참고자료

I. 웹사이트

- 중앙인민정부 : <http://www.gov.cn>
- 세관총서 : <http://www.customs.gov.cn>
- 상무부 : <http://www.mofcom.gov.cn>
- 국가질검총국 : <http://www.aqsiq.gov.cn>
-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 <http://www.sdfa.gov.cn>

Ⅱ. 관련법규

구분	주요법규
법률 (전인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외무역법 - 세관법
행정법규 (국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수출입관리조례 - 화물수출입관리조례 - 수출입관세조례 - 지식재산권세관보호조례 - 수출입화물원산지조례 - 세관행정처벌조례
부서규장제도 (중앙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수출입화물징세관리방법 - 세관수출입화물검사관리방법 - 세관수출입화물관세지급필가격확정방법 - 세관수출입화물감면세관리방법 - 세관지식재산권보호조례실시방법 - 화물자동수입허가증관리방법 - 대외무역경영자등록관리방법 - 농산물수입관세쿼터관리집행방법 - 화물수입허가증관리방법

Ⅲ. 관련자료

- 중화인민공화국세관수출입세칙(2012년)

검역제도

제1절 검역제도 일반

I. 관리체계

1. 국가질검총국 관리체계

-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은 전국의 품질, 계량, 출입국 상품 검험, 출입국 위생검역, 출입국 동식물 검역, 수출입식품안전과 인증인가, 표준화 등 업무를 주관하며 행정집법기능을 행사하는 국무원 직속기구임
- 직속 출입국검험검역국 : 31개 성(자치구, 직할시) 35개 직속 출입국검험검역국을 설립했고 약 300개 분국과 200여개 사무소를 설립하여 관할지역의 수출입상품 검험과 출입국 위생검역, 동식물 검역을 책임지며 31개 성(자치구, 직할시)에 성급 품질기술감독국을 설립

Ⅱ 출입국검험검역기구, 세관, 품질기술 감독관리의 역할 Ⅱ

구분	세부내용
출입국검험검역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에 소속 - 출입국위생검역, 동식물검역, 수출입상품검험의 주관부서 - 법정검험검역대상에 대한 신고와 검험검역만 책임
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총서에 소속 - 모든 수출입 화물에 대해 징세와 합법성 감독을 진행
품질기술감독관리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제품품질, 표준계량과 특종설비 등의 감독관리를 책임

2. 출입국검험검역 주요업무

업무분류	업무내용
수출입상품 검험	“출입국검험검역기구에서 검험검역을 실시하는 출입국상품목록”에 포함된 출입국상품과 기타 법률, 법규에서 반드시 검험을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한 출입국상품에 대한 검험
수입상품 인증관리	국가에서 인류건강과 동식물건강 및 환경보호와 공공안전과 연관되는 제품에 대한 강제성인증제도
입국폐기물원료 선적전의 검험	국가에서 원료로 수입하는 것을 허용한 폐기물에 대한 선적전 검험제도
수출상품 품질허가	국가에서 중요한 수출상품에 대한 품질허가제도
식품위생 감독검험	수입식품(음료, 주류, 설탕류를 포함), 수출식품, 식품첨가제, 식품용기, 포장재료, 식품용공구와 설비에 대한 위생감독검험
동식물 검역	출입국 동식물, 동식물제품과 기타 검역물, 동식물 및 동식물제품과 기타 검역물의 적재용기, 포장물, 깔개재료, 동식물 전염병지역의 운송공구, 입국시 해체한 폐기 선박, 식물 종자와 종묘, 기타 번식재료에 대한 검역허가제도
출국상품 운송포장 검험	반드시 검험검역기구의 검험을 받아야 하는 수출상품의 운송포장에 대한 성능검험
외상투자재산 감정	외상투자 재산 감정은 상품의 가치감정, 손실감정, 상품의 품목, 품질, 수량에 대한 감정 등을 포함
화물 적재와 파손 감정	선박과 컨테이너로 식량과 식용유식품, 냉동품 등 부식되기 쉬운 식품을 적재하여 수출할 경우, 선박과 컨테이너에 대한 감정
위생검역과 처리	출입국 인원, 교통공구, 컨테이너, 수하물, 화물, 우송물 등에 대한 의학검사와 위생검사
섭외검험검역감정 심사절차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에서 설립하는 중외합자, 중외합작의 수출입상품 검험, 감정, 인증회사에 대한 심사
외국 및 국제조직과의 합작	WTO/TBT협약서와 SPS협약서 자본업무, UN, APCE과 ASEM 등 국제조직과의 연락업무, 정부 간 검험검역 합작협약서, 인증인가 합작협약서, 검험검역 협약서 집행의정서 등의 체결과 실시를 책임

Ⅱ 법률근거, 검험검역내용, 검험방식 Ⅱ

업무	항목	세 부 내 역
수출입상품검험	법률근거	- “수출입상품검험법” - “수출입상품검험법실시조례”
	검험내용	- 수출입상품의 품질, 규격, 수량, 중량, 포장 및 안전, 위생, 건강, 환경보호, 사기방지 등 요구의 부합여부
	검험방식	- 법정검험 - 계약검험 - 공정감정 - 위탁검험
출입국동식물검역	법률근거	- “출입국동식물검역법” - “출입국동식물검역법실시조례”
	검역내용	- 출입국 동식물과 동식물제품의 생산, 가공, 저장과정에 대한 동식물 검역
	검역방식	- 입국검역 - 출국검역 - 중계검험 - 출입국 휴대물과 우송물 검역 - 출입국 운송공구 검역
국경위생검역	법률근거	- “국경위생검역법” - “국경위생검역법실시세칙” - “식품안전법” - “식품안전법실시조례”
	검역내용	- 출입국 교통공구, 화물, 운송용기 및 항구 관할구역의 공공장소, 환경, 생활시설, 생산설비에 대한 위생검사, 감정, 평가와 샘플링 검험
	검역방식	- 출입국 검역 - 국경 전염병 검사 - 출입국 위생감독

3. 법률체계

- 중국의 검역관리제도는 국가주석 령(令)으로 발표되는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험법>, <중화인민공화국진출경동식물검역법> 등 국가법
- 국무원 령(令)으로 발표되는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험법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진출경동식물검역법실시조례> 등 행정법규

- 주관부서 령(令)으로 발표되는 <수출입식품안전관리방법>, <수출입육류검험검역관리방법>, <수출입수산물검험검역관리방법> 등 규장제도로 구성

Ⅰ 중국 수출입 관리제도의 법률체제 Ⅰ

구분	분류	주요법규
1	법 른 (전인대 또는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제정하고 국가주석이 반포하는 규범성 문건의 총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입상품검험법 - 진출경동식물검역법 - 식품안전법 - 국경위생검역법
2	행정법규 (국무원에서 헌법과 기타 관련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국무원 직책범위에서 제정하는 기본 행정관리 규범성 문건의 총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입상품검험법실시조례 - 진출경동식물검역법실시조례
3	부서규장제도 (국무원 부서에서 법률과 국무원의 행정법규, 결정과 명령에 의해 부서 직책범위에서 발표하는 규범성 문건의 총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입식품경외생산기업등록관리방법 - 수출입식품안전관리방법 - 수출입육류제품검험검역관리방법 - 수출입수산물검험검역관리방법 - 수출입사료사료첨가제검험검역관리방법 - 출입경검험검역차압, 압수관리규정 - 수출입상품수량중량검험감정관리방법 - 식품리콜관리규정 - 수입상품파손검험감정관리방법 - 식품라벨관리규정 - 진경과일검험검역감독관리방법 - 진경화물목재포장검역감독관리방법 - 진출경유전자변형제품검험검역관리방법 - 출입경검험검역신고규정

Ⅱ . 검험검역제도

1. 국가 법률

- 1)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험법(국가주석령 67호, 2002.04.28)

총칙

- 국무원은 수출입상품검험부서(이하 국가상검부서)를 설립하여 전국 수출입상

품검험사업을 주관. 국가상검부서가 각 지역에 설치한 수출입상품검험기구(이하 상검기구)는 관할지역 수출입상품검험사업 관리(2조)

- 수출입상품검험은 인류건강과 안전, 동식물 생명과 건강보호, 환경보호, 사기 행위방지, 국가안전보호를 원칙으로 국가상검부서에서 검험실시가 필수적인 수출입상품목록(이하 목록)을 제정, 조정하여 발표(4조)
 - ※ 중화인민공화국세관수출입세칙 세관 감독관리조건 A(입경화물통관단), B(출경화물통관단) 표기 품목
- 목록에 수록된 수출입상품은 상검기구에서 검험을 실시하며 검험을 받지 않은 수출입상품은 판매, 사용 및 수출하지 못함. 목록 내 수출입상품이 국가가 규정한 검험면제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수화인 혹은 발송인의 신청하에 국가상검부서의 심사비준을 거쳐 검험면제(5조)
- 필수적으로 실시해야하는 수출입상품검험은 목록 내 수록된 수출입상품이 국가 기술규범의 강제성요구에 합격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합격여부 판정절차는 샘플채취, 검험과 검사; 평가, 검증과 합격보증; 등록, 인가와 허가 등(6조)
- 목록에 수록된 수출입상품은 국가기술규범의 강제성요구에 따라 검험하며 국가 기술규범의 강제성요구가 제정되지 않은 경우 국가상검부서가 지정한 국외관련 표준에 따라 검험(7조)

□ 수입상품 검험

- 상검기구 검험을 필수적으로 받아야하는 수입상품의 수령인 혹은 대리인은 통관신고지역의 상검기구에 검험 신고. 세관은 상검기구에서 발급한 화물통관증명(입경화물통관단)으로 검사 및 통관허가(11조)
- 상검기구 검험을 필수적으로 받아야하는 수입상품의 수령인 혹은 대리인은 상검기구가 규정한 장소와 기한 내에 검험을 받아야함. 상검기구는 국가상검부서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한 기한 내에 검험을 완료하고 검험증서 발급(12조)
- 본 법이 규정한 상검기구 검험을 필수적으로 받아야하는 수입상품의 수령인이 수입상품의 품질 불합격 혹은 파손, 부족 등으로 대외 클레임시에는 상검기구에

검험 및 증명 발급을 신청(13조)

□ **감독관리**

- 상검기구는 상검기구 검험을 필수적으로 받아야하는 수입상품 외 수출입상품에 대하여 샘플추출검사 실시(19조)
- 수출입화물의 수령인, 발송인을 대리하여 검험수속을 받는 대리인은 상검기구에 등록(注册登记). 검험신고 대리시 위탁서 제출(21조)
- 상검기구는 허가제도를 실시하는 상품에 대하여 증서확인관리 진행, 화물과 증서의 일치여부 및 증서에 대한 확인검사 실시(26조)

2) 중화인민공화국진출경동식물검역법(국가주석령 53호, 1991.10.30)

□ **총칙**

- 국무원은 동식물검역기구(이하 국가동식물검역기구)를 설립 전국 진출경 동식물검역업무를 관리. 국가동식물검역기구가 각 지역에 설치한 동식물검역기구가 진출경동식물검역을 실시.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에서 전국의 진출경동식물검역사업을 주관(3조)
- 국가는 동식물병원체(균종, 독종 포함), 해충, 기타 유해생물; 동식물역정국가와 지역의 관련 동식물, 동식물제품과 기타 검역물; 동식물시체; 토양의 진경을 금지, 과학연구 등 특수상황은 사전신청(5조)

□ **진경검역(进境检疫)**

- 동물, 동물제품, 식물종자, 종묘 등 기타번식재료 수입은 사전에 신청하여 검역심사비준을 받아야함(10조)
- 무역, 과학기술합작, 교환, 증정, 원조 등으로 수입하는 동식물, 동식물제품 및 기타검역물은 무역계약 혹은 협의서에 중국 법정 검역요구 명시. 수출국가 혹은 지역 동식물검역기구서 발급한 검역증서 첨부토록 명시(11조)

- 수입동식물, 동식물제품의 화주 혹은 대리인은 수출국가 혹은 지역에서 발급한 검역증서와 무역계약 등으로 동식물검역기구에 검역신고(12조)
- 동물을 적재한 운송도구가 세관 도착 시 동식물검역기구는 예방조치로 운송도구에 접근하는 인원, 운송도구와 오염된 장소에 대하여 소독처리(13조)
- 수입 동식물, 동식물제품 및 기타검역물은 진경세관에서 검역을 실시. 동식물검역기구의 동의하에 하역. 격리검역대상은 동식물검역기구가 지정한 장소에서 격리 검역. 진경세관 검역조건 미달 시 국가동식물검역기구는 지정장소로 운송 검역실시(14조)
- 수입동물이 검역불합격 시 동식물검역기구는 <검역처리통지서>를 발급 화주 혹은 대리인에 아래와 같이 처리토록 통지
 - 수입동물제품과 기타검역물이 검역불합격시 동식물검역기구는 <검역처리통지서>를 발급 화주 혹은 대리인에 위해요소 제거, 반품 혹은 소각처리토록 통지하며 위해요소 제거 후 합격제품은 진경허가(16조)

■ 검역불합격 처리조치 ■

검출사항	처리사항
1급 전염병, 기생충 검출 동물	동일무리의 전반 동물 반품 혹은 도살후 소각처리
2급 전염병, 기생충 검출 동물	반품 혹은 도살후 소각처리, 동일무리 전반동물 반품 혹은 기타 지정장소에 격리관찰

- 수입식물, 식물제품과 기타검역물이 검역에서 식물 위험성병, 충, 잡초 검출 시 동식물검역기구는 <검역처리통지서>를 발급 화주 혹은 대리인에 위해요소 제거, 반품 혹은 소각처리토록 통지하며 위해요소 제거 후 합격제품은 진경허가(17조)
- 본 법의 16조항 1~2급 전염병, 기생충과 17조항 식물 위험성병, 충, 잡초 목록은 국무원농업행정주관부서에서 제정 발표(18조)
- 본 법의 18조항이 규정한 목록 외 농, 임, 목, 어업에 엄중한 위험이 있는 기타 병충해 검출 시 입경세관의 동식물검역기구에서 국무원농업행정주관부서 규정

에 따라 화주 혹은 대리인에 위해요소 제거, 반품 혹은 소각처리토록 통지하며 위해요소 제거 후 합격한 제품은 진경허가(19조)

※ 1998년 국무원기구개혁방안에 따라 기존 국가수출입상품검험국, 농업부 동식물검역국, 위생부 위생검역국을 합병하여 국가출입경검험검역국으로 신설 검역업무 총괄, 기존 농업부 동식물검역국 업무는 동식물검역감독관리사에 위생부 위생검역국 업무는 위생검역감독관리사로 이전

2. 국무원 행정법규

1)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험법실시조례(국무원 령 447호, 2005.08.31)

□ 총칙

- 국가질량감독검역검험총국(이하 국가질검총국)은 전국 수출입상품검험사업을 주관. 국가질검총국이 각 지역에 설치한 출입경검험검역국 및 지사(이하 출입경검험검역기구)는 관할지역 수출입상품검험사업 관리(2조)
- 국가질검총국은 상검법 4조항 규정에 따라 검험실시가 필수적인 수출입상품목록(이하 목록)을 제정 및 조정 발표(3조)
 - ※ 중화인민공화국세관수출입세칙 세관 감독관리조건 A(입경화물통관단), B(출경화물통관단) 표기 품목
- 출입경검험검역기구는 목록에 수록된 상품 및 법률, 행정법규가 출입경검험검역기구에서 검험해야한다고 규정한 기타 수출입상품에 대하여 검험(이하 법정검험) 실시, 법정검험 외 상품은 샘플추출검험(4조)
- 샘플, 선물, 임시 진출경화물 및 기타 비 무역성물품은 검험 면제, 단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 목록 내 수출입상품이 국가가 규정한 검험면제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수령인, 발송인 혹은 생산기업에서 신청하여 국가질검총국이 심사비준 후 검험 면제(6조)
- 법정검험 수출입상품은 출입경검험검역기구에서 상검법 제7조에 규정에 따라 검험 실시. 국가질검총국은 수출입상품검험사업의 실수요와 국제표준에 따라

수출입상품검험방법의 기술규범과 표준 제정(7조)

- 출입경검험검역기구의 검험실시내용은 안전, 위생, 건강, 환경보호, 사기방지 등 요구 적합여부와 품질, 수량, 중량 등 항목(9조)
- 출입경검험검역기구는 허가증제도를 실시하는 상품과 국가가 인증을 필수적으로 거쳐야한다고 규정한 수출입상품에 대하여 증서검사관리 실시, 증서를 확인하고 화물과 대조하여 일치여부 확인(10조)

□ 수입상품 검험

- 법정검험 수입상품 수령인은 무역계약, 인보이스,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등 증서와 관련 비준증서로 세관신고지역 출입경검험검역기구에 검험 신고. 세관 통관허가 후 20일내에 본 조례 18조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경검험검역기구에 검험 신청. 증서검사관리 수입상품 수화인은 세관신고지역 출입경검험검역기구에 증서검사 신청(16조)
- 법정검험 수입상품 및 증서검사관리 수입상품은 출입경검험검역기구에서 발급한 입경화물통관단에 의거 세관통관수속 진행(17조)
- 법정검사 수입상품은 수령인이 검험신고에서 신고한 목적지에서 검험실시, 대종벌크상품, 쉽게 부패하는 상품, 원료로 사용하는 고체폐기물, 쉽게 파손 손실되는 상품은 하역지에서 검험실시(18조)
- 법률, 행정법규가 별도로 규정한 외 법정검험 수입상품이 검험에서 인체재산안전, 건강, 환경보호 등 항목 불합격 시 출입경검험검역기구는 당사자에 폐기를 명하거나 반품처리통지서를 제출하여 세관에 서면통지하고 세관은 반품처리통지서에 따라 반품수속 진행, 기타항목 불합격 시 출입경검험검역기구 감독 하에 기술처리를 하고 재 검험 합격 후 판매, 사용 가능(19조)
- 법정검험 외 수입상품이 출입경검험검역기구의 추출검사에서 불합격 시 본 조례 19조항 규정에 따라 처리, 증서검사관리 수입상품은 출입경검험검역기구의 검증에서 불합격 시 본 조례 19조항 규정에 따라 처리(20조)

□ **감독관리**

- 국가는 수출입식품생산기업에 대하여 위생등록(注册登记)관리를 실시하며 위생등록을 취득한 수출입식품생산기업에서 생산한 식품만 수입 혹은 수출할 수 있음. 위생등록관리를 실시하는 수입식품생산기업은 규정에 따라 국가질검총국에 위생등록 신청(32조)
- 수출입식품, 화장품의 경영자 혹은 대리인은 수출입전에 출입경검험검역기구에 라벨내용이 법률, 행정법규 규정 요구와의 부합여부, 품질관련내용의 진실성, 정확성에 대하여 검험을 진행하고 라벨검험증명을 발급받아야 함(34조)

2) 중화인민공화국진출경동식물검역법실시조례(국무원 령 206호, 1997.01.01)

□ **총칙**

▮ **검역실시 물품목록(2조) ▮**

1. 입경, 출경, 국경통과 동식물, 동식물제품과 기타 검역물
2. 동식물, 동식물제품과 기타 검역물을 적재한 적재용기, 포장물, 바닥재
3. 동식물 역정지역에서 온 운송도구
4. 입경하여 해체한 폐기, 중고선박
5. 법률, 행정법규, 국제조약 혹은 무역계약에 동식물검역을 규정한 기타화물 및 물품

- 국무원농업행정주관부서는 전국 진출경동식물검역사업을 주관, 국가동식물검역국은 전국의 진출경동식물검역업무를 관리하며 각 지역에 설치한 동식물검역기구가 진출경동식물검역을 실시(3조)

□ 검역심사비준

■ 수입동식물 및 동식물제품과 기타 검역물 검역심사비준목록

구분	
활 동물	사양, 야생 활 동물, 배태, 정액, 수정란, 종란 및 기타 동물유전물질
식용 동물제품	육류 및 제품(장기 포함, 익혀 만든제품 제외), 알류, 우유
비 식용 동물제품	가죽류, 모류, 뼈&발굽&각 및 제품, 젤라틴, 누에고치, 동물원성사료 및 사료 첨가제, 사료용유청분, 어분, 육분, 골분, 육골분, 유지, 혈분, 혈액 등, 동물성분을 함유한 유기비료
과채류	신선과일, 토마토, 가지, 고추
연초류	담뱃잎, 연초편(烟草薄片)
식량류	밀, 옥수수, 벼, 보리, 흑맥, 연맥, 수수 등
두류	대두, 녹두, 완두, 적두, 잠두, 치크콩
서류	감자, 카사바, 고구마 및 가공제품(감자분 제외)
사료류	밀기울, 콩깻묵, 대두박 등
기타류	식물재배매개체

※ 자료원 : 국가질검총국 2002년 2호공고 & 2004년 111호 공고

■ 진경검역심사비준 조건(10조)

1. 수출국가 혹은 지역에 중대 동식물역정이 없어야함
2. 중국의 동식물검역관련 법률, 법규, 규장의 규정에 부합
3. 중국과 수출국가 혹은 지역간 체결한 양자검역협정(협약, 비망록 포함)에 부합

○ 검역심사비준은 무역계약 혹은 협의서 체결 전에 진행(11조)

■ 진경검역심사비준 신청자료

1. 검험검역기구에서 발급한 등록등기증
2.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발급한 기업법인영업집조
3. 상무부 비준한 수출입권한 문서, 자격증서 혹은 가공무역 문서
4. 냉동 창고 등록자격증명문서 혹은 등록창고와의 협의서(수입육류)
5. 경내 생산, 가공, 저장기업 등록자격증명, 검역감독관리를 실시하는 진경동식물제품은 검험 검역기구에서 발급한 고과보고, 신청업체와 사용업체 다른 경우 가공계약, 저장협약 혹은 대리수입협약(소시지 외피, 식용 녹용, 녹각, 식량, 두류 등)
6. 반품원인설명, 반품협약, 수출제반증서(반품화물)

※ 자료원 : 국가질검총국 수출입식품안전국

■ 진경검역심사비준 절차 ■

1. 신청인 신청표 작성 신청자료와 함께 제출
 2. 직속검험검역국 자료접수하여 5일내 자료보충 요구, 질검총국 수출입식품안전국으로 이송
 3. 수출입식품안전국 최종심사, 온라인으로 <검역허가증> 혹은 <비준 미확취 통지서> 발급
- ※ 전반 심사비준은 직속검험검역국 신청자료 접수일자로부터 20일내 완성

※ 자료원 : 국가질검총국 수출입식품안전국

■ 검역심사비준 재신청 상황(16조) ■

1. 품종 및 수량 변경시
2. 수출국가 혹은 지역 변경시
3. 입경세관 변경시
4. 검역심사비준 기한 초과시

□ 진경검역(进境检疫)

- 국가는 중국으로 동식물제품을 수출하는 국외 생산, 가공, 저장업체에 대하여 등록(注册登记)제도 실시(17조)
- 수입동식물, 동식물제품과 기타 검역물의 화주 혹은 대리인은 진경 전 혹은 진경시점에 동식물검역기구에 검역신고. 부류별로 종축, 금 및 정액, 배태 수입은 입경 30일전에 검역신고, 기타동물수입은 입경 15일전에 검역신고, 식물종자, 종묘 및 기타 번식재료는 입경 7일전에 검역신고, 동식물성 포장재, 바닥재는 진경 시 검역신고(18조)
- 동식물검역기구에 검역신고 시 검역신고서, 수출국가 혹은 지역정부 동식물검역기구에서 발급한 검역증서, 산지증서, 무역계약, 신용증, 인보이스 등을 제출하며 법에 따라 검역심사비준이 필요한 경우 검역심사비준서 제출(19조)

Ⅱ 현장검역 규정(조례 22조항) Ⅱ

구분	검역기준
동물	역병의 임상증상검사; 전염병감염 혹은 동물 사체 발견 시 화주 혹은 대리인의 배합 하에 상황을 조사하여 즉시 처리; 동물의 바닥재, 남은 사료와 배설물은 검역원의 감독하에 화주 혹은 대리인의 위해제거처리
동물제품	부패 변질현상 및 용기, 포장의 완정여부 검사; 요구에 부합되면 하역을 허락하고 포장 불완전, 용기파손 발견 시 화주 혹은 대리인이 정리 후 하역 허락; 상황에 따라 운송도구 관련부위 및 동물제품을 적재한 용기, 외 포장, 바닥재, 오염장소 등에 소독처리 진행; 실험실 검역 수요 시 규정에 따라 샘플 채취; 식물해충 및 잡초종자가 혼입이 쉬운 동물제품은 동시에 식물검역 실시
식물&식물제품	화물과 포장의 병충해검사; 규정에 따라 샘플 채취; 병충해를 발견하여 확산가능성이 있을시 화물 및 운송도구와 하역현장에 필요한 방역조치; 동물전염병지역에서 수입하거나 전염병과 기생충병원체가 쉽게 혼입되는 동물사료용 식물제품은 동시에 동물검역 실시
동식물성 포장물 & 바닥재	병충해, 잡초종자, 토양 혼입 검사; 관련규정에 따라 샘플채취
기타 검역물	포장의 완정여부, 병충해 오염여부 검사; 포장 파손 혹은 병충해 오염 시 위해 제거처리

- 종자용 대중가축의 수입은 국가동식물검역국이 설립한 동물격리검역장소에서 45일간 격리검역, 기타 동물 수입은 동식물검역기구에서 지정한 동물격리검역장소에서 30일 격리검역(24조)
- 수입한 동식물, 동식물제품과 기타 검역물은 중국의 국가표준, 산업표준 및 국가동식물검역국의 관련 구정에 따라 검역 실시(26조)
- 수입동식물, 동식물제품과 기타검역물은 검역합격 후 입경세관 동식물검역기구에서 검역신고서에 날인 혹은 <검역통과통지서>발급, 화주 혹은 대리인은 날인한 검역신고서 혹은 <검역통과통지서>로 세관에 통관신고, 세관은 날인한 검역신고서 혹은 <검역통과통지서>를 근거로 검사 통관(27조)
- 수입동식물, 동식물제품과 기타 검역물이 검역에서 불합격 시 동식물검역기구에서 <검역처리통지서>를 발급, 화주 혹은 대리인에게 통지하여 동식물검역기구의 감독관리와 기술지도하에 위해제거처리, 대외 클레임 필요시 동식물검역기구는 검역증서 제출(28조)

□ 검역감독

- 진출경동물과 식물종자, 종묘 및 기타번식재료가 격리 사양, 격리 재배가 필요 시 격리기간 동식물검역기구의 검역감독을 받음(54조)
- ※ 1998년 국무원기구개혁방안에 따라 기존 국가수출입상품검험국, 농업부 동식물검역국, 위생부 위생검역국을 합병하여 국가출입경검험검역국으로 신설 검역업무 총괄, 기존 농업부 동식물검역국 업무는 동식물검역감독관리사에 위생부 위생검역국 업무는 위생검역감독관리사로 이전

제2절 검역제도 및 기타 행정법규

I. 품목별 검역제도(국가질검총국 행정법규)

1. 수출입식품안전관리방법(총국 령 144호, 2012.03.01)

- 본 방법은 수출입식품의 검험검역 및 감독관리에 적용(2조)
- 국가질검총국은 수입식품의 경외 생산기업에 대하여 등기(注册)관리를 실시;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수출상 혹은 대리상에 대하여 등록(备案)관리를 실시; 수출입식품에 대하여 검험 실시; 수출입식품에 대하여 분류 관리를 실시; 수출입식품의 생산경영자에 대하여 성실관리를 실시(4조)
- 수입식품은 중국의 식품안전국가표준과 관련 검험검역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식품안전국가표준이 공식 발표 전에는 현행 식용농산물품질안전표준, 식품위생표준, 식품품질표준과 관련 식품산업표준 중 강제집행표준을 근거로 검험 실시. 최초로 수입하며 관련 식품안전국가표준이 없는 식품은 수입상이 검험검역기구에 국무원위생행정부서에서 제출한 허가증명문서를 제출, 검험검역기구는 국무원위생행정부서의 요구에 따라 검험 진행(8조)
- 국가질검총국은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경외 식품생산기업에 등기(注册)제

도 실시.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수출상 혹은 대리상은 국가질검총국에 등록(备案). 수출상 혹은 대리상은 등록(备案)요구에 따라 기업의 등록(备案)정보 제공. 등기(注册)와 등록(备案) 명단은 총국 홈페이지에 발표(9조)

■ 수입식품 경외 생산기업 등기(注册)실시 목록 ■

No	명칭	정의	비고
1	육류	동물 도살체 식용부분	동체, 장기, 부산물 및 이를 원료로한 제품, 통조림 불포함
2	수산물	식용 수생 동물, 식물 및 제품	수모류, 연체류, 각갑류, 두삭류, 어류, 양서류, 파충류, 수생포유류동물 등 기타수생동물과 조류 등 해양식물 및 제품을 말하며 활 수생동물과 수생동식물 번식재료는 불포함

※ 자료원 : 국가질검총국 2012년 73호 공고

■ 수입식품 경외 수출상&대리상 목록조회 ■

http://ire.eciq.cn/entire/controller?SERVICE_ID=REGISTRY_EXPORT_ENTERPRISE_SEARCH_SERVICE&newsearch=true&recordperpage=15

※ 2012년 10월말 기준 한국은 990개 수출상&대리상 등록

- 수입식품이 진정동식물검역 심사기준을 받아야 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진정동식물검역허가증>을 취득 후 수입 가능(10조)
- 동식물전염병 혹은 유독, 유해물질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식품 수입은 전문세관을 지정하여 통관 실시. 지정세관조건 및 명단은 국가질검총국에서 제정 및 공식 발표(11조)

■ 검험신고 제출자료(12조) ■

1. 계약서, 인보이스, 패키리스트, 선하증권 등 필요한 증빙
 2. 관련 허가문서
 3. 법률법규, 양자협정, 의정서 및 기타 규정에 명시한 수출국가(지역) 관방 검역(위생)증서
 4. 최초로 수입하는 포장식품은 수입식품라벨샘플과 번역본 제출
 5. 최초로 수입하며 식품안전국가표준이 없는 식품은 본 방법 8조항 규정 허가증명문서 제출
 6. 수입식품에 동봉되는 기타 증서 및 증명서류
- * 검험신고 시 수입상 혹은 대리인은 수입식품의 상품명, 브랜드, 원산지, 규격, 수량/중량, 총 가치, 생산일자(번호) 및 국가질검총국이 규정한 기타내용을 일일이 신고

- 검험검역기구는 라벨내용이 법률법규와 식품안전국가표준요구의 부합여부 및 품질관련내용의 진실성, 준확성에 대하여 검사 진행, 수입식품라벨 및 설명서 중 수상내용, 증서획득, 산지 및 기타내용 강조하거나 특수성분 함유를 강조한 경우 증빙자료 제출(16조)
- 수입식품은 검험검역합격증명 취득 전에는 검험검역기구에서 지정 혹은 인가한 감독관리장소에 보관(17조)
- 수입식품은 검험검역 합격 후 검험검역기구에서 합격증명을 제출하여 판매, 사용을 허가. 합격증명은 화물의 상품명, 브랜드, 원산지, 규격, 수량/중량, 생산일자(번호) 등을 포함. 브랜드, 규격이 없는 경우 무(无)로 표기(18조)
- 수입식품이 검험검역 불합격 시 검험검역기구에서 불합격증명 발급. 안전, 건강, 환경보호항목이 불합격 시 당사자에 폐기를 명하거나 반품처리통지서를 발급하여 반품. 기타항목이 불합격 시 검험검역기구의 감독 하 기술처리 진행, 재검험을 통하여 합격 후 판매, 사용 가능(18조)
- 검험검역기구는 수입식품의 수입상에 대하여 등록(备案)관리 실시. 수입상은 사전에 소재지 검험검역기구에 등록(备案) 신청(19조)

■ 수입상 등록신청 자료 ■

1. 수입상등록신청표(进口商备案申请表)
2. 공상영업집조, 조직기구대마중, 법정대표인신분증명, 대외무역경영자등록등기표 등 원본&사본
3. 기업품질안전관리제도
4. 식품안전 관련 조직기구설치, 부서기능 및 담당 직책
5. 경영코자하는 식품의 종류, 보관장소
6. 2년 내 식품수입, 가공, 판매 종사 경력자는 관련 설명(식품품종, 수량) 제공
7. 자체 검사신고 시 자체검사신고단위등록등기증명서 원본&사본

2. 수출입육류제품검험검역감독관리방법(총국 령 136호, 2011.06.01)

- 본 방법은 수출입 육류제품의 검험검역 및 감독관리에 적용(2조)

- 본 방법이 육류제품은 동물 도살체의 식용부분(동체, 장기, 부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한 제품을 말하며 통조림 제품은 불포함(3조)
- 검험검역기구는 법에 따라 수출입육류제품에 대하여 검험검역 및 감독추출검사를 진행하며 수출입육류제품의 생산가공기업, 수령인, 발송인에 대하여 감독관리수요에 따라 신용관리 및 분류관리제도 실시(5조)
- 수입육류제품은 중국의 법률, 행정법규 규정, 식품안전국가표준의 요구; 중국과 수출국가 혹은 지역 간 체결한 협의, 의정서, 비망록 등 규정의 검험검역요구; 무역계약에 명시한 검역요구에 부합되어여함. 국가표준이 없는 수입육류제품은 국무원 위생행정부서에서 제출한 허가증명문서를 제출(7조)
- 국가질검총국은 중국경내로 수출하는 육류제품의 수출상 혹은 대리상에 대하여 등록(备案)관리 실시, 수입육류제품의 경외생산기업에 대한 등기(注册)관리는 국가질검총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9조)
- 검험검역기구는 수입육류제품의 수령인에 대하여 등록(备案)관리 실시, 등록업체만 육류제품 수입 가능(10조)

Ⅱ 수입육류제품 수령인 등록 목록 Ⅱ

No	업체명	No	업체명	No	업체명
○ 북경시		283	上海兰生大宇有限公司	568	江门市蓬江区远洋进出口有限公司
1	北京金宇锦通国际贸易有限公司	284	上海富恒实业有限公司	569	中山市鑫翔进出口贸易有限公司
2	北京市品利食品有限公司	285	上海金福进出口公司	570	韶关市祥荣进出口贸易有限公司
3	北京航空食品有限公司	286	上海汇智食品有限公司	571	韶关市科宇贸易有限公司
4	北京兴泽华贸易有限公司	287	双日(上海)有限公司	572	韶关强宏进出口贸易有限公司
5	中国食品集团公司	○ 산둥성		573	广州市集通进出口有限公司
6	中国国联国际贸易有限公司	288	青岛康大得利佳进出口有限公司	574	广州冠宝商贸有限公司
7	中国振华进出口总公司	289	青岛瑞立华工贸有限公司	575	广州市番迪进出口有限公司
8	中商六通贸易有限公司	290	山东爱迪西-凤祥食品有限公司	576	汕头市澄海区源诚园艺有限公司
9	北京宝德智业科技发展有限公司	291	山东凤祥实业有限公司	577	汕头市食品企业集团公司
10	北京中光伟业进出口有限公司	292	山东省对外贸易泰丰有限公司	578	汕头市祥达贸易有限公司
11	北京富润福德进出口有限责任公司	293	山东外贸新永康食品集团有限公司	579	佛山市南海加藤利食品有限公司
12	北京爱建同益经贸发展有限责任公司	294	山东龙大肉食品股份有限公司	580	佛山市天赋财贸易有限公司
13	北京三川金舟贸易有限公司	295	烟台来盈工贸有限公司	581	广州市海悦得贸易有限公司
14	北京凯禾维国际贸易有限公司	296	烟台龙大食品有限公司	582	惠东县永旭泰贸易有限公司

No	업체명	No	업체명	No	업체명
15	北京华海易通贸易有限公司	297	青岛万福冷冻食品有限公司	583	惠东县恒隆贸易有限公司
16	北京二十一世纪创业国际经贸有限公司	298	青岛万协食品有限公司	584	惠东县顺达达贸易有限公司
17	港京福爵贸易(北京)有限公司	299	青岛富尔兰德国际贸易有限公司	585	广东省食品进出口集团公司
18	北京泓宇金辉进出口贸易有限公司	300	青岛联合友和食品有限公司	586	广州万瑜冷冻仓储有限公司
19	北京贝迪克阿根廷烤肉有限公司	301	青岛雅思客国际贸易有限公司	587	湛江懋昌国际贸易有限公司
20	中食百绿(北京)国际贸易有限公司	302	烟台顽皮国际贸易有限公司	588	广州市佳锐进出口贸易有限公司
21	中粮发展有限公司	303	荣成泰祥食品股份有限公司	589	汕尾新骏佳食品有限公司
22	恒胜坤宇(北京)贸易有限公司	304	烟台安德水产有限公司	590	广州恒通和顺进出口有限公司
23	沐宸睿博(北京)贸易有限公司	305	山东信康农业开发有限公司	591	韶关市裕森科技发展有限公司
24	北京中科拜克生物技术有限公司	306	荣成荣山食品有限公司	592	广东省贸促技术进出口有限公司
25	北京卓宸畜牧有限公司	307	青岛六合万福食品有限公司	593	广州悦盛投资有限公司
26	中国国际电子商务有限公司	308	青岛中凯峰经贸有限公司	594	揭阳市鹏盛实业有限公司
27	北京市恒慧通肉类食品有限公司	309	烟台喜润工贸有限公司	595	佛山骐辉经贸有限公司
28	中粮肉食(北京)有限公司	310	青岛圣凯顺国际贸易有限公司	596	佛山市政莎朗进出口有限公司
29	北京天益华国际贸易有限公司	311	诸城尽美进出口有限公司	597	惠州市兆润贸易有限公司
30	北京丰收国际贸易有限公司	312	青岛丸鲁大食品有限公司	598	惠州市惠享贸易有限公司
31	伊藤忠(中国)集团有限公司	313	青岛九州盛进出口有限公司	599	广州海睦贸易有限公司
32	北京恒信诚国际贸易有限公司	314	荣成荣东食品有限公司	600	广州海侨贸易有限公司
33	玛理根国际商贸(北京)有限公司	315	青岛东润海禾贸易有限公司	601	迈德乐(广州)糖果有限公司
34	雨桐和她的朋友们国际贸易(北京)有限公司	316	潍坊凯泽酿酒材料有限公司	602	江门市正驰进出口贸易有限公司
35	北京博龙福海国际贸易有限公司	317	潍坊开发区华裕实业有限公司	603	江门市基石进出口贸易有限公司
36	北京信海游贸易有限公司	318	临沂天喜实业有限责任公司	604	江门市中投进出口贸易有限公司
37	北京富国祥泰商贸有限公司	319	山东诺德英物流有限公司	605	广州世城贸易发展有限公司
38	中国免税品(集团)有限责任公司	320	临沂新程金锣肉制品集团有限公司	606	汕头荣兴发展有限公司
39	北京易诚智讯科技发展有限责任公司	321	青岛新大地食品有限公司	607	广东省商业贸易进出口公司
40	中轻日用百货进出口公司	322	青岛丰达利进出口有限公司	608	广东广弘贸易发展有限公司
41	北京中地种畜有限公司	323	青岛龙源发食品有限公司	609	汕头市荣建贸易有限公司
42	中咨经贸发展有限责任公司	324	诸城市舜王进出口有限公司	610	东莞市强腾进出口有限公司
43	北京澳纽之窗商贸有限公司	325	荣成合德隆食品有限公司	611	广州云富进出口有限公司
44	北京申世天成国际贸易有限公司	326	诸城帝王食品有限公司	612	佛山市嘉珀贸易有限公司
45	中国林业物资总公司	327	文登市山泰食品有限公司	613	广州市辉恒进出口贸易有限公司
46	北京神能广正科贸有限公司	328	荣成波德隆食品有限公司	614	广州市雄秀进出口贸易有限公司
47	北京坤岳昊商贸有限公司	329	青岛正大有限公司	615	广州百世鑫进出口贸易有限公司
48	北京御香苑畜牧有限公司	330	山东泰华食品股份有限公司	616	佛山市国通安全农产品进出口有限公司
49	北京二商物流有限公司	331	烟台绿色食品有限公司	617	广州华翔进出口有限公司
50	中土畜通利进出口有限公司	332	山东泰森新昌食品有限公司	618	广州交易会经济发展有限公司
51	北京源祥港贸易有限公司	333	山东省东方海丰贸易有限公司	619	广州冰福生物科技有限公司
52	中农春雨高科技股份有限公司	334	烟台圣丰食品有限公司	620	广州新璋贸易有限公司
53	北京盛世长荣国际贸易中心	335	烟台市东辰食品有限公司	621	广州中如贸易有限公司
54	北京德佳正诚畜禽进出口有限公司	336	青岛三泰源贸易有限公司	622	广州势侨贸易有限公司

No	업체명	No	업체명	No	업체명
55	北京顺鑫农业股份有限公司	337	青岛亿路发集团有限公司	623	广州海文贸易有限公司
56	中纺原料国际贸易有限公司	338	烟台水星食品有限公司	624	广州增泰进出口有限公司
57	澳普士(北京)食品有限公司	339	烟台九如泰国际贸易有限公司	625	广州庭宏进出口有限公司
58	北京卓晨紫琪贸易有限公司	340	潍坊三涛食品有限公司	626	惠州市东鸿食品有限公司
59	通内斯食品贸易(北京)有限公司	341	潍坊同路食品有限公司	627	惠州市隆达实业有限公司
60	北京大龙瑞洋商贸有限公司	342	潍坊美城食品有限公司	628	佛山市东顺源进出口有限公司
61	北京二商集团有限责任公司	343	青岛欧尼思特进出口有限公司	629	汕头市广宝贸易有限公司
62	中国农发食品有限公司	344	青岛柔驰贸易有限公司	630	汕头市银辉食品有限公司
63	北京华都肉鸡公司	345	荣成泰广进出口有限公司	631	汕头市中通冷冻食品有限公司
64	北京月盛斋清真食品有限公司	346	青岛新协航国际物流有限公司	632	湛江虹宝水产开发有限公司
65	中国服装股份有限公司	347	安丘市外贸食品有限责任公司	633	江门市旗昌贸易有限公司
66	北京二商食品股份有限公司	○ 감소성		634	惠州市源泰贸易有限公司
67	三井物产(中国)有限公司	348	苏州祥威食品有限公司	635	惠州市浩泽贸易有限公司
68	北京中达联合进出口有限公司	349	苏州工业园区吴东食品有限公司	636	广州市发东进出口有限公司
69	北京金瑞恒基国际贸易有限公司	350	张家港市舜帝食品进出口贸易有限公司	637	广州市发悦进出口有限公司
70	北京鼎盛食品仓储有限公司	351	锦通(扬州)商贸有限公司	638	广州市泰洲进出口贸易股份有限公司
○ 친진시		352	连云港味之素如意食品有限公司	639	广州华宗鑫进出口有限公司
71	甘地特(天津)糖果有限公司	353	苏州新裕冷冻食品有限公司	640	广州华焕鑫进出口有限公司
72	天津大洋物流有限公司	354	苏州华东食品有限公司	641	广州华仲兴进出口有限公司
73	天津捷嘉物流有限公司	355	南京雨润食品有限公司	642	惠州市南洋进出口贸易有限公司
74	天津港保税区隆鑫诚国际贸易有限公司	356	江苏扬可食品有限公司	643	惠东县万利源贸易有限公司
75	天津宏世达国际贸易有限公司	357	扬州杨扬冷冻食品有限公司	644	广州市天楹食品有限公司
76	天津市皓翔贸易有限公司	358	江苏省苏食进出口贸易有限公司	645	惠东县中和贸易有限公司
77	天津市鑫安进出口贸易有限公司	359	南京海润进出口贸易有限公司	646	惠东县天源贸易有限公司
78	天津斯诺商贸有限公司	360	南京元亨食品有限公司	○ 심천시(광둥)	
79	天津友通进出口贸易有限公司	361	南京涛亨进出口贸易有限公司	647	深圳市瑞源冷链服务有限公司
80	天津兆辉食品贸易有限公司	362	南京诺聚进出口贸易有限公司	648	深圳市君泽行贸易有限公司
81	天津世纪五矿贸易有限公司	363	南京骄茂进出口贸易有限公司	649	深圳市盛斯达贸易发展有限公司
82	大成万达(天津)有限公司	364	南京舜朗进出口贸易有限公司	650	深圳市方杰贸易有限公司
83	天津滨海建超专类化工有限公司	365	南京禧润国际贸易有限公司	651	深圳市永庆贸易有限公司
84	天津市丰源友客食品有限责任公司	366	南京玉鸿普洛森斯食品有限公司	652	深圳市天翔达进出口有限公司
85	天津广仕国际贸易有限公司	367	南京金利农家鸡清真食品有限公司	653	深圳市凌豪实业发展有限公司
86	天津越升国际贸易有限公司	368	江苏省粮油食品进出口集团股份有限公司	654	深圳市威登贸易有限公司
87	天津开发区安宝工贸有限公司	369	苏州旗江信国际贸易有限公司	655	大东方冷冻食品(深圳)有限公司
88	天津滨海全金商贸有限公司	370	淮安金润食品有限公司	656	深圳市泛盟实业有限公司
89	天津东翰祥国际贸易有限公司	371	苏州工业园区高利国际贸易有限公司	657	深圳市安源盛进出口贸易有限公司
90	天津市食品公司	372	南京宾利食品进出口贸易有限公司	658	深圳市福至进出口有限公司
91	天津文鼎商贸有限公司	373	苏州工业园区高昌国际贸易有限公司	659	深圳市申得合贸易有限公司
92	蔚蓝(天津)国际贸易有限公司	374	无锡天鹏食品商城有限公司	660	深圳市源兴发贸易有限公司
93	天津食品进出口股份有限公司	375	太仓励苏远洋渔业有限公司	661	深圳市永道投资有限公司

No	업체명	No	업체명	No	업체명
94	天津港保税区英鹏食品配料有限公司	376	无锡天鹏集团有限公司	662	深圳市名立机械科技有限公司
95	天津滨海天正商贸有限公司	377	无锡市天鹏进出口贸易有限公司	663	深圳市德昌隆实业发展有限公司
96	天津长海商贸有限公司	378	江苏天缘物流集团有限公司	664	深圳汉氏工程投资咨询有限公司
97	天津昊海国际贸易有限公司	379	连云港外贸冷库	665	深圳市凯利迪实业有限公司
98	天津市东田食品加工有限责任公司	380	江苏汇鸿国际集团中锦控股有限公司	666	深圳市利达通贸易有限公司
99	天津静升物流有限公司	381	金坛市肠衣厂有限公司金谷肉食品分公司	667	深圳市兴盛投资发展有限公司
100	天津东疆鑫鹏程国际贸易有限公司	382	盐城信宇食品有限公司	668	深圳市利俊美进出口贸易有限公司
101	天津东疆鑫锋牛国际贸易有限公司	383	昆山彼岸食品贸易有限公司	669	深圳市鹏港澳实业发展有限公司
102	天津鑫汇洋国际物流有限公司	384	江苏恒古国家贸易有限公司	670	深圳市君祥福进出口贸易有限公司
103	天津龙泰食品有限公司	385	苏州尼希米贸易有限公司	671	深圳市金菱发贸易有限公司
104	天津东疆大洋冻品国际贸易交易市场有限公司	386	江苏润金国际贸易有限公司	672	深圳市团泰实业发展有限公司
105	天津市第三食品加工厂	387	苏州荣兴豪国际贸易有限公司	673	深圳市银和泰进出口有限公司
106	天津市肉类联合加工厂	○ 절강성		674	深圳市科林沃实业发展有限公司
107	天津琪诺国际贸易有限公司	388	浙江省粮油食品进出口股份有限公司	675	深圳市东敏航进出口贸易有限公司
108	天津开发区联邦达进出口贸易有限公司	389	杭州绿盛集团有限公司	676	深圳市雄豪进出口贸易有限公司
109	天津万彦里国际贸易有限公司	390	杭州知味食品有限公司	677	深圳市利丰兴发贸易有限公司
110	天津外总集团国际贸易代理有限公司	391	浙江惠隆对外贸易有限责任公司	678	深圳市顺必达贸易发展有限公司
111	天津通恩国际贸易有限公司	392	温州中嘉食品贸易有限公司	679	深圳市兴隆发贸易发展有限公司
112	天津市星宇实业发展有限公司	393	爱亿牛(杭州)食品有限公司	680	深圳市盟顺实业有限公司
113	天津意昂国际贸易有限公司	394	杭州大旺食品有限公司	681	深圳市鸿鹏进出口有限公司
114	天津可优食品有限公司	395	杭州小来大农业开发集团有限公司	682	深圳市远翔投资发展有限公司
115	天津弘博物流有限公司	396	浙江嘉兰进出口有限责任公司	683	深圳市和兴源实业有限公司
116	天津服装进出口股份有限公司	397	温州市土产畜产品对外贸易公司	684	深圳市政鸣达贸易有限公司
117	天津市晟和辰国际贸易有限公司	398	杭州鑫拓实业有限公司	685	深圳市文俊达进出口贸易有限公司
118	天津陈方旭国际贸易有限公司	399	金字火腿股份有限公司	686	深圳市方通实业发展有限公司
119	天津子洪国际贸易有限公司	400	浙江农资集团金鸿进出口有限公司	687	深圳市特威实业有限公司
120	天津宗祥国际贸易有限公司	401	鲜八里集团有限公司	688	深圳市盟凯实业发展有限公司
121	天津鸿远达国际贸易有限公司	402	浙江东方集团浩业贸易有限公司	689	深圳市利民好贸易有限公司
122	天津万鑫汇国际贸易有限公司	403	绍兴慕爱客贸易有限公司	690	深圳市胜达进出口有限公司
123	天津港保税区友达机械设备有限公司	404	德清亚飞进出口有限责任公司	691	深圳市佳邦通进出口有限公司
124	天津贝诗特商贸有限公司	405	浙江银河食品有限公司	692	深圳市鑫澳特贸易有限公司
○ 하북성		406	绍兴市巨昌绿色农副产品冷藏有限公司	693	深圳市鸿信鹏进出口有限公司
125	康保县百绿肉类有限责任公司	407	温州市进出口联合有限公司	694	深圳市云帆通达供应链管理有限公司
126	石家庄市惠康食品有限公司	○ 복건성		695	深圳市泰程供应链管理有限公司
127	河北恒业进出口服务有限公司	408	福建大世界企业集团有限公司	696	深圳市源泰丰供应链管理有限公司
128	河北天怡康泰通讯设备科技有限公司	409	福建超创贸易有限公司	697	深圳市森森供应链管理有限公司
129	河北康源清真食品有限公司	410	福州元隆食品有限公司	698	深圳市瑞凯西进出口有限公司
130	河北长城麦高食品有限公司	411	福建东方星进出口贸易有限公司	699	深圳市百利德贸易有限公司
131	石家庄市德远食品有限公司	412	龙岩市建大进出口贸易有限公司	700	深圳市瑞鹏源进出口贸易有限公司
132	石家庄华茂肠衣有限公司	413	福州鑫程鹏达贸易有限公司	701	深圳市汇来实业发展有限公司

No	업체명	No	업체명	No	업체명
133	远东内衣食品有限公司	414	福建森华实业有限公司	702	深圳市浩德丰进出口有限公司
134	唐山法立德清真食品有限公司	415	福建省亿炜贸易有限公司	703	深圳市惠通兴华经贸有限公司
135	唐山海世实业有限公司	416	福州市鼓楼区森众贸易有限公司	704	深圳市晨华贸易有限公司
136	保定市天鹏进出口集团有限公司	417	福建闽台农产品市场有限公司	705	铭基食品有限公司
137	秦皇岛正大有限公司	418	宁波凯博士食品有限公司	706	深圳市兴逸丰贸易有限公司
138	唐山华海冷藏物流有限公司	419	宁波森磊国际贸易有限公司	707	深圳市汇鸿华投资发展有限公司
139	河北福肯进出口贸易有限公司	420	慈溪永进冷冻食品有限公司	708	深圳市达成富进出口有限公司
140	石家庄黄道进出口贸易有限公司	421	宁波市江北金沃进出口有限公司	709	深圳市海发顺实业有限公司
141	石家庄金凤冷链物流经营开发有限公司	422	宁波美博进出口有限公司	710	深圳友邦德实业有限公司
142	河北邦德贸易有限公司	423	宁波天元进出口有限公司	711	深圳市澳东检验检测科技有限公司
143	河北万颗星进出口贸易有限公司	424	宁波天宇水产品进出口有限公司	712	深圳市富有德进出口贸易有限公司
○ 내몽골자치구		425	宁波市北仑食品有限责任公司	713	深圳市胜致远商贸有限公司
144	乌兰察布荣昌工贸有限公司	426	宁波今日食品有限公司	714	深圳市康力进出口有限公司
145	满洲里浩斯兴业进出口贸易有限公司	427	厦门古龙进出口有限公司	715	深圳海化大同食品有限公司
146	内蒙古小尾羊餐饮连锁股份有限公司	428	信华食品(漳州)有限公司	716	深圳市八达物流股份有限公司
147	内蒙古马志全清真食品有限公司	429	厦门业立亚进出口有限公司	717	深圳市顺达龙运贸易有限公司
148	二连市吉力圆贸易有限责任公司	430	厦门凯地科技开发有限公司	718	深圳沙头角旅游有限公司
149	内蒙古科尔沁牛业股份有限公司	431	厦门市浩晟达进出口有限公司	719	深圳市永宏泰贸易有限公司
150	二连市运筹工贸有限公司	432	厦门日之初股份有限公司	720	深圳市跨国通供应链管理有限公司
151	新巴尔虎右旗宇泰经贸有限公司	433	厦门海创经济贸易有限公司	721	深圳市德利达兴贸易有限公司
152	东乌珠穆沁旗草原东方肉业有限责任公司	434	厦门盛章进出口有限公司	722	深圳市聚信泰实业有限公司
153	东乌珠穆沁旗宏大进出口商贸有限公司	435	厦门市川源技术开发有限公司	723	深圳市锦琳达进出口有限公司
○ 흑룡강성		436	厦门台元宏进出口有限公司	724	深圳市保惠物流有限公司
154	哈尔滨美人鱼进出口贸易有限公司	437	厦门台元宏进出口有限公司	725	深圳市富之海商贸有限公司
155	黑龙江天顺源清真食品有限公司	438	中国轻鑫工程厦门有限公司	726	深圳市东洋达投资有限公司
156	黑龙江大庄园肉业有限公司	439	厦门鼎盛鑫贸易有限公司	727	深圳市智盛进出口有限公司
157	黑龙江北方恒阳食品有限公司	440	厦门市兴恒丰投资发展有限公司	728	深圳市业成投资发展有限公司
158	黑龙江恒阳牛业股份有限公司	441	厦门森宝集团有限公司	729	深圳市德比龙进出口贸易有限公司
○ 길림성		442	福建同发食品集团有限公司	730	深圳市庆丰隆商贸有限公司
159	大安市罐头厂	443	厦门市恒利全进出口有限公司	731	深圳市德惠进出口有限公司
160	东丰县鹏翔牧业有限责任公司	444	厦门阳毅进出口有限公司	732	深圳市鸿运通事业有限公司
161	吉林省长春皓月清真肉业股份有限公司	445	厦门佳事通贸易有限公司	733	深圳海裕进出口有限公司
162	吉林省派克食品有限公司	446	厦门市金华德商贸有限公司	734	深圳市长通贸易有限公司
163	长春市世鹿鹿业有限公司	447	厦门山链贸易有限公司	735	深圳市启运鑫投资发展有限公司
164	吉林德大有限公司	448	厦门尚景贸易有限公司	736	深圳市东盛进出口有限公司
○ 요녕성		449	厦门鼎力和进出口有限公司	737	深圳市汇富酒业有限公司
165	辽宁兴业进出口有限责任公司	450	厦门英泽进出口有限公司	738	深圳江五洲实业有限公司
166	大连丸山食品有限公司	451	厦门英泽进出口有限公司	739	深圳市贵格食品有限公司
167	大成农牧(铁岭)有限公司	452	厦门豫屿大昌行供应链有限公司	740	招商局国际冷链(深圳)有限公司
168	大连裕林商贸有限公司	453	厦门乾坤元物流有限公司	741	深圳市优合国际供应链有限公司

No	업체명	No	업체명	No	업체명
169	大连三元合国际贸易有限公司	○ 광동성		742	深圳市奇兴业投资发展有限公司
170	大连新达纺织品进出口有限公司	454	广州市建烽进出口贸易有限公司	743	深圳市宏发源贸易有限公司
171	辽宁国际对外经济合作有限公司	455	佛山惠通经贸有限公司	744	深圳市泰洲实业发展有限公司
172	大连格林兰国际贸易有限公司	456	广州市月德贸易有限公司	745	深圳市京合投资有限公司
173	双汇澎(大连)国际贸易有限公司	457	惠东县安盛贸易有限公司	746	深圳市沪发进出口贸易有限公司
174	大连欣中瑞国际贸易有限公司	458	广东新有利贸易有限公司	747	深圳市华顺招商投资有限公司
175	大连新宁远食品有限公司	459	广州番禺机械进出口有限公司	○ 주해사(광둥)	
176	辽宁粮油进出口股份有限公司	460	惠东县盐洲进出口贸易公司	748	珠海市汇创盈贸易有限公司
177	大连熙丰草业有限公司	461	惠东县恒润贸易有限公司	749	珠海市和平物流综合市场有限公司
178	大连盈科经贸发展有限公司	462	广州市番土进出口有限公司	750	珠海经济特区科泰有限公司
179	大连凯美进出口集团有限公司	463	惠东县广海贸易有限公司	751	珠海伟力创经贸发展有限公司
180	大连越越经贸发展有限公司	464	广州金隽工艺品进出口有限公司	752	佳顺冷冻(珠海保税区)有限公司
181	大连志嘉食品有限公司	465	广州钧锐进出口有限公司	753	珠海市西能商贸有限公司
182	巨平水产(大连)有限公司	466	广州番禺五金矿产进出口有限公司	754	珠海市鸿陆工贸有限公司
183	大连恒添国际贸易有限公司	467	广州京瑞贸易有限公司	755	珠海保税区西尾食品有限公司
184	大连天正兴业国际贸易有限公司	468	惠东县信祥贸易有限公司	756	珠海经济特区置立发展有限公司
185	铁岭广丰鹿产品加工有限公司	469	广州市集泰进出口有限公司	757	珠海保税区资丰食品有限公司
186	大连宝泉食品有限公司	470	广州市晋裕进出口贸易有限公司	758	珠海市金顺泰进出口有限公司
187	大连德运贸易有限公司	471	江门市华源贸易发展有限公司	759	珠海市益康泰食品有限公司
188	大连东莱国际商贸有限公司	472	江门市华银贸易发展有限公司	760	珠海市永胜进出口有限公司
189	东北国际贸易公司	473	广州市信辉进出口有限公司	761	珠海市南桥贸易有限公司
190	大连金瑞仕国际贸易有限公司	474	广州番禺粮油食品进出口有限公司	762	珠海市康民农畜产品进出口有限公司
191	大连新源汇国际贸易有限公司	475	广东省友和对台贸易公司	763	珠海汇株经贸发展有限公司
192	大连富申国际贸易有限公司	476	广州中可诚贸易有限公司	764	珠海市源宇冷冻有限公司
193	大成官产食品(大连)有限公司	477	广州市番盈进出口有限公司	765	珠海保税区五丰食品有限公司
194	裕衡(大连)国际贸易有限公司	478	广州市番粮进出口有限公司	766	珠海市东品商贸有限公司
195	大成食品(大连)有限公司	479	广州市丰腾对外贸易有限公司	767	珠海市健凯贸易有限公司
196	大连锋鸣国际贸易有限公司	480	佛山市海粤星进出口有限公司	768	珠海华美嘉业贸易有限公司
197	大连格林富德贸易有限公司	481	汕头市银安贸易有限公司	769	珠海中盟有限公司
198	大连劲柏实业有限公司	482	佛山市佛冷食品冷冻有限公司	770	珠海经济特区和平实业有限公司
199	大连达源贸易有限公司	483	中粮万威客食品有限公司	771	珠海港航进出口有限公司
200	大连广益食品有限公司	484	中山市江臻冷冻食品有限公司	772	珠海市泰仓贸易有限公司
201	大连圣世食品有限公司	485	惠州大亚湾富利冷藏有限公司	773	珠海市西品商贸有限公司
202	大连保税区广恒贸易有限公司	486	广东腾宇贸易有限公司	774	珠海市盈权进出口有限公司
203	辽宁新禾瑞进出口有限公司	487	惠州市和进贸易有限公司	775	珠海市安裕贸易有限公司
204	大连融汇国际贸易有限公司	488	惠州永康投资担保有限公司	776	珠海市新业泰贸易有限公司
205	辽宁金普进出口有限公司	489	广州登高国际贸易有限公司	○ 광서자치구	
206	辽宁济华堂保健食品有限公司	490	惠州市宏聚贸易有限公司	777	北海保通冷冻食品有限公司
207	西丰县欣安鹿业有限公司	491	广州市和裕进出口贸易有限公司	778	北海华通经济贸易有限公司
208	铁岭恒生鹿产品有限公司	492	广州振铭贸易有限公司	779	北海俊诚进出口贸易有限公司

No	업체명	No	업체명	No	업체명
209	铁岭大伟参茸经销有限公司	493	佛山市三水泓胤进出口贸易有限公司	780	北海华大经贸有限公司
210	大连宏手科技发展有限公司	494	佛山市三水泓南进出口贸易有限公司	781	广西北海信诚工贸有限公司
211	大连乾亿进出口贸易有限公司	495	广州阳旺食品有限公司	782	北海中业进出口贸易有限公司
212	大连爱喜爱食品有限公司	496	广东仙乐制药有限公司	783	广西一唐贸易有限公司
213	沈阳阁林楷进出口贸易有限公司	497	汕头市科港贸易有限公司	784	北海海德贸易有限公司
214	大连保税区宝华国际工贸有限公司	498	汕头市联铭贸易有限公司	785	广西嘉诚贸易有限公司
215	大连保税区君丰国际工贸有限公司	499	广州市友行进出口有限公司	786	广西梧州市广华国际物流货运代理有限公司
216	抚顺集源超越经贸有限公司	500	汕头市怡康贸易有限公司	787	龙州天成外贸有限公司
217	西丰县东兴参茸土特产品加工有限公司	501	广州市天农食品工业有限公司	788	梧州市海达贸易有限公司
218	大连鼎源翰艺经贸发展有限公司	502	广州市健道贸易有限公司	789	北海兴通工贸有限公司
219	大连汇融经贸发展有限公司	503	广州安番贸易有限公司	790	广西北海浩通工贸有限公司
220	大连汇鸿国际贸易有限公司	504	广州市番禺区晋升贸易发展有限公司	791	广西祥民贸易有限公司
221	丹东元龙商贸有限公司	505	广州市啸悦进出口贸易有限公司	792	广西天为商贸有限公司
222	大连鑫盛饲料有限公司	506	广东友为实业有限公司	793	广西金海卓业进出口贸易有限公司
223	大连博慧宇经贸发展有限公司	507	惠州市恒丰对外贸易有限公司	794	钦州俊信进出口贸易有限公司
224	鞍山市达盛经贸有限公司	508	佛山市外经企业有限公司	795	广西北投保通进出口有限公司
225	大连鹏维粮油进出口有限公司	509	广州腾悦进出口有限公司	796	广西唯龙国际贸易有限公司
226	辽宁益正达经贸有限公司	510	广州市雄踞进出口贸易有限公司	797	钦州市桂祥经贸有限公司
227	大连君安国际货运代理有限公司	511	广州市辉恒进出口有限公司	798	北海利泰进出口贸易有限公司
228	辽宁同辉进出口有限责任公司	512	广州市番禺中亿贸易有限公司	799	北海宏和进出口贸易有限公司
○상해시		513	中山市粤粮经贸进出口有限公司	○호남성	
229	上海味可思肉类食品有限公司	514	广州鸿广贸易有限公司	800	湖南省粮油进出口集团有限公司
230	上海新长征国际贸易有限公司	515	增城市外经贸贸易有限公司	○안휘성	
231	上海中立贸易发展有限公司	516	广州沃德贸易有限公司	801	安徽省粮油食品进出口(集团)公司
232	上海鑫圣杰国际贸易有限公司	517	广州荔新进出口贸易有限公司	802	裴顿食品(安徽)有限公司
233	上海睿创国际贸易有限公司	518	中山市粤粮商贸有限公司	803	安徽安粮国际发展有限公司
234	上海五丰商务有限公司	519	广东机械进出口通用机械有限公司	804	安徽中芝物产有限公司
235	上海荣亮国际贸易有限公司	520	江门市骏骅经贸有限公司	805	安徽省重华进出口贸易有限公司
236	上海申藤畜禽有限公司	521	广州博致贸易有限公司	806	利辛县玉实食品有限公司
237	上海市食品进出口公司家禽公司	522	广东省惠州水产进出口公司	807	安徽和威农业开发股份有限公司
238	上海市中鑫送有限公司	523	惠州市财贸进出口总公司	○하남성	
239	上海帅亨国际贸易有限公司	524	惠州市经贸联合开发有限公司	808	漯河双汇进出口贸易有限责任公司
240	上海泰佳进出口有限公司	525	广东省惠州畜产进出口公司	809	河南永达清真食品有限公司
241	上海新尚实国际贸易有限公司	526	东莞市合丰食品贸易有限公司	810	河南省创世国际贸易有限公司
242	大成美食(上海)有限公司	527	东莞市合富食品贸易有限公司	811	安阳众品食品业有限公司
243	上海城市食品配送有限公司	528	广州市安承贸易有限公司	812	河南众品食品业股份有限公司
244	上海大昌行食品工业有限公司	529	东莞市世联食品贸易有限公司	813	驻马店众品食品业有限公司
245	上海大哈国际贸易有限公司	530	东莞市鸿港贸易有限公司	814	河南众品进出口贸易有限公司
246	上海大江(集团)股份有限公司	531	广东长通投资有限公司	815	河南省豫星畜产品进出口有限责任公司
247	上海大冠国际贸易有限公司	532	广州市享怡贸易有限公司	816	商丘贵友食品有限公司

No	업체명	No	업체명	No	업체명
248	上海大寰国际贸易有限公司	533	广州后晟商贸有限公司	817	拜耳(郑州)蛋白制品有限公司
249	上海顶好食品有限公司	534	广州市安民贸易有限公司	818	河南省漯河市双汇实业集团有限责任公司
250	上海富正贸易有限公司	535	广州铨汇进出口贸易有限公司	819	郑州乾兴进出口贸易有限公司
251	上海港豪食品有限公司	536	广州市钧骅商贸有限公司	820	郑州大来贸易有限公司
252	上海荷美尔食品有限公司	537	广州市进业进出口有限公司	821	河南金鲤进出口贸易有限公司
253	上海衡兴国际贸易有限公司	538	广东省友和进出口贸易公司	○ 충청시	
254	上海金佑进出口有限公司	539	广州市三裕贸易发展有限公司	822	重庆海通食品进出口有限公司
255	大昌三昶(上海)商贸有限公司	540	广州市博逸贸易有限公司	823	重庆市中基进出口有限公司
256	上海市食品进出口公司	541	广州市安聚贸易有限公司	824	重庆天食畜产品有限公司
257	上海意华食品有限公司	542	广州焯焯贸易有限公司	825	重庆对外贸易进口油限公司
258	必胜(上海)食品有限公司	543	广州市番焯进出口有限公司	○ 사천성	
259	锦江麦德龙现购自运有限公司	544	广州市义鑫进出口贸易有限公司	826	四川省外企服务有限公司
260	上海大宛食品有限公司	545	惠东县怡利贸易有限公司	827	新井物产贸易有限公司
261	上海梅林食品有限公司	546	惠东县亿利实业有限公司	828	四川省亨亚进出口贸易有限公司
262	米罗斯酒业发展(上海)有限公司	547	惠东县能力贸易有限公司	829	四川省外贸粮油食品进出口有限公司
263	鑫佳(上海)国际贸易有限公司	548	惠东县广惠贸易有限公司	830	四川高金进出口贸易有限公司
264	澳荣食品(上海)有限公司	549	惠东县顺亿贸易有限公司	831	成都国际经济技术合作股份有限公司
265	上海陆通国际贸易有限公司	550	惠东县信明贸易有限公司	○ 해남성	
266	上海迅天国际贸易有限公司	551	惠东县海祥贸易有限公司	832	海南银贸进出口有限公司
267	锦沪国际贸易(上海)有限公司	552	广州市南亿贸易发展有限公司	○ 산서성	
268	上海日冷食品有限公司	553	惠东县海通贸易有限公司	833	山西广生胶囊有限公司
269	上海健丹国际贸易有限公司	554	广州市源中进出口贸易有限公司	834	山西粟海集团有限公司
270	上海广得利胶囊有限公司	555	惠东县燕峰进出口贸易有限公司	835	长治市潞安府腊肉制品有限公司
271	塔桑勒(贸易)上海有限公司	556	广东禾田物流有限公司	○ 호북성	
272	上海康禧食品饮料有限公司	557	广东省粤海企业(惠东)有限公司	836	武汉市副食品商业储备有限公司
273	日皮(上海)贸易有限公司	558	惠东县燕峰冷链仓储有限公司	837	湖北旺旺食品有限公司
274	碧琪食品(上海)有限公司	559	广州海新冷冻仓储有限公司	838	武汉飘飘食品集团有限公司
275	上海申服进出口有限公司	560	广州市珍果贸易有限公司	○ 운남성	
276	百佑佳食品贸易(上海)有限公司	561	江门大昌贸易行有限公司	839	昆明高尔特经贸有限公司
277	上海易觉商贸有限公司	562	中山市经纬通进出口贸易有限公司	840	云南保龙食品集团有限公司
278	葡悦国际贸易(上海)有限公司	563	惠州市大亚湾外经发展总公司	841	云南茂珑实业有限责任公司
279	春岭贸易(上海)有限公司	564	广东省惠东蓝粤实业开发总公司		
280	上海九雅堂食品有限公司	565	广东省惠东粤海建设开发公司		
281	上海楷敬贸易有限公司	566	广东宏利对外投资发展有限公司		
282	上海泰睿国际贸易有限公司	567	广东宝利对外贸易有限公司		

* 자료원 : 국가질검총국 수출입식품안전국 (2012.09.05갱신)

- 국가질검총국은 수입육류제품에 대하여 검역심사비준제도 실시, 수입육류제품의 수령인은 무역계약 체결 전에 검역심사비준을 받고 진경동식물검역허가증 취득 해야함(12조)
- 수입육류제품은 국가질검총국이 지정한 세관을 통하여 수입하여 검험검역기구가 인가하고 국가질검총국에 등록(备案)된 냉동 창고 혹은 기타장소에 저장(13조)

【 수입육류 지정세관 및 등록창고 】

No	지역	지정세관	등록창고(부분※)	
1	상해시	外高桥口岸	上海外联发国际物流有限公司	
2		洋山口岸	上海深水港冷链物流有限公司	
3		国际机场口岸	上海大众交通国际物流有限公司	
4	광둥성	广州白云国际机场口岸	广东太古冷链物流有限公司	
5		广州港口岸南沙港区	广州海新冷冻仓储有限公司	
6		番禺莲花山港口岸	广州市番禺区沙头街禺山冷库	
7		佛山澜石港口岸	佛山市佛冷食品冷冻有限公司	
8		佛山新港口岸		
9		南海港货运口岸	南海国际冷库	
10		南海九江口岸		
11		广州港集团黄埔分公司老港码头口岸	广州山力冷冻有限公司	
12		广州集装箱码头有限公司	广东太古冷链物流有限公司	
13		汕头海通货柜码头有限公司码头口岸	汕头市冷冻厂	
14		汕头港务集团广澳港区华港集装箱分公司码头口岸	大洋冷冻工贸总公司	
15		湛江港中海集装箱码头口岸	湛江南方水产交易中心有限公司冷库	
16		虎门港口岸	东莞(国际)货柜码头有限公司冷库	
17		中山港货运口岸	金涛(中山)果蔬物流有限公司	
18		顺德北滘港口岸	佛山国通海峡冷链管理有限公司	
19		花都港口岸	广州市保新冷链物流有限公司	
20		增城新塘口岸	广州市贤新冷冻仓储有限公司	
21		新会港	江门大昌慎昌食品加工仓储有限公司冷库	
22		江门外海外贸码头口岸	江门冷冻厂有限公司	
23		惠州港荃湾港区	惠州大亚湾富利冷藏有限公司	
24		심천시	蛇口口岸	招商局国际冷链(深圳)有限公司

No	지역	지정세관	등록창고(부분※)
25		盐田口岸	五丰食品(深圳)有限公司仓储分公司
26	천진시	泰达行(天津)冷链物流有限公司查验场	泰达行(天津)冷链物流有限公司
27	요녕성	大窑湾口岸	大连毅都集发冷藏物流有限公司
28		鲅鱼圈口岸	营口港务集团物流公司冷库
29	강소성	南京港龙潭集装箱查验点	南京元亨食品有限公司冷库
30		连云港口岸	连云港外贸冷库
31		镇江港	镇江外贸冷库
32	내몽골자치구	二连浩特口岸	二连浩特太平洋国际饭店有限责任公司冷库
33	하북성	京唐港口岸	唐山冀东果菜有限公司
34		秦皇岛口岸	秦皇岛长胜农业科技发展有限公司
35	광서자치구	北海港	北海保通冷冻食品有限公司冷库
36	닝파시	宁波口岸	宁波远东冷藏有限公司
37	하문시	厦门东渡码头口岸	厦门商冷冷冻有限公司
38		厦门海沧码头口岸	丰龙企业(厦门)有限公司
39	절강성	温州口岸	浙江宏利水产有限公司冷库
40	산둥성	黄岛前湾港口岸	青岛联合华通贸易有限公司
41		烟台港	烟台安德水产有限公司冷藏厂
42	주해시	九洲口岸	珠海市隆盛冷冻仓储有限公司
43		高栏口岸	珠海市和平物流综合市场有限公司
44		湾仔口岸	
45	복건성	马江口岸	福州开发区福鑫实业有限公司
46	북경시	首都机场口岸	北京卓宸畜牧有限公司

※ 자료원 : 국가질검총국 수출입식품안전국

※ 부분 : 국가질검총국 등록창고 총 126개는 지정세관 지역 부분창고만 표기

■ 신선, 냉동육류제품 포장요구(14조항) ■

1. 내, 외포장은 무독, 무해 재료 사용하며 완전하고 손상이 없어야함
2. 내, 외포장에 원산지, 품명, 생산기업등록번호, 생산로트번호표기
3. 외포장에 중문으로 규격, 산지, 목적지, 생산일자, 유통기한, 저장온도 등 내용 표기, 목적지는 중화인민공화국으로 표기, 수출국가 혹은 지역 관측 검험검역표기 추가

- 육류제품의 수령인 혹은 대리인은 수입동식물검역허가증, 수출국가 혹은 지역 정부에서 발급한 관련 증서 원본, 무역계약, 선하증권, 포장명세서, 인보이스

등으로 수입세관 검험검역기구에 검역신고(15조)

- 검험검역기구는 수령인 혹은 대리인이 제출한 관련 증서에 대하여 심사 확인 후 요구에 부합되면 접수, 검역심사비준수량을 심사 후 장부에서 삭제하고 입경화물통관증명 발급(16조)

■ 수입육류제품 현장검역내용(18조) ■

1. 운송도구 위생청결검사. 온도통제설비 정상작동여부, 온도기록계 요구 부합여부
2. 화물과 증서일치여부 검사.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번호, 화물명칭, 수량, 중량, 수출국가 혹은 지역, 생산업체명 혹은 등록번호, 생산일자, 포장, 화물기호, 수출국가 혹은 지역 관방증서번호, 표기 혹은 봉인표기 등 정보
3. 포장 식품안전국가표준 요구 부합여부
4. 정량포장 육류제품의 라벨 요구 부합여부
5. 신선, 냉동육류제품은 신선정도, 중심온도의 요구 부합여부, 병리변화여부 및 육안식별가능기생충, 생활해충, 이물질 및 기타 이상상황 검사, 필요시 증숙(蒸熟)실험

- 수입신선, 냉동육류제품은 현장검험검역 합격 후 검험검역기구에서 지정한 장소에 보관(19조)

■ 수입육류제품 검험검역결과 처리내용(21조) ■

1. 검험검역 합격시 <입경화물검험검역증명>발급 생산, 가공, 판매, 사용 허가. <입경화물검험검역증명>에 수입육류제품의 컨테이너번호, 생산로트번호, 생산업체명과 등록번호, 화물기호 등 정보 명시
2. 검험검역 불합격시 검험검역처리통지서 발급. 이하 상황은 반품 혹은 폐기처리
 - 1) 수입동식물검역허가증 없는 경우
 - 2) 수출국가 혹은 지역 관방 발급 관련 증서 없는 경우
 - 3) 등기(注册)를 하지 않은 생산업체 수입육류제품
 - 4) 인체안전, 건강과 환경보호 항목 불합격
3. 검험검역을 거쳐 인체안전, 건강과 환경보호 외 항목이 불합격 시 검험검역기구의 감독하에 기술처리 진행, 합격후 판매, 사용 가능
4. 대외 클레임시 관련 증명 발급

Ⅰ 동물역병유행국가/지역으로부터 수입금지 동물 및 제품 목록 Ⅰ

지역	국가 및 지역	질 병	수입금지화물명칭
아세아	아프가니스탄	구제역	우제류 동물 및 제품
		조류독감	금류 및 제품
	미얀마	구제역	우제류 동물 및 제품
		조류독감	금류 및 제품
	파키스탄	구제역	우제류 동물 및 제품
		조류독감	금류 및 제품
	부탄	구제역	우제류 동물 및 제품
		조류독감	금류 및 제품
	라오스	구제역	우제류 동물 및 제품
		조류독감	금류 및 제품
	인도네시아	조류독감	금류 및 제품
	네팔	구제역	우제류 동물 및 제품
		조류독감	금류 및 제품
	방글라데시	조류독감	금류 및 제품
	인디아	구제역	우제류 동물 및 제품
		조류독감	금류 및 제품
	베트남	구제역	우제류 동물 및 제품
		조류독감	금류 및 제품
	홍콩	구제역	우제류 동물 및 제품
	마카오	구제역	우제류 동물 및 제품
	북한	조류독감	금류 및 제품
		구제역	우제류 동물 및 제품
	태국	구제역	우제류 동물 및 제품
	캄보디아	조류독감	금류 및 제품
	바레인	구제역	우제류 동물 및 제품
	쿠웨이트	구제역	우제류 동물 및 제품
		조류독감	금류 및 제품
야생철새조류독감		관상조류, 야생조류 및 제품	
이스라엘	구제역	우제류 동물 및 제품	
	스크래피	양 및 양의 배태, 정액, 내장 및 제품, 육골분, 골분, 유지 및 양 단백질을 함유한 사료	
	뉴캐슬병	금류 및 제품	
	조류독감	금류 및 제품	
	광우병	소 및 제품	
말레이시아	가성우역	면양, 산양 및 제품	
	일본뇌염	돼지 및 제품	
말레이시아	구제역	우제류 동물 및 제품	
	구제역	우제류 동물 및 제품	
키르기스스탄	구제역	우제류 동물 및 제품	

지역	국가 및 지역	질 병	수입금지화물명칭
유럽	투르크메니스탄	구제역	우제류 동물 및 제품
	요르단	조류독감	금류 및 제품
		구제역	우제류 동물 및 제품
		가성우역	면양, 산양 및 제품
		양두	면양, 산양 및 제품
	이란	구제역	우제류 동물 및 제품
		야생철새조류독감	관상조류, 야생조류 및 제품
		고치병성 조류독감	금류 및 제품
	이라크	조류독감	금류 및 제품
	필리핀	구제역	우제류 동물 및 제품
		Reston Ebolavirus	돼지 및 제품
	카자흐스탄	구제역	우제류 동물 및 제품
		조류독감	금류 및 제품
	터키	구제역	우제류 동물 및 제품
		청설병	양, 소 및 제품
	일본	스크래피	양 및 양의 배태, 정액, 내장 및 제품, 육골분, 골분, 유지 및 양 단백질을 함유한 사료
		광우병	소 및 제품
		구제역	우제류 동물 및 제품
		조류독감	금류 및 제품
	몽골	구제역	우제류 동물 및 제품
		조류독감	금류 및 제품
	타지키스탄	구제역	우제류 동물 및 제품
	아제르바이잔	야생철새조류독감	관상조류, 야생조류 및 제품
		조류독감	금류 및 제품
	사우디아라비아	구제역	우제류 동물 및 제품
		조류독감	금류 및 제품
	한국	조류독감	금류 및 제품
고전 돼지 콜레라		돼지 및 제품	
구제역		우제류 동물 및 제품	
오만	광우병	소 및 제품	
이탈리아	돼지수포병	돼지 및 제품	
	뉴캐슬병	금류 및 제품	
	슈말렌베르크	소 정액, 배태, 양 정액, 배태	
	조류독감	금류 및 제품	
	광우병	소 및 제품	
	아프리카 돼지 콜레라	돼지 야생돼지 및 제품	
몰타	아프리카 돼지 콜레라	돼지 야생돼지 및 제품	
포르투갈	광우병	소 및 제품	
스페인	광우병	소 및 제품	

지역	국가 및 지역	질 병	수입금지화물명칭
크로아티아		슈말렌베르크	소 정액, 배태, 양 정액, 배태
		조류독감, 뉴캐슬병	금류 및 제품
		고전 돼지 콜레라	돼지 및 제품
		조류독감	금류 및 제품
불가리아		고전 돼지 콜레라	돼지 및 제품
		조류독감	금류 및 제품
		구제역	우제류 동물 및 제품
영국		광우병	소 및 제품
		슈말렌베르크	소 정액, 배태, 양 정액, 배태
		스크래피	양 및 양의 배태, 정액, 내장 및 제품, 육골분, 골분, 유지 및 양 단백질을 함유한 사료
		야생철새조류독감	관상조류, 야생조류 및 제품
		저치병성 조류독감	금류 및 제품(햄프셔주)
네델란드		광우병	소 및 제품
		슈말렌베르크	소 정액, 배태, 양 정액, 배태
		스크래피	양 및 양의 배태, 정액, 내장 및 제품, 육골분, 골분, 유지 및 양 단백질을 함유한 사료
		뉴캐슬병	금류 및 제품(헬데를란트주)
		저치병성 조류독감	금류 및 제품(노르트브라반트주, 젤란트주, 헬데를란트주, Flevoland주)
벨기에		고전 야생돼지 콜레라	야생돼지 및 제품
		슈말렌베르크	소 정액, 배태, 양 정액, 배태
		광우병	소 및 제품
		스크래피	양 및 양의 배태, 정액, 내장 및 제품, 육골분, 골분, 유지 및 양 단백질을 함유한 사료
노르웨이		스크래피	양 및 양의 배태, 정액, 내장 및 제품, 육골분, 골분, 유지 및 양 단백질을 함유한 사료
키프로스		스크래피	양 및 양의 배태, 정액, 내장 및 제품, 육골분, 골분, 유지 및 양 단백질을 함유한 사료
		구제역	우제류 동물 및 제품
		야생철새조류독감	관상조류, 야생조류 및 제품
아이슬란드		스크래피	양 및 양의 배태, 정액, 내장 및 제품, 육골분, 골분, 유지 및 양 단백질을 함유한 사료
스웨덴		광우병	소 및 제품
		스크래피	양 및 양의 배태, 정액, 내장 및 제품, 육골분, 골분, 유지 및 양 단백질을 함유한 사료
		뉴캐슬병	금류 및 제품(고틀란드주)
프랑스		스크래피	양 및 양의 배태, 정액, 내장 및 제품, 육골분, 골분, 유지 및 양 단백질을 함유한 사료
		광우병	소 및 제품
		슈말렌베르크	소 정액, 배태, 양 정액, 배태
		저치병성 조류독감	금류 및 제품(방데주, 되세브르주)

지역	국가 및 지역	질 병	수입금지화물명칭
덴마크		뉴캐슬병	금류 및 제품(모르비앙주)
		광우병	소 및 제품
		뉴캐슬병	금류 및 제품(모르비앙주)
그루지아		야생철새조류독감	관상조류, 야생조류 및 제품
		아프리카 돼지 콜레라	돼지 야생돼지 및 제품
아르메니아		아프리카 돼지 콜레라	돼지 야생돼지 및 제품
세르비아		야생철새조류독감	관상조류, 야생조류 및 제품
아일랜드		스크래피	양 및 양의 배태, 정액, 내장 및 제품, 육골분, 골분, 유지 및 양 단백질을 함유한 사료
		광우병	소 및 제품
스위스		스크래피	양 및 양의 배태, 정액, 내장 및 제품, 육골분, 골분, 유지 및 양 단백질을 함유한 사료
		광우병	소 및 제품
		야생철새조류독감	관상조류, 야생조류 및 제품
독일		광우병	소 및 제품
		슈말렌베르크	소 정액, 배태, 양 정액, 배태
		스크래피	양 및 양의 배태, 정액, 내장 및 제품, 육골분, 골분, 유지 및 양 단백질을 함유한 사료
		야생철새조류독감	관상조류, 야생조류 및 제품
		고전 돼지 콜레라	야생돼지 및 제품
		가금조류독감	금류 및 제품
룩셈부르크		뉴캐슬병	금류 및 제품
		슈말렌베르크	소 정액, 배태, 양 정액, 배태
		광우병	소 및 제품
체코		야생철새조류독감	관상조류, 야생조류 및 제품
		조류독감	금류 및 제품
		스크래피	양 및 양의 배태, 정액, 내장 및 제품, 육골분, 골분, 유지 및 양 단백질을 함유한 사료
		광우병	소 및 제품
러시아		구제역	우제류 동물 및 제품
		양두	면양, 산양 및 제품
		조류독감	금류 및 제품
우크라이나		조류독감	금류 및 제품
리히텐슈타인		광우병	소 및 제품
슬로바키아		광우병	소 및 제품
		야생철새조류독감	관상조류, 야생조류 및 제품
슬로베니아		광우병	소 및 제품
		야생철새조류독감	관상조류, 야생조류 및 제품
오스트리아		광우병	소 및 제품
		뉴캐슬병	금류 및 제품

지역	국가 및 지역	질 병	수입금지화물명칭
		스크래피	양 및 양의 배태, 정액, 내장 및 제품, 육골분, 골분, 유지 및 양 단백질을 함유한 사료
		야생철새조류독감	관상조류, 야생조류 및 제품
	헝가리	야생철새조류독감	관상조류, 야생조류 및 제품
	보스니아	야생철새조류독감	관상조류, 야생조류 및 제품
	폴란드	광우병	소 및 제품
		광우병	소 및 제품
	핀란드	스크래피	양 및 제품
		스크래피	양 및 제품
	루마니아	조류독감	금류 및 제품
		조류독감	금류 및 제품
EU전반	광우병	동물원성 사료	동물원성 사료
	지부티	조류독감	금류 및 제품
	수단	조류독감	금류 및 제품
	타고	조류독감	금류 및 제품
	말라위	구제역	우제류 동물 및 제품
	니제르	조류독감	금류 및 제품
	알바니아	조류독감	금류 및 제품
	이집트	야생철새조류독감	관상조류, 야생조류 및 제품
		구제역	우제류 동물 및 제품
		조류독감	금류 및 제품
알제리	구제역	우제류 동물 및 제품	
튀니지	구제역	우제류 동물 및 제품	
모로코	구제역	우제류 동물 및 제품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	조류독감	금류 및 제품
	기니	구제역	우제류 동물 및 제품
	잠비아	구제역	우제류 동물 및 제품
	보츠와나	아프리카 돼지 콜레라	돼지 및 제품
		구제역	우제류 동물 및 제품
		우폐역	소 및 제품
	마다가스카르	아프리카 돼지 콜레라	돼지 및 제품
	세네갈	아프리카 돼지 콜레라	돼지 및 제품
	나이지리아	조류독감	금류 및 제품
	가나	아프리카 돼지 콜레라	돼지 및 제품
스크래피		양 및 양의 배태, 정액, 내장 및 제품, 육골분, 골분, 유지 및 양 단백질을 함유한 사료	
조류독감		금류 및 제품	
남아공	스크래피	양 및 양의 배태, 정액, 내장 및 제품, 육골분, 골분, 유지 및 양 단백질을 함유한 사료	
	아프리카 말 콜레라	말속 동물 및 제품	
	조류독감	금류 및 제품	

지역	국가 및 지역	질 병	수입금지화물명칭
아메리카	나미비아	구제역	우제류 동물 및 제품
	짐바브웨	아프리카 말 콜레라	말속 동물 및 제품
		조류독감	금류 및 제품
		구제역	우제류 동물 및 제품
	콩고	Ebolavirus	원숭이 등 영장류 동물
	가봉	Ebolavirus	원숭이 등 영장류 동물
	코트디부아르	조류독감	금류 및 제품
	카메룬	조류독감	금류 및 제품
	아프리카 전반	아프리카 돼지 콜레라	돼지 및 제품
		원두	설치류, 야생토끼 및 제품
	멕시코	뉴캐슬병	금류 및 제품
	미국	원두	설치류, 야생토끼 및 제품
		광우병	소 및 제품(2006년 6월 29일부터 30개월 이하 뼈 제거한 소고기 수입회복)
		저치병성 조류독감	금류 및 제품(버지니아주, 아칸소주, 미네소타주)
		토끼 병독성 출혈증	토끼 및 제품(뉴욕주, 아이오와주, 유타주, 일리노이주)
		스크래피	양 및 양의 배태, 정액, 내장 및 제품, 육골분, 골분, 유지 및 양 단백질을 함유한 사료
캐나다	스크래피	양 및 양의 배태, 정액, 내장 및 제품, 육골분, 골분, 유지 및 양 단백질을 함유한 사료	
	청설병, 사슴유행성출혈열	소, 도살장에서 온 소 체외사정 배태, 양, 양정액, 양배태(奧拉山谷내: 주변 25KM 지역은 10월 1일부터 내년 4월 1일까지 수출가능)	
	광우병	소 및 제품	
	저치병성 조류독감	금류 및 제품(Province of British Columbia & Manitoba)	
브라질	구제역	우제류 동물 및 제품	
	스크래피	양 및 양의 배태, 정액, 내장 및 제품, 육골분, 골분, 유지 및 양 단백질을 함유한 사료	
아르헨티나	구제역	우제류 동물 및 제품(북부 길이 2,200km, 넓이 15km변경지역)	
콜롬비아	스크래피	양 및 양의 배태, 정액, 내장 및 제품, 육골분, 골분, 유지 및 양 단백질을 함유한 사료	
	구제역	우제류 동물 및 제품	
볼리비아	구제역	우제류 동물 및 제품	
에콰도르	구제역	우제류 동물 및 제품	
파라과이	구제역	우제류 동물 및 제품	
베네수엘라	구제역	우제류 동물 및 제품	
페루	구제역	우제류 동물 및 제품	
대양주	호주	저치병성 조류독감	금류 및 제품(Victoria)

※ 자료원 : 국가질검총국 동식물검역사(2012.10.15갱신)

3. 수출입수산물검험검역감독관리방법(총국 령 135호, 2011.06.01)

- 본 방법은 수출입 수산물의 검험검역 및 감독관리에 적용(2조)
- 본 방법의 수산물은 식용 수생동물 및 제품을 말하며 수모류, 연체류, 각갑류, 두삭류, 어류, 양서류, 파충류, 수생포유류동물 등 기타수생동물과 조류 등 해양식물 및 제품을 말하며 활 수생동물과 수생동식물 번식재료는 포함하지 않음 (3조)
- 검험검역기구는 법에 따라 수출입수산물에 대하여 검험검역 및 감독추출검사를 진행하며 수출입수산물의 생산가공기업에 대하여 감독관리수요에 따라 신용관리 및 분류관리제도 실시(5조)
- 수입수산물은 중국의 법률, 행정법규, 식품안전국가표준의 요구; 중국과 수출국가 혹은 지역 간 체결한 협의, 의정서, 비망록 등 규정의 검험검역요구; 무역계약에 명시한 검역요구에 부합되어야함. 국가표준이 없는 수산물은 국무원 위생행정부서에서 제출한 허가증명문서 제출(8조)
- 국가질검총국은 중국경내로 수출하는 수산물의 수출상 혹은 대리상에 대하여 등록(备案)관리 실시, 수입수산물의 경외생산기업에 대한 등기(注册)관리는 국가질검총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10조)

■ 수입수산물 한국 생산기업 등기 목록 ■

No	Approval No	Name of establishments	Address	Products
1	KP-002	WOOL FISHERIES Co.	450-20, Wonsu-ri, Janghang-eup, Seochun-gun, Chungnam	Fishery products
2	KP-005	YOUNG SIN FISHERIES Co., LTD	755-11, Woodoo-ri, Dolsan-eup, Yeosu-city, Chunnam	"
3	KP-006	NAMSUN FISHERIES Co.	177-1, Ocheon-dong, Yeosu-city, Chunnam	"
4	KP-007	KANG DONG COLD STORAGE Co.,LTD BUSAN PLANT	523-45, Nambumin-dong, Seo-gu, Busan	"
5	KP-008	OCEAN BLUE COLD STORAGE Co., LTD	325-1, Janglim 1-dong, Saha-gu, Busan	"
6	KP-012	KOREA COLD STORES Co., LTD YUNAN FACTORY	171-20, Amnam-dong, Seo-gu, Busan	"
7	KP-013	KOREA COLD STORES Co., LTD JANGLIM FACTORY	432, Janglim-dong, Saha-gu, Busan	"
8	KP-014	KOREA COLD STORES Co., LTD GAMCHUN FIRST FACTORY	387-19, Gamchun-dong, Saha-gu, Busan	"

No	Approval No	Name of establishments	Address	Products
9	KP-015	KOREA COLD STORES Co., LTD GAMCHUN SECOND FACTORY	387-16, Gamchun-dong, Saha-gu, Busan	"
10	KP-017	KUMHAN COLD STORAGE Co., LTD	345, Gamchun-dong, Saha-gu, Busan	"
11	KP-018	CHUNG HYUN ICE TECH Co., LTD	414-10, Gupyung-dong, Saha-gu, Busan	"
12	KP-025	DAI HAN FISHERIES Co., LTD	387-21, Gamchun-dong, Saha-gu, Busan	"
13	KP-026	SAM SUNG COLD STORAGE Co., LTD	344-2, Gamchun-dong, Saha-gu, Busan	"
14	KP-029	DONGNAM CO.,LTD	739, Amnam-dong, Seo-gu, Busan	"
15	KP-030	DONG YANG COLD STORAGE Co., LTD	91, Janglim-dong, Saha-gu, Busan	"
16	KP-031	TONGYANG/Construction Materials GLOBAL COLD STORAGE	753, Amnam-dong, Seo-gu, Busan	"
17	KP-032	DONGWON COLD STORAGE	740, Amnam-dong, Seo-gu, Busan	"
18	KP-033	DONGWON FISHERIES Co., LTD	569-34, Shinpyung-dong, Saha-gu, Busan	"
19	KP-034	DONGIL COLD STORAGE Co., LTD	554, Shinpyung 2-dong, Saha-gu, Busan	"
20	KP-037	POSUNG COLD STORAGE Co., LTD	714, Amnam-dong, Seo-gu, Busan	"
21	KP-038	DONG SIN FISHERIES CO.,LTD.	680-23, Dadae-dong, Saha-gu, Busan	"
22	KP-041	SAMIL COLD STORAGE Co., LTD	150, Gupyung-dong, Saha-gu, Busan	"
23	KP-042	SAMJIN GLOBAL NET Co., LTD	481, Shinpyung-dong, Saha-gu, Busan	"
24	KP-044	SAMHWA MOOLSAN Co., LTD	562, Janglim-dong, Saha-gu, Busan	"
25	KP-046	SUNG BO COLD STORAGE JANGLIM Co., LTD	510, Janglim-dong, Saha-gu, Busan	"
26	KP-047	SUNG BO COLD STORAGE GAMCHUN Co., LTD	763-21, Gamchun-dong, Saha-gu, Busan	"
27	KP-048	Dong Yang Cold Storage Songdo Branch	523-52, Nambumin-dong, Seo-gu, Busan	"
28	KP-049	COLD STORAGE INTER-BURGO Co.,LTD	507, Janglim-dong, Saha-gu, Busan	"
29	KP-050	SEI YOUNG FISHERY Co., LTD	95-11, Amnam-dong, Seo-gu, Busan	"
30	KP-051	MIKWANG INDUSTRY Co.,LTD	680-10, Dadae-dong, Saha-gu, Busan	"
31	KP-054	SHINWOO AGRI-FISHERY Co., LTD	680-8, Dadae-dong, Saha-gu, Busan	"
32	KP-055	SHINHAN COLD STORAGEES	441-2, Janglim-dong, Saha-gu, Busan	"
33	KP-057	F & F	508, Angol-dong, Jinhae-city, Kyungnam	"
34	KP-058	WOORYANG COLD STORAGE Co.,LTD SECOND FACTORY	689-4, 13 Nambumin-dong, Seo-gu, Busan	"
35	KP-061	CHUNG HYUN COLD STORAGE Co., LTD	414-9, Gupyung-dong, Saha-gu, Busan	"
36	KP-065	CHONG YANG INDUSTRY Co., LTD	387-18, Gamchun-dong, Saha-gu, Busan	"
37	KP-067	CHONG HO FREEZER PLANT Co., LTD	550, Shinpyung-dong, Saha-gu, Busan	"
38	KP-068	BUSAN HAESARANG Co.,LTD.	112-3, Gupyung-dong, Saha-gu, Busan	"
39	KP-069	TONGYOUNG FISHERIES Co., LTD	763-20, Gamchun-dong, Saha-gu, Busan	"
40	KP-070	YOUNG HWAN COLD STORAGE	24-29, Gupyung-dong, Saha-gu, Busan	"
41	KP-073	KOREA COLD STORES Co., LTD. JANGRIM SECOND FACTORY	483-1, Janglim-dong, Saha-gu, Busan	"
42	KP-074	HANIL COLD STORAGE Co., LTD	344-1, Gamchun-dong, Saha-gu, Busan	"
43	KP-076	MIKWANG INDUSTRY Co.,LTD II	680-21, Dadae-dong, Saha-gu, Busan	"
44	KP-077	HAEJIN MOOLSAN Co., LTD	1650-1, Songjung-dong, Gangseo-gu, Busan	"

No	Approval No	Name of establishments	Address	Products
45	KP-078	HONG LIM FISHERIES REFRIGERATION Co., LTD	340, Gamchun-dong, Saha-gu, Busan	"
46	KP-079	FINETEC COLD STORAGE CORP.	414-5, Gupyung-dong, Saha-gu, Busan	"
47	KP-080	HEE CHANG TRADING Co., LTD	523-29, Nambumin-dong, Seo-gu, Busan	"
48	KP-081	DONGWON F & B Co., LTD	91-1, Daewon-dong, Changwon-city, Kyungnam	"
49	KP-082	DAE IL FISHERY Co., LTD	1005-1, Shiljeon-ri, Hacheong-myeon, Keoje-city, Kyungnam	"
50	KP-083	DAI ONE FOOD Co., LTD	150, Sinjun-ri, Sanyang-eup, Tongyoung-city, Kyungnam	"
51	KP-084	DAI HUNG MULSAN Co.	828, Misoo-dong, Tongyoung-city, Kyungnam	"
52	KP-085	TAEHWA MUL SAN CO	558, Youngun-ri, Sanyang-eup, Tongyoung-city, Kyungnam	"
53	KP-087	CENTRAL FISHERIES Co., LTD	139, Eogu-ri, Dunduck-myeon, Keoje-city, Kyungnam	"
54	KP-088	SEWOONG FISHERIES Co., LTD	92, Kanggu-ri, Kanggu-myeon, Youngduck-gun, Kyungbuk	"
55	KP-089	DAEHO FISHERIES Co., LTD	16, Kanggu-ri, Kanggu-myeon, Youngduck-gun, Kyungbuk	"
56	KP-091	SAMHONG INDUSTRIAL Co., LTD	1062, Hupo-ri, Hupo-myeon, Ulchin-gun, Kyungbuk	"
57	KP-093	JEONGHWA FOOD Co., LTD	357, Josa-ri, Songra-myeon, Buk-gu, Pohang-city, Kyungbuk	"
58	KP-094	SUNG JIN TRADING Co., LTD	#107(DAEPO-DONG) NONGGONGDANJI-GIL SOKCHO-CITY GANGWON-DO KOREA	"
59	KP-097	WOO REE FISHERY Co.	28-34, NONGGONGDANJI1GIL, DAEPO-DONG, SOKCHO-CITY,GANGWON-DO, KOREA	"
60	KP-098	KEUM HAN IND. Co.	1207-21, Kyohang-ri, Jumunjin-eup, Kangnung-city, Kangwon	"
61	KP-099	SAM YOUNG FISHERY CO.,LTD	#40-19 NONGGONGDANJI-GIL JUMUNJIN-EUP GANGNEUNG-CITYGANGWON-DO KOREA	"
62	KP-100	ASIA COLD STORAGE Co., LTD	736, Amnam-dong, Seo-gu, Busan	"
63	KP-108	SI WON MOOLSAN Co., LTD	671-5, Amnam-dong, Seo-gu, Busan	"
64	KP-110	YONWOO COLD STORAGE Co., LTD	689-5, Nambumin-dong, Seo-gu, Busan	"
65	KP-111	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S KAM CHUNHANG DISTRIBUTION CENTER	717, Amnam-dong, Seo-gu, Busan	"
66	KP-115	JEONG PIL Co., LTD	495, Wolpyong-ri, Gosung-eup, Gosung-gun, Kyungnam	"
67	KP-118	DEOKYEON SEAFOOD Co.	481-2, Yongho-ri, Kwangdo-myeon, Tongyoung-city, Kyungnam	"
68	KP-122	YOORIM COLD STORAGE Co., LTD	737, Amnam-dong, Seo-gu, Busan	"
69	KP-126	HANSUNG FISHERIES Co., LTD	181, Byungpo1-ri, Guryongpo-eup, Nam-gu, Pohang-city, Kyungbuk	"
70	KP-127	YANGPO FOODS Co., LTD	247, Yangpo-ri, Janggi-myeon, Nam-gu, Pohang-city, Kyungbuk	"
71	KP-132	YEONG DUK FOODS Co., LTD	20-2, Kanggu-ri, Kanggu-myeon, Youngduck-gun, Kyungbuk	"

No	Approval No	Name of establishments	Address	Products
72	KP-134	SONG RIM FISHERY Co., LTD	#1086-6, JANGRIM-DONG, SAHA-GU, BUSAN	"
73	KP-137	DAE JUNG FISHERY Co., LTD	86, Goil-ri, Phunghae-up, Uljin-gun, Kyungbuk	"
74	KP-138	SE YANG MULSAN Co., LTD	358-7, Dongho-dong, Tongyeong-city, Kyungnam	"
75	KP-142	Sajo Industries Co.,LTD. Ei Chang Cold	188, Oseo-ri, Jinjeon-myeon,Masan-city, Kyungnam	"
76	KP-144	COLD STORAGE INTER-BURGO II Co., LTD	716, Amnam-dong, Seo-gu, Busan	"
77	KP-146	DEOK SU COLDSTORAGE Co., LTD	20-5, Bugok-dong, Donghae-city, Kangwon	"
78	KP-148	WOO SHIN COLD STORAGE Co., LTD	523-37, Nambumin-dong, Seo-gu, Busan	"
79	KP-149	JEJU Fish-culture Fisheries Cooperatives	1377-45, Hallim-ri, Hallim-eup, Jeju-city, Jeju	"
80	KP-150	Shin Han Sung Food Co.	1207-4, Gyohang-ri, Jumunjin-eup, Kangnung-city, Kangwon	"
81	KP-151	HAEWON COLD STORAGE Co.,LTD	722-1, Amnam-dong, Seo-gu, Busan	"
82	KP-153	KORYO REFRIGERRATION Co.,LTD	631-1, Sangnam-ri, Cheongnyang-myeon, Ulju-gun, Ulsan-si	"
83	KP-154	SAJO SEAFOOD CO., LTD	721, Amnam-dong, Seo-gu, Busan	"
84	KP-155	DONGWON INDUSTRIES Co.,LTD. BUSAN PLANT	740, Amnam-dong, Seo-gu, Busan	"
85	KP-156	KEUMYOUNG FOODS CO.,LTD	1207-22, Kyohang-ri, Jumunjin-eup, Kangnung-city, Kangwon	"
86	KP-157	EIYOH KOREA CO., LTD	282-5, Daechi-ri, Chilseo-myeon, Haman-gun, Kyungnam	"
87	KP-158	SUNG JIN FISHERY CO.,LTD	719, Amnam-dong, Seo-gu, Busan	"
88	KP-159	DAEHU ENTERPRISE CO.,LTD	64-4, Geumeum-ri, Hupo-myeon, Ulchin-gun, Kyungbuk	"
89	KP-160	SAJO SEAFOOD CO.,LTD. SECOND DISTRIBUTION CENTER	720-1, Amnam-dong, Seo-gu, Busan	"
90	KP-161	HANNIL COLD STORAGE CO.,LTD. SECOND FACTORY	344-16, Gamcheon-dong, Saha-gu, Busan	"
91	KP-162	BORIM LOGISTICS CO.,LTD. BUSAN COLD STORAGE	720, Amnam-dong, Seo-gu, Busan	"
92	KP-163	YUSUNG MULSAN Co., LTD	160-18, Yuldae-ri, Goseong-eup, Goseong-gun, Kyungnam	"
93	KP-164	YURIM FISHERY Co., LTD	1086-6, Jangrim-dong, Saha-gu, Busan	"
94	KP-165	SAMWON SEA FOOD	1087-19, Jangrim-dong, Saha-gu, Busan	"
95	KP-166	JEIL C.S. INDUSTRIES CO.,LTD	342, Gamcheon-dong, Saha-gu, Busan	"
96	KP-167	DongMyung Fishery Food CO.,LTD	463-3, Janglim-dong, Saha-gu, Busan	"
97	KP-168	YEOSU OF FISHERIES COOPERATIVE UNION	#210, Eohangdanji-ro, Yeosu-city, Chunnam, Korea	"
98	KP-170	KULS FREEZING & COLDSTORAGE CO., LTD	692-11, Nambumin-dong, Seo-gu, Busan	"
99	KP-172	DONG YEONG COLD PLAZA CO.,LTD	705, Amnam-dong, Seo-gu, Busan	"
100	KP-173	CHEONG JEONG CO.,LTD	433, Soju-dong, Yangsan-city, Kyungnam	"
101	KP-174	Sajo Industries Co.,Ltd Goseong Plant	166-1, Yuldae-ri, Goseong-eub, Goseong-gun, Kyungnam	"
102	KP-175	DAEJOO CO.,LTD	656, Amnam-dong, Seo-gu, Busan	"
103	KP-176	BUSAN INTERNATIONAL FISHERIES EXCHANGE	BUSAN INTERNATIONAL FISH MARKET, 761,	"

No	Approval No	Name of establishments	Address	Products
		CO.,LTD	Amnam-dong, Seo-gu, Busan	
104	KP-177	BUSAN DONGBU FISHERIES COOPERATIVES	274-6, Daebyeon-ri, Gijang-gun, Busan	"
105	KP-178	WOOSOO CORPORATION	694-1, Nodong-ri, Kampo-eup, Kyeongju-city, Kyungbuk	"
106	KP-179	NURI FISHERY ASSOCIATION CO., LTD	572-5, Oknam-ri, Janghang-eup, Seocheongun, Chungnam	"
107	KP-180	G&F corperation guryongpo factory	72, Byeongpo-ri, Guryongpo-eup, Nam-gu, Pohang-city, Gyeongbuk	"
108	KP-181	MYUNG JIN FISHERY COMPANY	256-1, POWOL-RI, YANGYANG-EUP, YANGYANG-GUN, GANGWON	"
109	KP-182	Shin Hyun Marine Co.,LTD	Room #1, DongYeong Cold Plaza, Annex Building, #740, Amnam-dong,Seo-gu, Busan	"
110	KP-183	SNB INTERNATIONAL CO.,LTD	1307-7 Sa-ri Ganknam-myeon Cheongdo-gun Gyeongsangbuk-do	"
111	KP-184	DONGLIM SEAFOODS CORPORATION	108-3, Hang-dong 7-ga, Jung-gu Incheon	"
112	KP-185	YEOSU FISH CO., LTD.	176 Ocheon-dong Yeosu-si Jeollanam-do	"
113	KP-187	SHINHANG COLD STORAGE CO., LTD	85-20, hasongri, songramyun, bukgu pohang Gyeongsangbuk-do	"
114	KP-188	KIM PO COLD STORAGE CO., LTD.	347, Hyangsan-ri Gochon-myun Kimpo-city Gyeonggi-do	"
115	KP-189	SEMIN FISHERY Co.,Ltd	918, Gyohang-ri, Jumunjin-eup, Gangneung-si, Gangwon-do	"
116	KP-190	Hwang San International Co., LTD	3BL 5-1LOT B, Cheonbuk-Industrial complex, Oya-ri, Cheonbuk-myeon,Gyeongju-si Gyeongbuk	"
117	KP-191	Mokyang F1 CO., LTD.	687, Samyul-ri, hupo-myun, Uljin-gun, Gyeongsangbuk-do	"
118	KP-192	Dong Won Mulsan Co., Ltd.	#539-5,Beobsong-Ri, Dosan-Myeon, Tongyeong-Si, Gyeongsangnam-Do	"
119	KP-193	Kyung yang fishery co.,LTD.	#476, Jangchi-ri, Samsan-myeon, Goseong-gun, Gyeongsangnam-do,Korea	"
120	KP-194	HAECHEONG FOODS CO.,LTD	7, Manheung-dong, Yeosu-si, Jeollanam-do, Korea	"
121	KP-195	TONGYEONG -JEJU FISHERIES	973-5, Inpyeong-dong, Tongyeong-si, Gyeongsangnam-do, Republic of Korea	"
122	KP-196	SEAVILLAGE CO.,LTD	847-1 Chimsan-dong Buk-gu Daegu Korea	"
123	KP-197	WOJIN MOOLSAN CO.,LTD.	157, Doseon-Ri, Dosan-Myeon, Tongyeong-Si, Gyeongsangnam-Do,Republic of Korea	"
124	KP-198	JUSIN FOODS CO.,LTD	1058 Hupo-ri, Hupo-myon, Uljin-gun, Kyoungbuk	"
125	KP-199	MK SEAFOOD	3268-1, Topyeong-dong, Seogwipo-si, Jeju-do	"
126	KP-200	IL GU SUSAN	315-1,Bueksong-Ri, Dosan-men,, Tongyeong-City, Kungnama	"
127	KP-201	HAEBONG FISHEIRIES	63, changholi sadeongmyeun geojecity kyeongnam	"
128	KP-202	JEONNAM MARINE BIOINDUSTRY CENTER	#991, JUKCHUNG-RI, WNADO-UP, WNADO-GUN, JEOLLANAM-DO	"

No	Approval No	Name of establishments	Address	Products
129	KP-203	SAMGAYOUNG CO.,LTD	959-1, Guryongpo-ri, Guryongpo-eup, Nam-gu, Pohang-city, Gyeongbuk, Korea	„
130	KP-204	HYOJEONG COMMERCE CO., LTD	#85BL-1LOT, 676-8, Gojan-dong, Namdong-gu, Incheon	„
131	KP-205	JungWon Fish and Food (FNF)	15, Hajeong-ro 30 beon-gil, Guryongpo-eup Nam-gu, Pohang-siGyeongsangbuk-do, Korea	„
132	KP-206	Bukang	1356, Hanjae-ro, Gangnam-myeon Cheongdo-gun Gyeongsangbuk-do, Korea	„
133	KP-207	DEOK HWA FOOD CO., LTD	335-1, Jangrim-Dong, Saha-Ku, Busan, Korea	„
134	KP-208	CHEONGWOO Fisheries Union Co.	#21-4 Hajeon-ri, Simweon-myeon, Gochang-gun, Jeollabuk-do	„
135	KP-209	Jungjin Co., LTD	#519 Miwon-ri, Impi-myeon, Gunsan-si, Jeollabuk-do	„
136	KP-210	Foodmaru	21-7, Nonggongdanji 4-gil, Wando-eup, Wando-gun, Jeollanam-do, Republic of Korea	„
137	KP-211	Kyung-In Bukbu Fisheries Cooperatives	#951, Songma-ri, Daegot-myeon, Gimpo-si, Gyeonggi-do	„
138	KP-212	TAEIL FOOD Co.,Ltd	#321, Bubsong-Ri, Dosan-Myeon, Tongyeong-Si Gyeongsangnam-do, Korea	„
139	KP-213	SAMSAM PRODUCTS Co.,Ltd	#20, Wonpyeong-Ri, Yongnam-myeon, Tongyeong-Si, Gyeongsangnam-do, Korea	„
140	KP-214	HAERIM MOOLSAN	#602 Sinwol-Ri Goseong-eup Goseong-gun Gyeongsangnam-do	„
141	KP-215	Seafood Co.,Ltd.	#1087-6, Gayong-ri, Wando-eup, Wando-gun, Jeollanam-do	„
142	KP-216	SL FOOD CO.,LTD	59, Muijhaean-ro, Tongyeong-Si, Gyeongsangnam-do, Korea	„

※ 자료원 :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등기관리부(2012. 09. 27갱신)

- 검험검역기구는 수입수산물의 수령인에 대하여 등록(备案)관리 실시, 등록업체만 수산물 수입 가능(10조)
- 국가질검총국은 안전위생 위험이 비교적 높은 수입 양서류, 파충류, 수생포유류동물 및 기타 양식수산물 등에 대하여 검역심사비준제도 실시, 상기제품의 수령인은 무역계약 체결 전에 검역심사비준을 받고 진경동식물허가증을 취득해야함(13조)
- 수산물의 수입 전 혹은 수입 시 수령인 혹은 대리인은 수출국가 혹은 지역 정부에서 발급한 검험검역증서 정본의 원본, 원산지증서, 무역계약, 선하증권, 포장명세서, 인보이스 등으로 수입세관 검험검역기구에 검역신고(14조)

- 검험검역기구는 수령인 혹은 대리인이 제출한 관련 증서에 대하여 심사 확인 후 요구에 부합되면 접수, 검역심사비준수량을 심사 후 장부에서 삭제하고 입경화물통관증명 발급(15조)
- 수입수산물은 검험검역기구에서 지정한 냉동 창고 혹은 기타장소에 저장(16조)

■ 수입수산물 현장검역내용(18조) ■

- 1. 증서 대조 확인, 화물 검사 확인
- 2. 포장 수입수산물포장기본요구 부합여부 검사 확인
- 3. 식물성해충이 쉽게 번식하는 수입 염장 혹은 건제수산물에 대하여 식물검역실시, 필요시 위해제거처리
- 4. 부패변질여부, 이물질함유여부, 건조여부, 피 얼음 존재여부, 서리 과다여부 검사 확인

- 수입 정량포장 수산물의 중문라벨은 중국식품라벨의 관련 법률, 행정법규, 규장의 규정에 및 국가기술규범의 강제성 요구에 부합되어야함(19조)

■ 수입수산물 샘플 검험항목(20조) ■

- 1. 질병을 야기시키는 미생물, 중금속, 농수약잔류물 등 유독유해물질
- 2. 역병, 기생충
- 3. 기타 요구 항목

- 수입수산물 검험검역 합격 시 <입경화물검험검역증명>발급하여 생산, 가공, 판매, 사용을 허가. <입경화물검험검역증명>에 수입수산물의 켄테이너번호, 생산로트번호, 생산업체와 화물기호 등 정보 명시. 검험검역 불합격 시 <검험검역처리통지서> 발급, 인체안전, 건강과 환경보호 외 항목이 불합격 시 검험검역기구의 감독 하 기술처리 진행, 합격 후 판매, 사용 가능. 당사자가 클레임증명 등 기타증명 발급을 신청 시 관련증명 발급(21조)

Ⅱ 반품 폐기 처리상황(22조) Ⅱ

1. 수입심사비준 제품이 유효한 수입동식물검역허가증 없는 경우
2. 등기(注册)를 해야 하는 수산물 생산업체가 중국내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3. 수출국가 혹은 지역 관방에서 발급한 유효 검험검역증서가 없는 경우
4. 인체안전, 건강과 환경보호 항목 불합격 경우

Ⅱ 한국의 대 중국 수출 수생동물 등록업체 목록 Ⅱ

No	Name of Aquafarm	Address	Aquaculture Products
KA-001	ILOHSAM SUSAN	3888, Mureung-ri, Daejeong-eup, Seogwipo-city, Jeju	Live Aquatic Animals
KA-002	NULPOOLUN FISHERIES UNION CORPORATION	745-6, Geumdeung-ri, Hangeong-myeon, jeju-city, Jeju	"
KA-003	ALASKA SUSAN	195, Sincheon-ri, Seongsan-eup, Seogwipo-city, Jeju	"
KA-004	WONIL FISHERIES CORP.	626, Goseong-ri, Seongsan-eup, Seogwipo-city, Jeju	"
KA-005	DOORYONG SUSAN FISHERIES UNION CORPORATION	2816-1, Dumo-ri, Hangeong-myeon, jeju-city, Jeju	"
KA-006	CANAAN SUSAN	105-1, Wimi-ri, Namwon-eup, Seogwipo-city, Jeju	"
KA-007	DONGKOOK SUSAN	96, Wimi-ri, Namwon-eup, Seogwipo-city, Jeju	"
KA-008	SUNWOO SUSAN	1-23, Haengwon-ri, Gujwa-eup, jeju-city, Jeju	"
KA-009	DONGSEO Co.,LTD.	1291, Onpyeong-ri, Seongsan-eup, Seogwipo-city, Jeju	"
KA-010	WOOSUNG MARINE PRODUCT	838, Wimi-ri, Namwon-eup, Seogwipo-city, Jeju	"
KA-011	SE-YOUNG SUSAN	2154, Yeongrak-ri, Daejeong-eup, Seogwipo-city, Jeju	"
KA-012	DAE-YANG SUSAN	2129, Yeongrak-ri, Daejeong-eup, Seogwipo-city, Jeju	"
KA-013	DAE-YOUNG FISHERIES UNION CORPORATION	2155, Ilgwa-ri, Daejeong-eup, Seogwipo-city, Jeju	"
KA-014	JE-YOUNG FISHERIES UNION CORPORATION	2135, Yeongrak-ri, Daejeong-eup, Seogwipo-city, Jeju	"
KA-015	KWANGWOO SUSAN	4069, Mureung-ri, Daejeong-eup, Seogwipo-city, Jeju	"
KA-016	HAESUNG SUSAN	366-1, Seongsan-ri, Seongsan-eup, Seogwipo-city, Jeju	"
KA-017	SUNGIL SUSAN	398-1, Ojo-ri, Seongsan-eup, Seogwipo-city, Jeju	"
KA-018	BODEOKSUSAN	398-11, Ojo-ri, Seongsan-eup, Seogwipo-city, Jeju	"
KA-019	JUNGWOO FLATFISH FARM	1,Sinpung-ri,Seongsan-eup,Seogwipo-city,Jeju	"
KA-020	SHINPUNG FLATFISH FARM	11,Sinpung-ri,Seongsan-eup,Seogwipo-city,Jeju	"
KA-021	KEYNGWON SUSAN	21-4, Sincheon-ri, Seongsan-eup, Seogwipo-city, Jeju	"
KA-022	KOKIRI SUSAN	1-40,Haengwon-ri,Gujwa-eup,Jeju-city,Jeju	"
KA-023	HANMAEUM SUSAN	177, Sincheon-ri, Seongsan-eup, Seogwipo-city, Jeju	"
KA-024	SEOYEON SUSAN	2386,Pyoseon-ri,Pyoseon-myeon,Seogwipo-city,Jeju	"
KA-025	SEHAN SUSAN	1552,Sehwa-ri,Pyoseon-myeon, Seogwipo-city,Jeju	"
KA-026	U-RA SUSAN	92,Wimi-ri,Namwon-eup,Seogwipo-city,Jeju	"
KA-027	DAEHAESUNG SUSAN	1185-1,Pyoseon-ri,Pyoseon-myeon, Seogwipo-city,Jeju	"

No	Name of Aquafarm	Address	Aquaculture Products
KA-028	DUCK MYUNG SUSAN	1-39, Haengwon-ri, Gujwa-eup, Jeju-city, Jeju	"
KA-029	DAEKI SUSAN	1-42, Haengwon-ri, Gujwa-eup, Jeju-city, Jeju	"
KA-030	ILCHUL SUSAN	691-1, Onpyeong-ri, Seongsan-eup, Seogwipo-city, Jeju	"
KA-031	DOWONSUSAN	4069-2, Mureung-ri, Daejeong-eup, Seogwipo-city, Jeju	"
KA-032	HALLA SUSAN	388-15, Bukchon-ri, Jocheon-eup, Jeju-city, Jeju	"
KA-033	NARIM SUSAN	1161-1, Pyoseon-ri, Pyoseon-myeon, Seogwipo-city, Jeju	"
KA-034	JANGSUNG SUSAN	1214, Onpyeong-ri, Seongsan-eup, Seogwipo-city, Jeju	"
KA-035	DEUNGDAE FISHERIES UNION CORPORATION	1213, Onpyeong-ri, Seongsan-eup, Seogwipo-city, Jeju	"
KA-036	SAMHYUP SUSAN	1210-3, Onpyeong-ri, Seongsan-eup, Seogwipo-city, Jeju	"
KA-037	KOWON SUSAN FISHERIES UNION CORPORATION	742, Woljeong-ri, Gujwa-eup, Jeju-city, Jeju	"
KA-038	SANHAE SUSAN	3-1, Taeheung-ri, Namwon-eup, Seogwipo-city, Jeju	"
KA-039	WON SUSAN	1-1, Taeheung-ri, Namwon-eup, Seogwipo-city, Jeju	"
KA-040	UAM SUSAN	1165, Taeheung-ri, Namwon-eup, Seogwipo-city, Jeju	"
KA-041	HAEJO SUSAN	3047, Gwidoek-ri, Hallim-eup, Jeju-city, Jeju	"
KA-042	JEJU SUSAN	178, Sehwa-ri, Pyoseon-myeon, Seogwipo-city, Jeju	"
KA-043	WONIL PYOSEON AQUICULTURE PLACE	182, Sehwa-ri, Pyoseon-myeon, Seogwipo-city, Jeju	"
KA-044	MYEONGJIN SUSAN	608, Goseong-ri, Seongsan-eup, Seogwipo-city, Jeju	"
KA-045	O-CHEONMAN FISH FARMING, CO.	1940, Ilgwa-ri, Daejeong-eup, Seogwipo-city, Jeju	"
KA-046	HYUNDAE HWSUNG AQUICULTURE PLACE Co.,LTD.	8-3, Taeheung-ri, Namwon-eup, Seogwipo-city, Jeju	"
KA-047	BEMYANG SUSAN	635, Sinheung-ri, Namwon-eup, Seogwipo-city, Jeju	"
KA-048	KYUNGIN SUSAN	127, Sinheung-ri, Namwon-eup, Seogwipo-city, Jeju	"
KA-049	HANNAM SUSAN	1-19, Haengwon-ri, Gujwa-eup, Jeju-city, Jeju	"
KA-050	YUCHARG FISHERIES UNION CORPORATION	1572, Yeongrak-ri, Daejeong-eup, Seogwipo-city, Jeju	"
KA-051	DAEHEUNG SUSAN	607-3, Goseong-ri, Seongsan-eup, Seogwipo-city, Jeju	"
KA-052	SENIL SUSAN	1544-2, Sehwa-ri, Pyoseon-myeon, Seogwipo-city, Jeju	"
KA-053	SENIL SAN UP	1553, Sehwa-ri, Pyoseon-myeon, Seogwipo-city, Jeju	"
KA-054	HAEDONG SUSAN	1193-5, Bukchon-ri, Jocheon-eup, Jeju-city, Jeju	"
KA-055	JUNG HAE SUSAN	73-3, Sinsan-ri, Seongsan-eup, Seogwipo-city, Jeju	"
KA-056	DAE MYUNG SUSAN	75, Sinsan-ri, Seongsan-eup, Seogwipo-city, Jeju	"
KA-057	JAMAE SUSAN	915-2, Gwidoek-ri, Hallim-eup, Jeju-city, Jeju	"
KA-058	HAERYONG SUSAN	21-1, Sincheon-ri, Seongsan-eup, Seogwipo-city, Jeju	"
KA-059	HAERYONG YANGSIK	21-2, Sincheon-ri, Seongsan-eup, Seogwipo-city, Jeju	"
KA-060	JEJUDO MARINE FISH-CULTURE CO-OP	1-27, Haengwon-ri, Gujwa-eup, Jeju-city, Jeju	"
KA-061	HYEONG WON SUSAN	1235, Gonae-ri, Aewol-eup, Jeju-city, Jeju	"
KA-062	HYEONG BO SUSAN	1238-2, Gonae-ri, Aewol-eup, Jeju-city, Jeju	"
KA-063	HANGDO MARINE PRODUCTS	1131, Sinsan-ri, Seongsan-eup, Seogwipo-city, Jeju	"
KA-064	OH SUNG SUSAN	56, Onpyeong-ri, Seongsan-eup, Seogwipo-city, Jeju	"
KA-065	JEWON SUSAN	344, Sincheon-ri, Seongsan-eup, Seogwipo-city, Jeju	"
KA-066	DAEKWANSUSAN	12, hak-ri, Ilgwang-myeon, Gijang-gun, Busan	"

No	Name of Aquafarm	Address	Aquaculture Products
KA-067	DAEYANGSUSAN	445, yeonha-ri, Gijang-eup, Gijang-gun, Busan	"
KA-068	DONGRIMSUSAN	261-10, dongback-ri, Ilgwang-myeon, Gijang-gun, Busan	"
KA-069	DONGYANGSUSAN	158-3, icheon-ri, Ilgwang-myeon, Gijang-gun Busan	"
KA-070	DONGJISUSAN	145, icheon-ri, Ilgwang-myeon, Gijang-gun, Busan	"
KA-071	MAEILSUSAN	19, san deabyun-ri, Gijang-eup, Gijang-gun, Busan	"
KA-072	SAMKIAQUAFARM	126, icheon-ri, Ilgwang-myeon, Gijang-gun, Busan	"
KA-073	SOORYONGSUSAN	265, dongback-ri, Ilgwang-myeon, Gijang-gun, Busan	"
KA-074	SINILSUSAN	135, icheon-ri, Ilgwang-myeon Gijang-gun Busan	"
KA-075	YOUNGNAMSUSAN	316-1, dongback-ri, Ilgwang-myeon, Gijang-gun, Busan	"
KA-076	LEEJINSUSAN	119-4, hak-ri, Ilgwang-myeon, Gijang-gun, Busan	"
KA-077	JOHAESUSAN	299, icheon-ri, Ilgwang-myeon, Gijang-gun, Busan	"
KA-078	POONGSUNGSUSAN	252-5, dongback-ri, Ilgwang-myeon Gijang-gun Busan	"
KA-079	HAEMASUSAN	145-14, icheon-ri, Ilgwang-myeon, Gijang-gun, Busan	"
KA-080	NAMJUNGSUSAN	2, dongback-ri, Ilgwang-myeon, Gijang-gun, Busan	"
KA-081	DAEWONSUSAN	1, Jinha-ri, Seosang-meon, Ulju-gun, Ulsan-si	"
KA-082	HAEYANG FISHERIES UNION CORPORATION	385, Dueo-ri, Simwon-myeon, Gochang-gun, Jeonbuk	"
KA-083	HAEGWANG SUSAN	748, Geumbyeong-ri, Haeri-myeon, Gochang-gun, Jeonbuk	"
KA-084	JUSAN YANGMAN	1585, Jusan-ri, Simwon-myeon, Gochang-gun, Jeonbuk	"
KA-085	GOCHANG HAESEONG FISHERIES UNION CORPORATION	2, Mandol-ri, Simwon-myeon, Gochang-gun, Jeonbuk	"
KA-086	YOUNGCHANGFISHERIESUNIONCORPORATION	386-1, Yeongpung-ri, Gunoe-myeon, Wando-gun, Jeonnam	"
KA-087	BUMHONGSUSAN	363,Daldo-ri,Gunoe-myeon,Wando-gun, Jeonnam	"
KA-088	SINHEA SUSAN	317,318,319-1,Yearak-ri,Munnae-myeon,Haenam-gun,Jeonna	"
KA-089	DALSUNG SUSAN	357, Wondong-ri, Gunoe-myeon, Wando-gun, Jeonnam	"
KA-090	MANHEA SUSAN	2-1, Sedong-ri, Gogeum-myeon, Wando-gun, Jeonnam	"
KA-091	SANHO SUSAN	183, Daeya-ri, Wando-eup, Wando-gun, Jeonnam	"
KA-092	BOGHEE SUSAN	27, Doekdong-ri, Gogeum-myeon, Wando-gun, Jeonnam	"
KA-093	DEUNGDAE SUSAN	834, Gahak-ri, Soan-myeon, Wando-gun, Jeonnam	"
KA-094	SANGJINFISHING	Jangam-ri, Beolgyo-eup, Boseong-gun, Jeonnam	"
	VILLAGE ASSOCIATION	(Fishing Licence No.10177)	
KA-095	YONGDUFISHING	Guryong-ri,, Byeollyang-myeon, Suncheon-city, Jeonnam	"
	VILLAGE ASSOCIATION	(FishingLicenceNo.10001)	
KA-096	YONGDUFISHING	Guryong-ri, Byeollyang-myeon, Suncheon-city, Jeonnam	"
	VILLAGE ASSOCIATION	(Fishing Licence No.10002)	
KA-097	YONGDUFISHING	Guryong-ri, Byeollyang-myeon, Suncheon-city, Jeonnam	"
	VILLAGE ASSOCIATION	(Fishing Licence No.10003)	
KA-098	DAESINSUSAN	171, Donji-ri, Saryang-myeon, Tongyeong-city, Gyeongnam	"
KA-099	SMILE FEED CO.,LTD OF GEOJE BRANCH	699, Mangchi-ri, Ilun-myeon, Geoje-city, Gyeongnam	"
KA-100	SUNIL FISHERIES Co.,	455,Jungpyeong-ri,Gumnam-myeon, Hadong-kun, Gyeongnam	"
KA-101	ILHAE FISHERIES Co.,	205, gu-ri, Dundeok-myeon, Geoje-city, Gyeongnam	"

No	Name of Aquafarm	Address	Aquaculture Products
KA-102	HAERYONGGUNG SUSAN	699, Mangchi-ri, Ilun-myeon, Geoje-city, Gyeongnam	"
KA-103	DONGRIM-MARINE PRODUCTS	40, Duwon-ri, Janggi-myeon, Nam-gu, Pohang-city, Gyeongbuk	"
KA-104	JINYOUNG-MARINE PRODUCTS	629-1, Hajeong-ri, Guryongpo-eup, Nam-gu, Pohang-city, Gyeongbuk	"
KA-105	SEONGJIN-MARINE PRODUCTS	125, Gangsa-ri, Daebo-myeon, Nam-gu, Pohang-city, Gyeongbuk	"
KA-106	ODO-MARINE PRODUCTS	173-3, Odo2-ri, Heunghae-eup, Buk-gu, Pohang-city, Gyeongbuk	"
KA-107	YANGWOO-MARINE PRODUCTS	317, Gyewon-ri, Janggi-myeon, Nam-gu, Pohang-city, Gyeongbuk	"
KA-108	SEBU-MARINE PRODUCTS	666-37, Seokbyeong-ri, Guryongpo-eup, Nam-gu, Pohang-city, Gyeongbuk	"
KA-109	DOYOUNG-MARINE PRODUCTS	696, Seokbyeong-ri, Guryongpo-eup, Nam-gu, Pohang-city, Gyeongbuk	"
KA-110	JOYANG-MARINE PRODUCTS	188-8, Gangsa-ri, Daebo-myeon, Nam-gu, Pohang-city, Gyeongbuk	"
KA-111	HAESUNG-MARINE PRODUCTS	35, Seokbyeong-ri, Guryongpo-eup, Nam-gu, Pohang-city, Gyeongbuk	"
KA-112	THE WANDO OF FISHERMEN'S COOPERATIVE SOCIETY	178-25, Daeya-ri, Wando-eup, Wando-gun, Jeonnam	"
KA-113	Daeha-Marine Hatchery	40, Osan-ri, Wonnam-myeon, Uljin-gun, Gyeongbuk	"
KA-114	Haesong-Su San	217, Jiksan-ri, Pyeonghae-eup, Uljin-gun, Gyeongbuk	"
KA-115	SINDAEDUCK SUSAN	673, Dongbok-ri, Gujwa-eup, Jeju-city, Jeju	"
KA-116	DomBa Fisheries Association Cooperation	10-4, Gagyori, Gogeu-myeon, Wando-gun, Jeonnam	"
KA-117	JungKyung SuSan	1039, Yuseo-ri, Saengil-myeon, Wando-gun, Jeonnam	"
KA-118	DaeHan SuSan	1156-24, Wolyang-ri, Sinji-myeon, Wando-gun, Jeonnam	"
KA-119	ILYoon SuSan	710, Wolyang-ri, Sinji-myeon, Wando-gun, Jeonnam	"
KA-120	SANG IL SUSAN	4, Samdal-ri Seongsan-eup Seogwipo-city, Jeju	"
KA-121	WOO JIN SUSAN	3983, Gosan-ri Hangyeong-myeon Jeju-city, Jeju	"
KA-122	HAN SU SUSAN	71, Taeheung-ri Namwon-eup Seogwipo-city, Jeju	"
KA-123	Dongbu Fisheries Association Cooperation	1086-10, Wolyang-ri, Sinji-myeon, Wando-gun, Jeonnam	"
KA-124	DooHui SuSan	5-28, Daegok-ri, Sinji-myeon, Wando-gun, Jeonnam	"
KA-125	DaWon SuSan	1248, Daegok-ri, Sinji-myeon, Wando-gun, Jeonnam	"
KA-126	DaeHan SuSan	40-198, Gagyori, Gogeu-myeon, Wando-gun, Jeonnam	"
KA-127	HyunYoon SuSan Association Cooperation	1085-8, Wolyang-ri, Sinji-myeon, Wando-gun, Jeonnam	"
KA-128	SuengHo SuSan Association Cooperation	1156-8, Wolyang-ri, Sinji-myeon, Wando-gun, Jeonnam	"
KA-129	SinJISuSanII	1224-13, Wolyang-ri, Sinji-myeon, Wando-gun, Jeonnam	"
KA-130	SamSung SuSan	1224-26, Wolyang-ri, Sinji-myeon, Wando-gun, Jeonnam	"
KA-131	HanJin SuSan	1156-18, Wolyang-ri, Sinji-myeon, Wando-gun, Jeonnam	"
KA-132	SANG IL SUSAN YANG SIK	2, Samdal-ri Seongsan-eup Seogwipo-city Jeju	"
KA-133	Bobae SuSan	13-9, Sinsang-ri, Sinji-myeon, Wando-gun, Jeonnam	"
KA-134	BobaeSuSanII	13-5, Sinsang-ri, Sinji-myeon, Wando-gun, Jeonnam	"
KA-135	GATMAUL SUSAN	4-14, Pyeongdae-ri Gujwa-eup Jeju-city, Jeju	"
KA-136	PYUNGDAE CULTURE	515-40, Pyeongdae-ri Gujwa-eup Jeju-city, Jeju	"
KA-137	MYONGJIN TRADING CO., LTD	515-28, Pyeongdae-ri Gujwa-eup Jeju-city, Jeju	"

No	Name of Aquafarm	Address	Aquaculture Products
KA-138	Hansong Fisheries Associated Corporation	42-2, Yeongpung-ri, Gunoe-myeon, Wando-gun, Jeonnam	"
KA-139	Dae Seung Soo San	3884, Mureung-ri Daejeong-eup Seogwipo-city, Jeju	"
KA-140	Jang Won Soo San	1553, Yeongrak-ri Daejeong-eup Seogwipo-city, Jeju	"
KA-141	SHANGHAI Co.,Ltd.	1565-3, Yeongrak-ri Daejeong-eup Seogwipo-city, Jeju	"
KA-142	Dae Bu Soo San	3868-1, Mureung-ri Daejeong-eup Seogwipo-city, Jeju	"
KA-143	DONG GANG CULTURE	3341, Sinchon-ri, Jocheon-eup, Jeju-city, Jeju	"
KA-144	HEAYANG SUSAN	7, Sinheung-ri, Jocheon-eup, Jeju-city, Jeju	"
KA-145	DONGDUCK FISHERIES UNION CORPORATION	753, Geumdeung-ri, Hangeong-myeon, Jeju-city, Jeju	"
KA-146	SUNJIN SUSAN	391, Bukchon-ri, Jocheon-eup, Jeju-city, Jeju	"
KA-147	DAEPOONG SUSAN FISHERIES UNION CORPORATION	742-8, Woljeong-ri, Gujwa-eup, Jeju-city, Jeju	"
KA-148	JAEYOUNG SUSAN	1669, Handong-ri, Gujwa-eup, Jeju-city, Jeju	"
KA-149	KANG HYUN SUSAN	96-1, Sinheung-ri, Namwon-eup, Seogwipo-city, Jeju	"
KA-150	JIWON SUSAN	1306, Pyoseon-ri, Pyoseon-myeon, Seogwipo-city, Jeju	"
KA-151	NARIMSUSAN II	187, Sehwa-ri, Pyoseon-myeon, Seogwipo-city, Jeju	"
KA-152	NARIM FISHERIES UNION CORPORATION	188, Sehwa-ri, Pyoseon-myeon, Seogwipo-city, Jeju	"
KA-153	HWANAM SUSAN	592-1, Yeongrak-ri, Daejeong-eup, Seogwipo-city, Jeju	"
KA-154	SINNARA SUSAN	1643, Handong-ri, Gujwa-eup, Jeju-city, Jeju	"
KA-155	YOUNG LIM SUSAN	1604, Yeongrak-ri, Daejeong-eup, Seogwipo-city, Jeju	"
KA-156	WOO SUNG SUSAN	689-3, Onpyeong-ri, Seongsan-eup, Seogwipo-city, Jeju	"
KA-157	DAE RIM FISHERIES Co.	536-1, Yulrim-ri, Dolsan-eup, Yeosu-city, Jeonnam	"
KA-158	Daesang Aquaculture Co.	652-239, Sinon-ri, Nam-myeon, Taaan-gun, Chungnam	"
KA-159	SEO YEONG CHI	Seodo-ri, Samsan-myeon, Yeosu-city, Jeonnam	"
KA-160	Gahak Fishing Village Association	Gahak-ri Soan-myeon, Wando-gun, Jeonnam	"
KA-161	Gahak Fishing Village Association	Gahak-ri Soan-myeon, Wando-gun, Jeonnam	"
KA-162	JINYANG SUSAN	Ocheon-branch line, Ocheon-dong, Yeosu-si, Jeollanam-do	"
KA-163	DAEGEN SUSAN	Mosakum-branch line, Ocheon-dong, Yeosu-si, Jeollanam-do	"
KA-164	FISHERIES CHEONGSOL	#429 Songjeong-ri, Hyeongyeong-myeon Muan-gun, Jeollanam-do	"
KA-165	Haegung yeongeojohapbeopin	Sindongjiseon, Dunjeon-ri, Gunnae-myeon Jindo-gun, Jeollanam-do	"
KA-166	Mira Fishing Village Cooperatives	340, Mira-ri, Nohwa-eup, Wando-gun, Jeollanam-do, Republic of Korea	"
KA-167	MI SAN(JINHAEE YANGSIK NO. 52)	SOKURISEOM JISEON, JINHAEGU, CHANGWONSI, GYEONGSANGNAM-DO	"
KA-168	Mangnamri Fishing Village Cooperatives	82, Mangnam-ri, Wando-eup, Wando-gun, Jeollanam-do	"
KA-169	JINHAEE YANGSIK NO. 55	BUDORI JISEON, JINHAEGU, CHANGWONSI, GYEONGSANGNAM-DO	"
KA-170	TONGYEONG YANGSIK NO. 996	Jiseon, Yeomho-ri Hansan-myeon, Tongyeong-si, Gyeongangnam-do	"
KA-171	TONGYEONG YANGSIK NO. 667	Jiseon, Donji-ri, Saryang-myeon, Tongyeong-si, Gyeongangnam-do	"

No	Name of Aquafarm	Address	Aquaculture Products
KA-172	KOREA FISHERIES CO.	Udu-ri-jisun, Dolsan-eup, Yeosu-si, Jeollanam-do	"
KA-173	KOREA FISHERIES CO.	Geumbong-ri-jisun, Dolsan-eup, Yeosu-si, Jeollanam-do	"
KA-174	JINHAЕ YANGSIK NO. 53	Jiseon, Haengam-Ri, Jinhae-Gu, Changwon-Si, Gyeongsangnam-Do, Korea	"
KA-175	GEOJE YANGSIK NO. 526	Jiseon, Changho-Ri, Sadeung-Myeon, Geoje-Si, Gyeongsangnam-Do, Korea	"
KA-176	TAE YOUNG Fishery Co.	Jiseon, Jangsa-Dong Sokcho-city Gangwon-do, Korea	"
KA-177	BOORYONG SOOSAN	5363-55, Iljudong-ro, Seongsan-eup, Seogwipo-si, Jeju-do	"
KA-178	CHUNGHO FISHERIES	#192, Sincheon-ri, Seongsan-eup, Seogwipo-si, Jeju-do	"
KA-179	JEJU AQUAFARM	#35, Sinpung-ri, Seongsan-eup, Seogwipo-si, Jeju-do	"
KA-180	DONGHAE SUSAN	#405, Sincheon-ri, Seongsan-eup, Seogwipo-si, Jeju-do	"
KA-181	YOUNGJIN ASSOCIATION	#214, Sincheon-ri, Seongsan-eup, Seogwipo-si, Jeju-do	"
KA-182	ILSIN	#8, Taeheung-ri, Namwon-eup, Seogwipo-si, Jeju-do	"
KA-183	HALLA SUSAN	#405-1, Bukchon-ri, Jocheon-eup, Jeju-si, Jeju-do	"
KA-184	TONGYEONG YANGSIK NO. 1110	Jiseon, Minam - ri, Sanyang-eup, Tongyeong-si, Gyeongsangnam-do	"
KA-185	TONGYEONG YANGSIK NO. 995	Jiseon, Jeorim - ri, Sanyang-eup, Tongyeong-si, Gyeongsangnam-do	"
KA-186	TONGYEONG YANGSIK NO. 885	Jiseon, Inpyeong-dong, Tongyeong-si, Gyeongsangnam-do	"
KA-187	ONNURI SUSAN	#743, Geumdeung-ri, Hangeyong-myeon, Jeju-si, Jeju-do	"
KA-188	Fishery Co.,Ltd Corporate Jindo	Jeondu-jiseon, Jeondu-ri, Jindo-eup, Jindo-gun, Jeollanam-do, Korea	"
KA-189	Seaeaver Co., Ltd.	Sinhapri-jiseon, Sinhap-Ri, Seo-Myeon, SeoCheon-Gun, ChungCheongNam-Do	"

※ 자료원 : 국가질검총국 동식물검역사(2012.11.30 갱신)

4. 진경과일검험검역감독관리방법(총국 령 68호, 2005.07.05)

- 본 방법은 진경 신선과일(이하 과일)의 검험검역 및 감독관리에 적용(2조)
- 진경과일무역계약 혹은 협의 체결 전 국가질검총국에 진경과일검역심사비준 신청, <진경동식물검역허가증>(이하 검역허가증) 취득(5조)
- 화주 혹은 대리인은 검역 신고 시 <검역허가증> 정보와 수출국가 지역 관방에서 발급한 식물검역증서 정보를 제출

■ 진경 과일 검역규정(8조) ■

1. 검험검역관련 법률, 법규, 표준 및 관련규정
2. 중국정부 수출국가 혹은 지역정부간 체결한 양자협정
3. 국가질검총국과 수출국가 혹은 지역 검험검역부서간 체결한 의정서
4. <검역허가증> 요구사항

■ 진경 과일 검험검역요구(9조) ■

1. 검역허가증에 수록하지 않은 기타 과일 혼입 금지
2. 포장박스에 증문 혹은 영문으로 과일명, 산지, 포장업체명 혹은 업체코드 명시
3. 진경을 금지한 검역성 유해생물, 토양 및 나무가지, 잎 등 식물 잔해
4. 유독유해물질은 중국의 관련 안전위생표준 규정의 제한량 이내로 검출
5. 수출국가 혹은 지역과 중국이 협정 혹은 의정서 체결 경우 의정서 관련요구에 부합

■ 진경 과일 현장검역(10조) ■

1. 화물과 증서 일치여부 검사
2. 본 방법의 7조항과 9조항의 요구에 따라 식물검역증서와 포장박스의 관련정보 및 관방 검역 표기 대조 확인
3. 벌레, 병증상, 가지와 잎, 토양과 병충 위해증상 검사; 역정 현상 발견시 실험실검역감정 실시
4. 관련규정과 표준에 따라 샘플 추출 실험실 검측

- 현장 혹은 실험실검역에서 발견된 벌레, 병균, 잡초 등 유해생물에 대하여 감정 진행, 현장에서 추출한 샘플에 대하여 유독유해물질 검측 진행 검험검역결과서 발급(11조)

■ 진경 과일 검역결과 및 처리방법(12조) ■

1. 검역합격시 입경화물검험검역증서 발급, 통과허가
2. 검역성 유해생물 혹은 기타 검역가치가 있는 유해생물 발견시 위해제거 처리, 검험검역처리 통지서 발급, 위해제거 처리후 합격시 통과허가

3. 9조항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거나 화물과 증서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 및 검험검역에서 불합격인 동시에 유효적인 위해제거처리방법이 없는 경우 검험검역처리통지서를 발급하고 검험검역기구의 감독하에 반품 혹은 폐기처리

- 이하 상황발생시 사정에 따라 관련 품종 과일의 수입을 잠시 정지 혹은 관련 과일산지, 과수원, 포장공장으로부터의 수입을 잠시 정지한다(13조)

Ⅱ 진경 과일 수입잠정조치 상황(13조) Ⅱ

1. 진경 과일 과수원, 가공공장지역 혹은 주변지역에 엄중한 식물역정 발생시
2. 검험검역에서 중국이 관심을 가지는 진경 검역성 유해생물 발견시
3. 검험검역에서 유독유해물질 함량이 중국 관련 안전위생표준규정 초과시
4. 중국의 검험검역법률, 법규 및 양자협정 혹은 관련 국제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 검험검역을 받지 않은 진경과일은 검험검역기구가 지정한 장소에 보관하며 이전, 판매, 사용을 금지

5. 진출경유전자변형제품검험검역관리방법(중국 령 62호, 2004.05.24)

- 본 방법은 모든 진출경하는 유전자변형제품의 검험검역에 적용(2조)
- 본 방법의 유전자변형제품은 <농업유전자변형생물안전관리조례>가 규정한 농업 유전자변형생물 및 기타 법률법규가 규정한 유전자변형생물과 제품을 말함(3조)
- 국가질검총국은 진경 유전자변형동식물 및 제품, 미생물 및 제품과 식품에 대하여 신고제도를 실시(6조)
- 화주 혹은 대리인은 진경 검역신고에서 <입경화물통관단> 화물명칭에 유전자변형제품여부를 명시. 유전자변형제품으로 신고한 제품은 규정에 따라 검역관련 증서를 제공하는 동시에 주관부서(농업부)에서 발급한 <농업유전자변형생물안전증서>(이하 비준문서)와 <농업유전자변형생물표기심사인가비준문서>를 제공(7조)

- 표기관리를 실시하는 진경 유전자변형제품은 표기를 확인하여 농업유전자변형 생물표기심사인가문서와 부합되어야 진경을 허가(8조)
- 표기관리를 실시하는 농업유전자변형생물목록(농업부 제정)에 수록된 진경 유전자변형제품이 유전자변형제품으로 신고시 유전자변형항목의 부합성 검측을 실시하고 비유전자변형제품으로 신고시 유전자항목의 추출검측을 진행; 목록 외 진경 동식물 및 제품, 미생물 및 제품과 식품은 상황에 따라 유전자항목검측을 실시(9조)

■ 표기관리 농업유전자변형생물목록 ■

1. 대두종자, 대두, 대두분, 대두유, 대두박
2. 옥수수종자, 옥수수, 옥수수유, 옥수수분(HS 11022000, 11031300, 11042300)
3. 유채종자, 유채씨, 유채씨유, 유채씨박
4. 면화종자
5. 토마토종자, 신선 토마토, 케첩

※ 자료원 : 농업부 령 38호(2004.07.01수정발표)

- 유전자변형검측에서 합격시 진경을 허가하고 이하 상황에서는 화주 및 대리인에 통지하여 반품 혹은 폐기처리(10조)

■ 반품 및 폐기처리상황(10조) ■

1. 유전자변형제품으로 신고했으나 검사결과 유전자변형성분이 비준문서와 부합되지 않은 경우
2. 비유전자변형제품으로 신고했으나 검사결과 유전자변형성분이 나온 경우

II. 기타 행정법규 및 주요공고

1. 수입식품경외생산기업등기규정(총국 령 145호, 2012.05.01)

□ 총칙

- 본 규정은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경외 생산, 가공, 저장기업(이하 수입식품 경외생산기업)의 등기 및 감독관리에 적용(2조)
-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이하 국가질검총국)은 통일적으로 수입식품경외생산기업의 등록사업을 관리하며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이하 국가인감위)에서 수입식품경외생산기업의 등기 및 감독관리사업을 조직 실시(3조)
- <수입식품경외생산기업등기실시목록>(이하 목록)은 국가인감위에서 제정, 조정하며 국가질검총국에서 발표, <목록>내 부동한 제품유형의 등록 평가심사절차와 기술요구는 국가인감위에서 별도로 제정, 발표(4조)

■ 수입식품 경외 생산기업 등기실시 목록 ■

No	명칭	정의	비고
1	육류	동물 도살체 식용부분	동체, 장기, 부산물 및 이를 원료로한 제품, 통조림 불포함
2	수산물	식용 수생 동물, 식물 및 제품	수모류, 연체류, 각갑류, 두삭류, 어류, 양서류, 파충류, 수생 포유류동물 등 기타수생동물과 조류 등 해양식물 및 제품을 말하며 활 수생동물과 수생동식물 번식재료는 불포함

※ 자료원 : 국가질검총국 2012년 73호 공고

- <목록>내 식품의 경외생산기업은 등기 후 제품 수입 가능(5조)

□ 등기조건 및 절차

■ 등기조건(6조) ■

1. 기업 소재국(지역)의 등기 관련 수의서비스체계, 식물서비스체계, 공공위생관리체계 등은 평가에서 합격되어야 한다.
2. 중국으로 수출하는 식품에 사용하는 동식물 원료의 산지는 비 전염병유행지역이어야 하며 수출하는 식품에 동식물 전염병 전파 위험이 있는 경우 소재국(지역) 주관부서는 위험제거 혹은 공제가능 증명문서와 관련 과학적 근거자료를 제공해야한다.
3. 기업은 소재국(지역) 관련 주관부서의 허가를 받고 유효적인 감독관리에 있어야 하며 위생 조건은 중국법률법규와 표준규범의 관련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 수입식품경외생산기업 등기 신청은 소재국가(지역) 주관부서를 통하여 혹은 기타규정 방식에 따라 국가인감위에 추천하며 본 규정 6조항 규정조건에 부합되는 증명문서 및 이하 자료를 제출(중문 혹은 영문)

■ 제출자료(7조) ■

1. 소재국가(지역)의 관련 동식물역정, 수의위생, 공공위생, 식물보호, 농약수약잔류, 식품생산 기업등록관리와 위생요구 등의 법률법규, 소재국가(지역) 주관부서의 조직구조와 인원상황 및 법률법규집행 등의 서면자료
2. 등기 신청한 경외식품생산기업리스트
3. 소재국가(지역) 주관부서에서 추천한 기업의 검역, 위생공제 실제상황에 대한 평가 답안지
4. 소재국가(지역) 주관부서에서 추천한 기업이 중국법률, 법규요구에 부합된다는 성명
5. 기업등록신청서, 필요시 공장구역, 작업장, 냉동창고 평면도 및 공예공정도 등

- 국가인감위는 관련 전문가를 조직하거나 지정기구를 통하여 경외식품생산기업 소재국가(지역) 주관부서를 통하거나 기타규정방식으로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심사 진행, 업무수요에 따라 2명이상의 평가심사단을 조직하여 현장에 대한 평가심사를 진행할 수 있음(8조)
- 평가심사단은 <목록>의 부동한 제품유형에 대한 평가심사절차와 요구에 따라 평가심사를 완수해야하며 국가인감위에 평가심사보고를 제출. 국가인감위는 업무절차에 따라 평가심사보고에 대하여 심사하여 등기여부를 결정. 등기요구

에 부합되면 등록과 동시에 서면으로 경외식품생산기업 소재국가(지역)의 주관부서에 통지, 등기불가 시 역시 서면으로 경외식품생산기업 소재국가(지역) 주관부서에 통지 및 이유 설명(9조)

- 등기유효기간은 4년으로 경외식품생산기업의 수요에 따라 등기연장 시 등기유효기간 만료 1년 전에 소재국가(지역) 주관부서를 통하거나 기타규정의 방식으로 국가인감위에 등기연장신청 제출, 기한 내에 등기연장신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국가인감위는 등기를 말소하고 공고(10조)
- 등기한 경외식품생산기업의 등기사항 변경시 소재국가(지역) 주관부서 혹은 기타규정의 방식으로 신속히 국가인감위에 통보해야하며 국가인감위는 구체적인 변경사항에 따라 처리하고 국가질검총국에 보고(11조)
- 등기한 경외식품생산기업은 중국경내로 수출하는 식품 외포장에 사실대로 등기번호를 표기해야하며 등기번호 도용 및 양도 금지(12조)

□ 등기관리

- 국가인감위는 <목록>내 식품의 경외생산기업에 대하여 감독관리를 진행하며 필요시 관련 전문가를 조직하거나 지정기구를 통해 재검사 진행(13조)
- 재검사를 통하여 등기한 경외식품생산기업이 등기요구에 계속 부합되지 않은 경우 국가인감위는 등기자격을 잠시 정지하고 국가질검총국에 보고하여 관련제품의 수입을 잠시 정지시키는 동시에 소재국(지역) 주관부서에 통보. 경외식품생산기업 소재국(지역) 주관부서는 정리 개혁이 필요한 기업을 감독하여 규정 기한 내에 정리개혁을 완수하여 국가인감위에 서면보고와 함께 중국법률법규요구에 부합된다는 서면성명을 제출, 국가인감위 심사합격 후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할 수 있음(14조)
- 등기한 경외식품생산기업이 이하 상황 발생 시 국가인감위는 등기를 말소하고 국가질검총국에 보고하는 동시에 소재국(지역) 주관부서에 통보

Ⅱ 등기말소 상황(15조) Ⅱ

1. 경외식품생산기업 원인으로 관련 수입식품에 중대 식품안전사고를 조성 시킨 경우
2. 제품의 진경검험검역에서 불합격 상황이 발생하여 경위가 엄중한 경우
3. 검사에서 식품안전위생관리에 중대한 문제 발견, 제품안전위생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
4. 정리개혁 후 여전히 등록요구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5. 허위자료를 제공하거나 관련 상황을 속인 경우
6. 등기번호를 임대, 대여, 양도, 전매 혹은 수정한 경우

- <목록>내 수입식품 입경시 출입경검험검역기구는 등기한 기업에서 생산여부, 등기번호의 진실 및 준확여부를 검사하고 법정요구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험법> 등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처리(16조)
- 국가에서 등기관리를 실시하는 식품의 등기하지 않은 경외식품생산기업의 제품을 수입 시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험법실시조례> 제52조에 따라 출입경검험검역기구에서 수입정지를 명하며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상품화물가치금액의 10%이상 50%이하의 벌금형 부과(17조)

Ⅲ. 검험검역 관리

1. 검험검역 형식 및 방법

□ 법정 검험검역

- 법정 검험검역은 “수출입상품검험법”과 그 실시조례, “출입국동식품검험검역법”과 그 실시조례, “국경위생검역법”과 그 실시세칙, “식품안전법”과 그 실시조례, 기타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출입국검험검역기구에서 출입국 인원, 화물, 운송공구, 컨테이너 및 기타 법정 검험검역물(통칭: 법정검험검역대상)에 대해 검험, 검역, 감정 등 검험검역업무를 진행하는 것을 일컫음
- 수출입상품의 법정 검험검역은 주로 “출입국검험검역기구에서 검험검역을 실시하는 출입국상품목록”(약칭: 법정검험검역목록)에서 기재되어 있음

구분	검험검역 범위
1	법정으로 검험검역을 진행해야 하는 수출입상품, 출입국 동식물 및 그 제품과 기타 검역물
2	동식물 및 그 제품과 기타 검역물을 적재하는 적재용기와 포장물
3	동식물 전염병 지역으로부터의 운송공구, 출입국 인원, 교통공구, 운송설비 및 검역 전염병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수하물, 화물, 우편물 등

□ 검험검역 형식

- 수출입식품은 법정 검험검역 상품으로서 주로 자체 검험을 위주로 하며 기타 수출입상품의 공동 검험, 위탁 검험과 인가 검험형식을 참조할 수 있음

☞ 자체검험

- 자체검험은 출입국검험검역기관이 자체 기술력(검사설비와 검사인원을 포함)을 이용하여 자체로 샘플 추출, 샘플 제작과 전체 항목의 검험을 진행하는 방식임
- 위생, 환경보호 등 사회 공익의 상품 및 대외무역계약이 출입국검험검역기관의 증서로 가격을 계산 및 결산할 것을 요구하는 상품은 일반적으로 반드시 자체 검험을 채택

☞ 공동검험

- 공동검험은 출입국검험검역기관의 조직에 의하여 출입국검험검역기관과 수출 생산기업, 수입 화물 인수부서 또는 관련 업체가 규정한 표준과 방법에 의하여 공동으로 수출입상품의 샘플 추출과 검사를 진행하는 방식임
- 공동 검험은 수출입상품 검험에서 일반적으로 채택하는 방식임

☞ 위탁검험

- 위탁검험은 출입국검험검역기관이 수출입상품 검험항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검험자격이 있는 국내외 기타 검험기관에 위탁하여 진행하며 또한 그 검험결과에 의해 통관 또는 상품검사증명을 발급
- 출입국검험검역기관이 어떤 상품 또는 검험항목에 대해 검사설비 또는 검사방법이 결핍할 경우, 상품검사기관의 인증을 받은 생산, 과학연구, 교육기관(업

체)의 시험실 또는 인증을 받았거나 계약을 체결한 국외 검험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 인가검험

- 인가검험은 출입국검험검역기관이 일부 수출생산기업 또는 수입 화물 인수기관의 검험기관 또는 검험인원에 대해 인가하며 그 검험결과에 대한 샘플 조사를 한 기초에서 인가를 받은 검험기관 또는 검험인원의 검험결과에 의하여 통관 또는 상품검사증서를 발급하는 방식임

□ 검험검역 방법

- 수출입식품의 검험검역방법은 ① 각종 방법으로 식품의 영양, 화학성분과 특성 등 각종 품질특징 및 안전, 위생요구와 조건 등을 검사하는 방법, ② 각종 방법으로 저장운송, 하역과정에서의 상황 및 포장, 운송공구의 적재, 위생조건 등을 검사하는 방법으로 분류
 - 첫 번째 방법은 대부분 샘플 추출 및 실험실에서 진행하며 두 번째 방법은 대부분 현장에서 진행하고 일부 실험실의 검험으로 진행
- 수출입식품의 검험검역 방법은 감각기관 검험방법, 물리화학 분석, 위생학 검사 등이 있으며, 주요 분석방법은 중량 분석법, 적정 분석법, 색층 분석법, 분광광도 분석법, 미생물법 등임
 - ① 감각기관 검험방법
 - 감각기관 검험법은 검험검역인원이 본인의 감각기관(눈, 귀, 코, 혀, 손)의 시각, 미각, 후각, 촉각을 이용하여 객관적으로 식품의 형태, 색깔, 맛, 냄새, 정도에 대해 위생 평가임
 - ② 중량 분석법
 - 중량 분석법은 검사할 성분을 일정한 방법으로 샘플에서 분리한 다음에 검사할 조(組)의 중량 또는 샘플에서 기타 성분의 중량에 의하여 검사할 조가 샘플에서의 함량을 계산하며 중량 분석법은 기화(氣化)법, 추출법, 침전법 등임
 - ③ 적정 분석법

- 적정 분석법은 일종 이미 정확한 농도를 알고 있는 용액(표준 용액)을 샘플 용액에 떨어뜨려 검사할 물질과 충분히 반응을 일으키며(즉, 표준 용액의 당량수와 검사할 물질의 당량수가 같음), 표준 용액의 농도와 소모한 체적에 의하여 검사할 물질의 함량을 계산하며, 적정 분석법은 산·알칼리 적정법, 산화환원 적정법, 침전 적정법, 화합 적정법 등임

④ 크로마토그래프법

- 색층 분석법은 식품 위생검험에서 많이 사용되는 물리화학 분리분석법으로 그 원리는 혼합물에서 각 성분의 물리화학 성질의 차이를 이용하여 각 성분이 서로 다른 2개 상(相)(고체 상(相)과 유동 상(相))에 분포되게 하여 각 성분이 서로 다른 속도로 이동하여 분리하며, 색층 분석법, 종이 층 분석법, 얇은 층 분석법 등이 있음

⑤ 계기 분석법

- 계기 분석법은 주로 미량, 초미량 성분의 검사에 사용되며 속도가 빠르고 효율과 민감도가 아주 높은 선진적 분석 검험검역방법이며, 광학분석법(분광광도분석법, 원자흡수법 등), 전기화학 분석법(전위법 등), 크로마토그래프법(가스크로마토그래프법, 액상크로마토그래프법 등)과 기타 분석법(질량스펙트럼법 등) 등이 있음

⑥ 생물학 검험법

- 생물학 검험법은 미생물학검험방법(현미경관찰법, 번식법, 순종분석법, 형태관찰법), 생물학검험법(조직학분석법, 생리시험법)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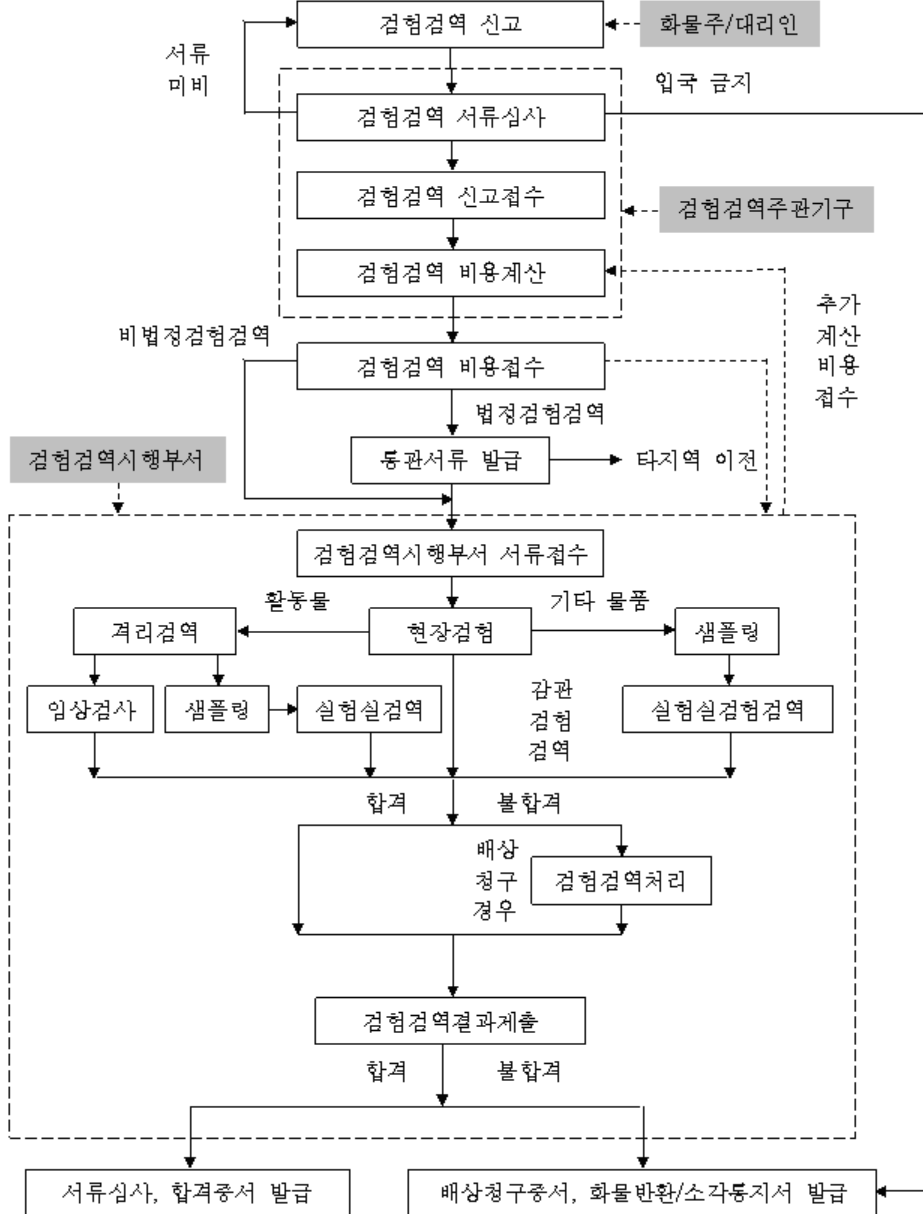
⑦ 유해·유독물질 검험법

- 유해·유독물질 검험법은 식품의 유해·유독물질(농약, 짐승 약, 유독 중금속, 유독 화합물 등 잔류량)에 대해 검사하며 유전자 변형제품에 대해 검험하는 방법이며, 가스 또는 액상 크로마토그래프법, PCR검사기술 등을 채택

2. 검험검역 절차 및 제도

□ 수입화물의 검험검역

■ 수입화물 검험검역절차



□ 수출입식품의 검험검역

1) 검험검역 범위

구 분	검험검역 대상
수입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 식품첨가제 - 식품용기 - 포장재료 - 식품용공구 및 설비 - 기타 식품과 관련된 물품
수출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식품 - 식품첨가제

2) 제출서류

구 분	검험검역 대상
수입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국화물검험검역신고서” - 수출입계약서 - 상업송장 - 포장명세서 - 선하증권 - 원산지증명서 - 수출국가에서 사용한 농약, 화학비료, 살초제, 훈증제 및 생산식품의 원료, 첨가제, 가공방법 등 관련 서류와 표준
수출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국화물검험검역신고서” - 수출입계약서 또는 판매확인서 - 상업송장 - 포장명세서 - 선하증권 - 생산업체(가공공장, 냉장창고, 창고 등)의 위생등록 또는 등기번호

3) 검험검역 신고기한

구 분	신고기한
미생물, 인체조직, 생물제품, 혈액 및 그 제품, 종자가축과 가금 및 그 정액, 배태, 수정란을 수입할 경우	입국 30일 전
기타 동물을 수입할 경우	입국 15일 전
식물, 종자, 종묘 및 기타 번식재료를 수입할 경우	입국 7일 전
입국화물의 대외 배상청구에 증명을 제출해야 할 경우	배상청구 유효기간의 최소 20일 전

4) 검험검역 신고장소

- 비준, 허가증 등 관련 증서에 검험검역 장소를 규정한 경우, 규정한 장소에서 검험검역을 신고
- 대중상품, 부식변질하기 쉬운 상품, 폐기물품 및 하선할 때에 포장파손 또는 수량부족이 발견된 상품은 반드시 하선항구 검험검역기구에서 검험검역을 신고
- 설치시운전과 연관되어 검험을 진행해야 하는 플랜트 설비, 기계전기계측기제품 및 항구에서 개봉한 후 포장을 회복하기 어려운 상품은 반드시 수하인 소재지 검험검역기구에 신고
- 기타 입국화물은 반드시 입국 전 또는 입국 시에 입국지역 검험검역기구에 신고
- 직통식 통관조건에 부합되는 업체는 입국지의 선택에 따라 항구 검험검역기구 또는 목적지 검험검역기구에 신고할 수 있음

5) 검험검역비용

① 계산근거

- 출입국검험검역비용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재정부에서 2003년 12월 31일에 발표하고 2004년 1월 1일부터 정식 시행한 “출입국검험검역요금방법”을 계산근거로 함

② 비 용

- 출입국검험검역비용은 출입국화물의 검험검역비, 등기, 인증인가, 증서발급, 출입국 동식물의 실험실검역 항목비, 감정업무비, 검역처리비 등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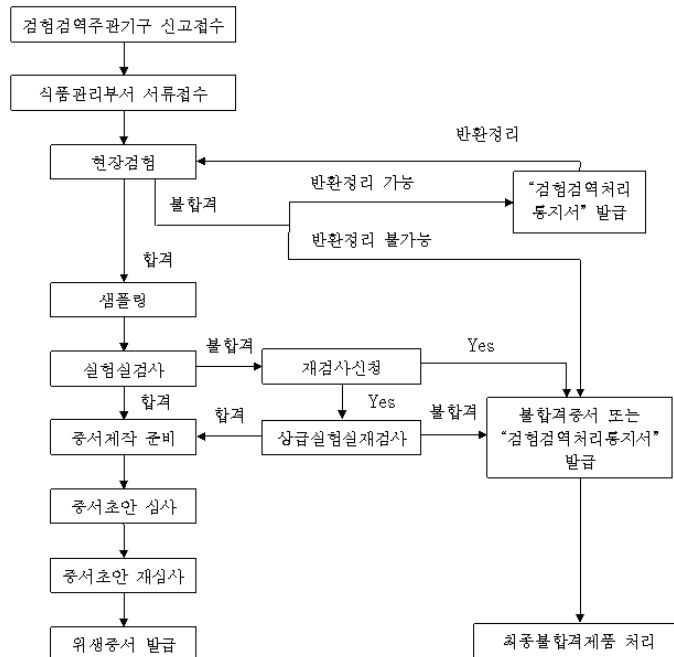
③ 계산기준

- 기본상 화물가치를 기준으로 하며 요금비율 또는 중량, 수량, 검험검역 또는 감정항목을 기준으로 정액 계산

6) 검험검역제도 위반시 제재조치

구분	관련규정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식품을 수입할 경우	“식품안전법” 제85조, 제89조	- 불법소득, 불법 생산경영의 식품과 불법 생산경영의 공구, 설비, 원료 등 물품을 몰수
식품안전 국가표준이 없는 식품을 수입 또는 식품첨가제 신제품, 식품 관련제품 신제품을 최초로 수입할 때에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않을 경우		- 불법 생산한 식품의 화물가치가 1만 위안 미만일 경우에 2,000위안~5만 위안 벌금 - 화물가치가 1만 위안 이상일 경우에 화물가치의 5~10배 벌금 - 엄중할 경우에 허가증을 취소
위생등기등록을 취득하지 못한 생산업체가 생산하는 식품을 수입할 경우	“상품검험법실시조례”	- 수입증지를 명령 - 불법소득을 몰수 - 상품가치의 10~50% 벌금
수입업체가 식품수입과 판매기록제도를 수립하지 않고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식품안전법” 제87조, 제89조	- 시정을 명령 및 경고 - 거절할 경우, 2천~2만 위안 벌금 - 엄중할 경우, 생산증지를 명령, 허가증 취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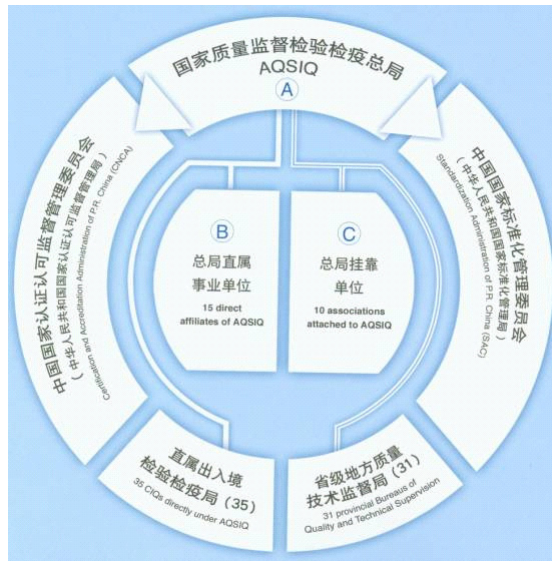
■ 수입식품 검험검역절차 ■



3. 검험검역 관련기관

1)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은 전국 품질, 계량, 출입국 상품검험, 출입국 위생 검역, 수출입 동·식물 검역과 인증 인가, 표준화 등 업무를 주관하며 행정적으로 법률을 집행하는 공무원 직속 기관임
-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은 사무청, 법규사, 품질관리사, 계량사, 통관업무사, 위생검역감독관리사, 동식물검역감독관리사, 검험감독관리사, 수출입식품안전국, 특종설비안전감찰국, 제품품질감독사, 식품생산감독관리사, 법률집행감독검사사, 국제합작사(WTO사무실), 과학기술사, 인사사, 계획재무사, 감찰내부감사사, 기관당위원회와 퇴직간부국 등 20개 사(청, 국)로 이루어짐



2)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와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

-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은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국)과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국가표준화관리국)에 대한 관리를 진행
-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는 국무원의 수권을 받아 행정관리 직책을 이행하

고 통일적으로 전국 인증인가업무를 관리, 감독, 종합 협조하는 주관부서임

-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는 국무원의 수권을 받아 행정관리 직책을 이행하고 통일적으로 전국 표준화업무를 관리하는 주관부서임

3)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직속 사업기관

-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은 기관서비스센터, 정보센터, 국가검험검역표준과 기술법규 연구센터, 중국섬유검험국, 중국검험검역과학연구원, 중국표준화연구원, 중국계량과학연구원, 중국품질인증센터, 중국합격평가국가인가센터, 중국특종설비검사연구센터, 인력자원개발교육센터, 중국품질신문사, 중국국문시보신문사, 중국표준출판사와 중국계량출판사 등 15개 직속 사업기관을 설치하여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의 정책결정과 실시에 있어 기술 등을 지원 제공

4)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소속 기관

-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은 중국출입국검험검역협회, 중국국제여행위생보건협회, 중국품질검험협회, 중국계량협회, 중국인증인가협회, 중국표준화협회, 중국계량측정학회, 중국위조방지협회, 중국설비감리협회, 중국품질관리행추진회 등 10개 소속기관을 설치

5)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직속 출입국관리국

-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은 31개 성(자치구, 직할시)에 35개 직속 출입국검험검역국을 설립하고 항구와 화물 집산지에 약 300개 분지국과 200개 사무소를 설치하여 수직식 관리를 진행

6) 성급 기술감독국

-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은 품질기술감독관리 직책을 이행하기 위해 31개 성(자치구, 직할시) 품질기술감독국을 설립하고 약 2,800개 행정부서를 설치

7) 국가수출입식품안전국

- 2001년 수출입 식품과 화장품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은 수출입식품안전국을 설립하여 수출입 식품, 화장품 안전의 관리업무를 책임짐

자료출처 및 참고자료

I. 웹사이트

- 중앙인민정부 : <http://www.gov.cn>
- 국가질검총국 : <http://www.aqsiq.gov.cn>
- 세관총서 : <http://www.customs.gov.cn>
-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 <http://www.cnca.gov.cn>
- 농업부 : <http://www.moa.gov.cn>

II. 관련법규

구분	주요법규
법률 (전인대)	- 수출입상품검험법 - 진출경동식물검역법
행정법규 (국무원)	- 수출입상품검험법실시조례 - 진출경동식물검역법실시조례
부서규장제도 (중앙부서)	- 수출입식품경외생산기업등록관리방법 - 수출입식품안전관리방법 - 수출입육류제품검험검역관리방법 - 수출입수산물검험검역관리방법 - 진경과일검험검역감독관리방법 - 진출경유전자변형제품검험검역관리방법

라벨링제도

제1절 라벨링제도 일반

1. 식품라벨관리규정(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령 102호, 2008.09.01)

□ 총칙

- 본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생산, 판매하는 식품의 라벨표기와 관리에 적용(2조)
- 본 규정의 식품라벨은 식품 혹은 포장에 부착, 인쇄, 표기하여 식품의 명칭, 품질등급, 중량, 식용 혹은 사용방법, 생산자 혹은 판매자 등 관련 정보를 나타내는 문자, 부호, 수자, 도안 및 기타 설명의 총칭(3조)
- 국가질검총국은 직책범위내에서 전국 식품라벨의 감독관리사업을 책임조직하며 현급이상 지방질량기술감독부문에서 관할지역 식품라벨 감독관리사업을 책임(4조)

□ 식품라벨의 표기내용

- 식품명칭 : 식품의 진실한 속성을 표명하는 식품명칭을 표기(6조)

Ⅰ 식품명칭 표기요구 Ⅰ

1. 국가표준, 산업표준이 식품명칭에 규정이 있는 경우 규정명칭을 사용
2. 규정이 없는 경우 소비자의 오해와 혼동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상용명칭 혹은 속명을 사용
3. 창신, 특이, 음역, 메이커, 지역속어, 상표 등 오해가 쉬운 식품명칭을 사용시 식품명칭 옆에 동일 글자크기로 1~2항이 규정한 명칭 혹은 분류명칭을 표시
4. 2종 혹은 이상 식품을 혼합하여 외관이 균일하여 호상 분리가 어려운 식품은 식품의 혼합속성과 분류명칭을 반영하는 명칭을 사용
5. 동, 식물을 원료로 특정 가공공정으로 제조하여 기타 생물의 개체, 기관, 조직 등 특성을 모방한 식품은 명칭 앞에 인조(人造), 모방(仿) 혹은 소(素) 등 문자를 붙여야하며 식품의 진실속성을 나타내는 분류명칭을 명시해야함

- 산지 : 식품 산지 표기(7조)
- 생산자&주소표기 : 법에 따라 등록, 등기한 품질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생산자 명칭과 주소를 표기(8조)

Ⅰ 생산자&주소 기타규정 Ⅰ

1. 독자 법률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본사 혹은 자회사는 각자 명칭과 주소로 표기
2. 독자 법률책임을 감당할 수 없는 지사 혹은 생산지지는 본사와 지사 혹은 생산기지명칭, 주소 혹은 본사 명칭과 주소로 표기
3. 위탁생산으로 판매를 담당하지 않는 경우 위탁기업의 명칭과 주소로 표기, 생산허가증관리를 하는 식품은 위탁기업에 관련 생산허가증이 있어야하며 양자명칭, 주소 혹은 위탁기업의 명칭과 주소로 표기
4. 분할포장(分装)식품은 분할포장업체의 명칭주소를 표기하고 분할포장(分装)문자 명시

- 생산일자&유통기한표기 : 생산일자와 유통기한은 선명하게 표기해야하며 특수저장조건 표기. 알콜함량 10%(포함)이상 음료주, 식초, 식염, 고체설탕은 유통기한 표기면제가능. 일자표기방법은 국가표준 규정 혹은 년, 월, 일로 표기(9조)
- 정량포장식품 내용량 표기 : 고체와 액체가 각각 포함된 식품은 내용량 외 고형물 함량 표기. 내용량은 식품명칭과 동일 포장면에 표기. 내용량은 <정량포장상품계량감독관리방법>규정에 따라 표기(10조)
- 배합원료 표기 : 배합원료는 생산가공시 사용량 순서에 따라 표기. 감미료, 방

부제, 착색제를 식품에 직접 사용시 식품첨가제항목에 명칭표기. 기타 식품첨가제 사용시 명칭과 종류 혹은 코드 표기(11조)

- 집행표준 표기 : 집행한 국가표준, 산업표준, 지방표준번호 혹은 등록된 기업표준번호 표기(12조)
- 식품집행표준에 식품의 품질등급, 가공공정 표기를 요구시 식품라벨에 표기(13조)
- 생산허가증관리 식품은 식품라벨에 식품생산허가증번호와 QS마크 표기(14조)
- 비 식용제품이 혼입되어 부주의로 인체상해를 조성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식품라벨에 경고표기와 함께 중문경고설명 표기(15조)

■ 중문설명을 표기해야하는 상황(16조) ■

1. 의학임상에서 특수사용자에서 쉽게 위해를 조성하는 것으로 증명된 경우
2. 이온화 방사선 혹은 이온화 에너지 처리를 한 경우
3. 유전자변형식품 혹은 법정유전자변형원료가 함유된 경우
4. 법률, 법규와 국가표준에 중문설명을 규정한 경우

- 명칭 혹은 설명에 <영양(营养)>, <강화(强化)> 표기시 국가표준의 관련규정에 따라 영양소와 칼로리를 표기(17조)

■ 식품라벨의 표기 금지사항(18조) ■

1. 질병예방, 치료작용 명시 혹은 암시
2. 비 보건식품이 보건작용 명시 혹은 암시
3. 사기 혹은 오도 방식으로 식품을 묘사 혹은 소개
4. 제품 설명서에 근거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5. 문자 혹은 도안이 민족습관을 존중하지 않거나 차별성 묘사
6. 국기, 국장 혹은 인민폐 사용
7. 기타법률, 법규와 표준이 표시를 금지하는 내용

■ 식품라벨의 표기 위법행위(19조) ■

1. 생산일자, 유통기한 위조 혹은 허위표시
2. 식품산지위조, 기타 생산자의 명칭, 주소 위조 혹은 사칭
3. 생산허가증 표기와 번호 위조, 사칭, 변조
4. 법률, 법규가 금지한 기타행위

□ 식품라벨의 표시형식

■ 식품라벨의 표기형식 ■

1. 식품라벨은 식품 혹은 포장과 일체로 분리되지 말아야함(20조)
2. 식품라벨은 최소 판매단위 식품 혹은 포장에 직접 표기(21조)
3. 한 개 판매단위 포장에 부동한 품종, 다양한 독립포장 식품이 포함된 경우 매개 독립포장의 식품라벨은 본 규정에 따라 표기(22조)
4. 식품라벨은 분명하고 선명해야함(23조)
5. 식품라벨은 규범화 중문 사용, 단 상표는 제외, 식품라벨은 중문과 외국문자 동시 사용 가능하며 외국문자는 중문과 대응관계를 이루고 크기는 ≤중문, 단 등록상표는 제외(24조)
6. 식품 혹은 포장 최대표면면적>20cm²인 경우 식품라벨 강제성 표기내용의 문자, 부호, 수자의 높이는 1.8mm보다 커야하며 최대표면면적<10cm²인 경우 식품라벨에 식품명칭, 생산자, 주소, 내용량, 생산일자와 유통기한만 표기할 수 있음, 단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표기내용은 규정에 따름(25조)

2. 수출입정량포장식품라벨검험감독관리규정(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2012년 27호 공고, 2012.06.01실시)

□ 총칙

- 본 규정은 수출입정량포장식품라벨(설명서 포함)의 검험과 감독관리업무에 적용(2조)
-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이하 질검총국)은 전국의 수출입정량포장식품라벨 검험감독관리업무를 주관. 국가질검총국이 각 지역에 설치한 출입경검험검역기구(이하 검험검역기구)는 관할지역 수출입정량포장식품라벨검험감독관리업무를 책임(4조)

□ 라벨검험

▮ 처음으로 수입하는 정량포장식품 제공자료(6조) ▮

1. 원본 라벨 샘플과 번역본
2. 정량포장식품의 중문라벨 샘플
3. 라벨에 표기한 수입상, 경소상 혹은 대리상의 공상영업집조 사본
4. 수입정량포장식품라벨에 내용을 강조, 예로 수상, 증서획득, 법정산지, 지리표기 혹은 기타 내용을 강조하거나 특수성분 함유를 강조한 경우 관련 증명자료를 제공하여야하며 영양성분 함량을 표기한 경우 부합성 증명자료를 제출
5. 첨부해야할 기타증서 혹은 증명문서

- 검험검역기구는 라벨에 대하여 격식, 지면검사를 진행하고 라벨의 표기내용의 부합여부 검측을 진행. 부합여부 검측은 수출입정량포장식품의 일상검험감독 업무와 결합하여 진행하며 단독으로 샘플을 채취하지 않음(7조)
- 처음으로 수입하는 정량포장식품의 중문라벨은 검사합격 후 검사를 시행한 검험검역기구에서 등록증빙을 발급(8조)

▮ 라벨 불합격 상황(9조) ▮

1. 수입정량포장식품이 중문라벨이 없는 경우
2. 수입정량포장식품 격식, 지면검사결과 중국의 법률, 행정법규, 규정 및 식품안전표준요구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3. 부합여부검사결과 라벨표기내용이 부합되지 않은 경우

- 수입정량포장식품라벨검사에서 불합격된 경우 검험검역기구는 1회적으로 수입상 혹은 대리인에게 부합되지 않은 항목의 전부내용을 고지. 안전, 건강, 환경보호 항목 불합격 경우 수입상 혹은 대리인에 폐기처분을 명하거나 반품처리통지서를 발급하여 반품처리. 기타항목이 불합격인 경우 수입상 혹은 대리인은 검험검역기구의 감독 하에 기술처리를 진행하며 기술처리가 불가능하거나 기술처리 후 여전히 불합격인 경우 반품 혹은 폐기처리(10조)
- 처음으로 수입하여 라벨검사에서 합격한 정량포장식품은 재수입에서 라벨등록

중빙과 중국어, 외국어 라벨샘플만 제출(12조)

□ 감독관리

- 국가질검총국은 정보화 플랫폼을 이용하여 수입정량포장식품라벨검사업무에 대하여 관리하며 각 지역 검험검역기구에서 구체적으로 실시하며 검사 합격된 수입포장식품라벨에 대하여 등록(14조)
- 수출입정량포장식품라벨이 검사 불합격이나 기술처리가 가능한 경우 재검사합격 전까지는 검험검역기구가 지정한 장소 혹은 인가한 감독관리장소에 보관(15조)
- 각 지역 검험검역기구는 라벨검험감독관리업무에서 불합격 사례 발견 시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질검총국에 보고(16조)

제 2 절 품목별 라벨 표기방법

가. 정량포장식품라벨통칙 GB7718-2011(중화인민공화국 위생부 2012.04.20실시)

1. 범위

- 동 기준은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정량포장식품라벨과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되지 않는 정량포장식품라벨에 적용하며 정량포장식품을 저장 운송하는 과정 중 보호하기 위한 식품저장 표기, 벌크 식품 및 즉석판매식품의 표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용어의 정의

- 2.1 정량포장식품 : 정량 포장되거나 포장재 및 용기 속에 제작된 식품, 그리고 일

정량의 범위 내에서 통일된 품질 혹은 부피 표기를 지니고 있는 식품을 포함

- 2.2 식품라벨 : 식품포장상의 문자, 도형, 부호와 모든 설명물
- 2.3 성분 : 제조 혹은 가공식품을 사용하는 상품에 존재(성질을 바꾼 형식존재도 포함)하는 그 어떤 물질, 식품첨가제도 포함
- 2.4 생산일자/제조일자 : 식품이 최종상품으로 되는 일자, 포장일자나 캔에 든 일자도 포함. 즉 식품 포장물 혹은 용기 중에 포장된 후 최종판매단위로 가는(완성)날짜
- 2.5 품질보증기간 : 정량포장식품라벨에 표시한 저장조건하에 품질을 보존하는 기한
- 2.6 규격 : 동일한 포장 안에 여러 포장식품이 들어가 있을 경우, 순함량과 내포된 개수에 관계에 대한 설명
- 2.7 주요전시면 : 소비자가 정량포장식품을 구매할 때 포장물 혹은 포장용기에서 가장 쉽게 관찰할 수 있는 면

3. 기본요구

- 3.1 정량포장식품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국가법률, 법규규정에 부합되어야 하고 관련 상품표준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 3.2 정량포장식품 라벨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명확하고 뚜렷하고 오래 유지되어야 하며, 소비자들이 구매할 때 쉽게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 3.3 정량포장식품 라벨의 모든 내용은 통속적이고 이해하고 쉽고 정확하고 과학적 인근거가 있어야 한다. 봉건미신, 선정성과 기타식품을 헐뜯거나 혹은 과학 영양상식을 위반하는 내용을 표시해서는 않된다.
- 3.4 정량포장식품 라벨의 모든 내용은 허위여서는 않되며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기만성 문자, 도형 등 방식으로 식품을 소개해서는 않되며, 글자크기 혹은 색깔차이로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 3.5 정량포장식품라벨의 모든 내용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암시적인 언어, 도형, 부호로 소비자들로 하여금 식품을 구매하게 하거나 모종의 성질이 다른 상품과 혼돈 되게 해서는 않된다.
- 3.6 예방과 치료 효과에 대한 내용을 표시하거나 암시하면 안된다. 비보건식품은 보건효과가 있다고 명시하거나 암시하면 안된다.
- 3.7 정량포장식품의 라벨은 포장물(용기)과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
- 3.8 정량포장식품의 라벨내용은 규범화된 한자를 사용하여야 하지만 등록된 상표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 3.8.1 병음 및 소수민족문자를 동시에 사용 가능하나 상응한 한자보다 크지 않아야 된다.
 - 3.8.2 동시에 외국어 사용이 가능하나 한자와 상응관계가 있어야 한다.(수입식품의 제조자와 주소, 외국 판매대리상의 명칭과 주소, 홈페이지 제외) 모든 외국어 문자는 상응하는 한자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국외등록상표 제외)
- 3.9 포장물 혹은 포장용기 최대표면 면적이 35cm²보다 클 때 강제표시 내용의 문자, 부호, 숫자의 높이가 1.8mm보다 작아서는 않된다.
- 3.10 한 판매단위의 포장 안에 다른 종류, 날개로 판매할 수 있는 독립포장이 있을 경우, 날개포장식품마다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
- 3.11 외포장물을 통해 뚜렷하게 내포장물 혹은 용기상의 모든 혹은 부분 강제표시 내용을 식별할 수 있을 경우 외포장물에 관련되는 내용을 중복적으로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4. 표시내용

- 4.1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정량포장식품 라벨 내용
 - 4.1.1 일반요구 : 식품명칭, 배합원료, 내용량, 규격, 제조상과(혹은)판매자, 주소, 연락처, 생산일자, 유통기한, 저장조건, 식품위생허가증번호, 제품기준번호와

기타 필요한 표시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4.1.2 식품명칭(食品名稱)

4.1.2.1 식품라벨의 뚜렷한 위치에 명확하게 식품의 진실속성을 반영하는 전용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4.1.2.1.1 국가표준 혹은 산업표준에서 이미 모 식품의 한 개 혹은 몇 개 명칭을 규정하였을 경우 그중의 하나 혹은 등효(等效) 명칭을 선택하여야 한다.

4.1.2.1.2 국가표준 혹은 산업표준규정에 없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 소비자가 오해하는 상용명칭 혹은 통속명칭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4.1.2.2 “새로 창조한 명칭”, “특이명칭”, “음역명칭”, “상호명칭”, “지역사투리명칭” 혹은 “상표명칭”은 표시할 수 있지만 명칭의 옆에 5.1.1.1에서 규정한 임의의 한 개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4.1.2.2. “새로 창조한 명칭”, “특이명칭”, “음역명칭”, “상호명칭”, “지역사투리명칭” 혹은 “상표명칭”속에 사람들이 식품속성을 오해하는 문자 혹은 용어(단어)가 들어있을 때 표시한 명칭의 옆에 동일한 문자크기로 식품진실속성을 나타내는 전용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4.1.2.2.2 식품진실속성이 전용명칭이 문자크기로 인해 사람들이 식품속성에 오해를 가지게 하였을 경우 동일한 문자크기로 식품 진실속성의 전용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주스음료’의 ‘주스’가 반드시 동일한 글자크기로 하여야 한다.

4.1.2.3 소비자들이 식품의 진실속성, 물리상태 혹은 제조방법에 대하여 오해를 가지지 않기 위하여 식품명칭 앞 혹은 식품명칭 뒤에 상응하는 단어 혹은 구절을 붙일 수 있다. 예를 들면 “건조한, 농축한, 복원한, 훈제한, 기름에 튀긴, 가루상태인, 알갱이 모양인” 등이 있다.

4.1.3 배합원료표(配料表)

4.1.3.1 정량포장식품의 라벨에 배합원료표를 표시하여야 한다. 단일성분 식품은 제외

4.1.3.1.1 배합원료표는 〈配料〉 혹은 〈配料表〉로 하여야 한다.

4.1.3.1.2 각종 배합원료는 제조 혹은 식품가공 때 투입량이 많은 순서에 따라 배열하며 투입량이 2%를 초과하지 않은 성분은 상술한 순서대로 배열하지 않아도 된다.

4.1.3.1.3 모종 배합원료가 2가지 혹은 2가지 이상의 기타 배합원료로 구성된 복합 배합원료(복합식품첨가제 불포함)일 경우 배합원료표에 복합성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하며 그 뒤에 괄호로 투입량이 많은 순서대로 복합배합원료의 원시배합원료를 표시하여야 한다. 모종의 복합배합원료가 국가표준 혹은 산업표준이 있을 경우 투입량이 식품총량의 25%보다 적을 때 복합배합원료의 원시배합원료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4.1.3.1.4 식품첨가제는 GB2760중 통용된 식품첨가제의 명칭을 표시해야 한다. 식품첨가제의 통용명칭은 식품첨가제 상세명칭으로 표기할 수 있고 식품첨가제 기능별명칭 및 식품첨가제 상세명칭 또는 국제코드(INS코드)를 동시에 표기할 수 있다.(표시방법 부록 B 참조). 통일된 정량포장식품 라벨은 부록 B중의 한가지 형식을 선택하여 식품첨가제를 표시해야 한다. 식품첨가제 기능별명칭표시와 국제코드형식을 동시에 채택할 경우 국제코드가 존재하지 않는 모종 식품첨가제 또는 알레르기유발물질 표시수요가 따를 때 상세명칭을 표기할 수 있다. 식품첨가제의 명칭은 제작방법이 포함되지 않는다. 첨가량이 식품 총량의 25%보다 적은 복합배합원료 중 함유된 식품첨가제는 GB2760 첨가원칙의 규정에 부합되고 동시에 최종상품에서 공예작용을 일으키지 않으면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4.1.3.1.5 식품제조 혹은 가공과정에 투입되는 물은 반드시 배합원료표에 표시하

여야 한다. 가공과정에서 휘발된 물 혹은 기타 휘발성 배합원료는 표시할 필요가 없다.

4.1.3.1.6 식용할 수 있는 포장물도 배합원료표에 원시배합원료를 표시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식용할 수 있는 캡슐, 캔디, 참쌀종이 등이다.

4.1.3.2. 아래의 식품배합원료는 표1 표시대로 유형소속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 표 1 】 성분리스트 표시방법

성분	유형소속명칭
각종 식물유 혹은 정제식물유, 올리브유를 포함하지 않음	“식물유” 혹은 “정제식물유” 수소첨가 처리를 통하였으면 <수소첨가> 혹은 <부분 수소첨가>라고 하여야 한다.
각종 전분, 화학적 성질변화전분 불포함	“전분”
투입량이 2%를 초과하지 않은 각종 향신료 혹은 향신료 침전물 (단일 혹은 합한 것)	“향신료”, “향신료류” 혹은 “복합향신료”
츄잉껌의 각종 젤라틴 물질제제	“츄잉껌 기초제”, “껌 베이스”
첨가량이 10%를 초과하지 않은 각종 꿀에 절인 과일	“꿀에 절인 과일”, “설탕에 절임한 과일”
식용 에센스, 향료	“식용 에센스”, “식용 향료”, “식용 에센스 향료”

4.1.4 배합원료의 정량표시(配料的定量标示)

4.1.4.1 식품라벨 혹은 식품설명서에 특별히 모종 혹은 여러가지 가치가 있고 특성이 있는 성분을 첨가하였다고 강조한 경우 강조한 성분의 첨가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4.1.4.2 식품라벨에 특별히 모종 혹은 여러가지 성분 함량이 비교적 낮은 경우 강조하는 성분이 완제품에서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4.1.4.3 식품명칭에 제기된 모종성분이 라벨에 특별히 강조하지 않은 경우 모종성분이 완제품에서 함량을 표시할 필요가 없다. 첨가량이 매우 적어 다만 향료로 사용하고 라벨에 특별히 강조하지 않은 경우에도 향료의 완제품 중 함량을 표시할 필요가 없다.

4.1.5 내용량과 규격(净含量和规格)

4.1.5.1 내용량의 표시는 반드시 순함량, 숫자와 법정계량단위로 구성(부록 C 참조)

4.1.5.2 법정계량단위에 근거하여 아래 방식으로 포장물(용기)중의 식품의 순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 a. 액체식품 : 체적사용 升 L(l), 毫升 mL(ml); 질량사용 克 g, 千克 kg
- b. 고체식품 : 질량사용 克 g, 千克 kg
- c. 반고체 혹은 점성(黏性)식품 : 질량사용 克 g, 千克 kg;
체적사용 升 L(l), 毫升 mL(ml)

4.1.5.3 내용량 계량단위는 표2에 따라야 한다.

Ⅱ <표 2> 내용량 계량단위 표시방법 Ⅱ

계량방식	내용량(Q) 범위	계량단위
체 적	Q < 1000mL	毫升 (mL) (ml)
	Q ≥ 1000mL	升 (L) (l)
질 량	Q < 1000 g	克 (g)
	Q ≥ 1000 g	千克 (kg)

4.1.5.4 내용량 문자부호의 최소높이는 표3의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Ⅱ <표 3> 내용량 문자부호의 최소높이 Ⅱ

내용량(Q) 범위	문자부호의 최소높이/ mm
5mL < Q ≤ 50mL 5g < Q ≤ 50g	2
50mL < Q ≤ 200mL 50g < Q ≤ 200g	3
200mL < Q ≤ 1L 200g < Q ≤ 1kg	4
Q > 1kg Q > 1L	6

- 4.1.5.5 내용량은 식품명칭과 함께 포장물 혹은 용기와 동일한 전시면에 배열하여야 한다.
- 4.1.5.6 용기 중 고체, 액체 두가지 물질인 식품 및 고체 물질이 주요 식품원료 일 경우, 내용량 표시 외 질량 또는 질량분수의 형식으로 고형물의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표시형식 부록 C 참조)
- 4.1.5.7 동일한 정량포장에 여러개 독립된 정량포장식품이 있을 경우 내용량 표시 외 규격도 표시해야 한다.
- 4.1.5.8 규격의 표시는 독립 정량포장식품의 내용량과 개수로 조성, 또는 개수만 표시하되 “规格” 2자는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독립 정량포장식품의 규격 인즉 내용량을 가르킨다(표시형식 부록C 참조)
- 4.1.6 생산자, 판매자의 명칭, 주소와 연락처(生产者, 经销者的名称, 地址和联系方式)
- 4.1.6.1 법에 근거하여 등록하여 제품안전품질책임을 질수 있는 생산자 명칭과 주소를 표시하여야 한다. 아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아래 규정대로 표시하여야 한다.
- 4.1.6.1.1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법률책임을 지는 그룹, 그룹회사의 지사(자회사)는 반드시 각자 명칭과 주소를 표시하여야 한다.
- 4.1.6.1.2 독립 법률책임을 지지 못하는 그룹의 지사(자회사) 혹은 그룹의 생산기지는 그룹과 지사(생산기지)의 명칭, 주소를 표시하여야 한다. 혹은 그룹의 명칭, 주소 및 산지만 표시하여도 된다. 산지는 행정 지역별구분에 따라 지시급(地市级)지역까지 표시한다.
- 4.1.6.1.3 위탁을 받고 정량포장식품을 가공할 경우 위탁업체와 수탁업체의 명칭과 주소를 표시하여야 한다. 혹은 위탁업체의 명칭과 주소, 산지만 표시하여도 된다. 산지는 행정 지역별구분에 따라 지시급(地市级)지역까지 표시한다.

4.1.6.2 법률책임을 지는 생산자 또는 경소상의 연락처표기는 전화, 팩스, 온라인 연락처 중 한 개 이상 또는 주소와 같이 표기하는 우편주소로 표기한다.

4.1.6.3 수입정량포장식품은 원산지 국가명 혹은 지역명(홍콩, 마카오, 대만을 말함)을 표시하여야 하고 중국에서 법에 따라 등록된 대리상, 수입상 혹은 판매상의 명칭과 주소를 표시하여야 한다.

4.1.7 일자표시(日期标示)

4.1.7.1 정량포장식품의 생산일자와 품질보증기한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일자표시를 <포장의 어느 부위를 보라>는 방식을 채택한다면 포장물의 구체적 부위를 표시해야 한다. 일자표시는 따로 붙이거나 추가 인쇄 또는 고쳐서는 안 된다.(표시형식 부록C 참조)

4.1.7.2 동일 정량포장에 다양한 생산일자 및 품질보증기한이 표시된 독립 정량포장식품이 들어있을 경우 외포장에 표시되는 품질보증기한은 유효기간이 제일 짧은 독립정량포장식품의 품질보증기한으로 표시한다. 외포장에 표시되는 생산일자는 최초 생산한 독립정량포장식품의 생산일자를 표시하거나 외포장 완성일자 혹은 독립정량포장식품의 생산일자와 품질보증기한을 각각 표시해도 된다.

4.1.7.3 년, 월, 일의 순서대로 일자를 표시해야 하며 이 순서를 지키지 않을 경우 날자표시순서에 대한 설명을 달아야 한다. (표시형식 부록 C 참조)

4.1.8 저장조건(贮存条件)

정량포장식품라벨은 저장조건을 표시해야 한다.(부록 C 참조)

4.1.9 식품생산허가증번호(食品生产许可证编号)

정량포장식품라벨은 식품생산허가증번호를 표시하여야 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4.1.10 제품표준번호(产品标准代码)

국내에서 생산하고 국내에서 판매하는 정량포장식품(수입은 불포함)은 반드시 집행표준코드와 순서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4.1.11 기타 표시내용

4.1.11.1 조사(방사선)식품(辐照食品)

4.1.11.1.1 이온화 방사선 또는 이온화 에너지 처리식품은 식품명칭 근처에 “辐照食品”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4.1.11.1.2 이온화 방사선 또는 이온화 에너지 처리 배합원료는 배합원료표에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4.1.11.2 유전자변형식품(转基因食品)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는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4.1.11.3 영양라벨(营养标签)

4.1.11.3.1 특수 식사료 식품과 영유아 전문공급 주·부식료 식품은 주요 영양성분 및 함량을 표시해야 하되 표시방식은 GB13432를 근거로 집행한다.

4.1.11.3.2 기타 예포장식품에 영양표시를 수요로 할 경우 표시방법은 관련 법규와 표준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4.1.11.4 질량(품질)등급(质量(品质)等级)

집행하는 제품표준이 질량(품질)등급을 명확히 규정한 식품은 반드시 질량(품질)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

4.2 직접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정량포장식품의 라벨표시방법

직접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정량포장식품라벨은 응당 4.1항의 상응한 요구에 따라 식품명칭, 규격, 내용량, 생산일자, 보존기간과 보존방법이 표시되어야 하고 기타 내용이 라벨에 표시되지 않았을 경우 설명서 또는 계약서에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

4.3 표시내용의 면제

4.3.1 아래 정량포장식품은 품질보증기간 표시를 면제할 수 있다.

에틸알코올 함량이 10% 또는 10%이상인 음료주, 식초, 식용염, 고체 설탕류, 미원

4.3.2 정량포장식품 포장물 또는 표장용기의 최대 표면면적이 10cm²보다 작을 경우 (최대표면면적계산방법 부록A 참조) 제품명, 내용량, 생산자(또는 판매자)의 명칭과 주소만 표시해도 된다.

4.4 추천 표시 내용

4.4.1 로트번호

제품의 수요에 근거하여 제품 로트번호를 표시할 수 있다.

4.4.2 식용방법

제품수요에 근거하여 용기 개봉방법, 식용방법, 조리방법, 재제조방법 등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설명을 표시할 수 있다.

4.4.3 알레르기 유발물질

4.4.3.1 아래 식품 및 그 제품이 알레르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만일 배합 원료로 사용되었을 때 배합원료표에 쉽게 판별이 가능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또는 배합원료표 근처에 제시를 달아야 한다.

- a. 글루텐이 함유된 곡물 및 그 제품(밀, 호밀, 보리, 귀리, 스펀트밀 또는 그들의 교잡품종류)
- b. 갑각류 동물 및 그 제품(새우, 랍스타, 게 등)
- c. 어류 및 그 제품
- d. 알(蛋)류 및 그 제품
- e. 땅콩 및 그 제품
- f. 대두 및 그 제품
- g. 우유 및 유제품(유당 포함)
- h. 견과류 및 씨(果仁)류 제품

5. 기타

- 국가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특수 심사와 비준이 필요한 식품은 그 라벨 표시도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함.

부록 A) : 포장물 또는 포장용기 최대 표면면적 계산방법

A.1 장방체형 포장물 또는 장방체형 포장용기의 계산방법

- 장방체형포장물 또는 장방체포장용기의 최대 한 개 측면의 높이(cm) 곱하기 넓이(cm)

A.2 원추형 포장물, 원추형 포장용기 또는 원추형 포장물, 원추형 포장물 용기에 근접한 포장물의 계산방법

- 포장물 또는 포장용기의 높이(cm) 곱하기 원 둘레 길이(cm)의 40%

A.3 기타 모양의 포장물 또는 포장용기의 계산방법

- 포장물 또는 포장용기 총 표면적의 40%
만약 포장물 또는 포장용기에 명확한 주요 전시면이 있을 경우 주요전시면의 면적을 최대표면면적으로 계산하여야 함.
포장포대 등 표면면적을 계산할 때 변두리밀봉면적을 감해야 함. 병 또는 캔의 표면면적을 계산할 때 어깨부분, 목 부분, 정상부분과 아랫부분의 볼록한 부분을 포함하지 않음.

부록 B) : 배합원료 중 식품첨가제의 표시방법

B.1 첨가량의 감소 순에 따라 식품첨가제의 상세명칭 전부 표시

- 배합원료 : 물, 전지분유, 크림, 식물유, 초콜릿(코코아엑상덩어리, 설탕, 코코아버터, 인지질, 지방산카스토르에스테르(PGPR), 식용에센스, 레몬황), 포도당 시럽, 프로필렌글리콜지방산에스테르, 카라기난, 구아검, 아나토, 맥

아텍스트린, 식용향료

B.2 첨가량의 감소 순에 따라 식품첨가제의 기능별 명칭 및 국제코드 전부 표시

- 배합원료 : 물, 전지분유, 크림, 식물유, 초콜릿(코코아엑상덩어리, 설탕, 코코아버터, 유화제(322, 476), 식용에센스, 착색제(102)), 포도당시럽, 유화제(477), 증점제(407, 412), 착색제(160b), 맥아텍스트린, 식용향료

B.3 첨가량의 감소 순에 따라 식품첨가제의 기능별명칭 및 상세명칭 전부 표시

- 배합원료 : 물, 전지분유, 크림, 식물유, 초콜릿(코코아엑상덩어리, 설탕, 코코아버터, 유화제(인지질, 지방산카르토르에스테르(PGPR)), 식용에센스, 착색제(레몬황)), 포도당시럽, 유화제(프로필렌글리콜지방산에스테르), 증점제(카라기난, 구아검), 착색제(아나토), 맥아텍스트린, 식용향료

B.4 식품첨가제항 통일표시 형식건립

B.4.1 일반원칙

직접 사용하는 식품첨가제는 식품첨가제항에 반드시 표시, 영양강화제, 식용에센스향료, 추잉껌기초제(胶基糖果中基础剂) 물질은 배합원료표의 식품첨가제항 외에 표시할 수 있다. 직접 사용하지 않는 식품첨가제는 식품첨가제항에 표시하지 않는다. 배합원료표 중 식품첨가제항의 표시순서는 사용된 각종 식품첨가제의 총중량에 따라 결정된다.

B.4.2 식품첨가제의 상세명칭 전부 표시

배합원료 : 물, 전지분유, 크림, 식물유, 초콜릿(코코아엑상덩어리, 설탕, 코코아버터, 인지질, 지방산카르토르에스테르(PGPR), 식용에센스, 레몬황), 포도당시럽, 식품첨가제(프로필렌글리콜지방산에스테르, 카라기난, 구아검, 아나토), 맥아텍스트린, 식용향료

B.4.3 식품첨가제의 기능별명칭 및 국가코드 전부 표시

배합원료 : 물, 전지분유, 크림, 식물유, 초콜릿(코코아엑상덩어리, 설탕, 코코아버터, 유화제(322, 476), 식용에센스, 착색제(102)), 포도당시럽, 식품첨가

제(유화제(477), 증점제(407, 412), 착색제(160b)), 맥아텍스트린, 식용향료
 B.4.4 식품첨가제의 기능별명칭 및 상세명칭 전부 표시

배합원료 : 물, 전지분유, 크림, 식물유, 초콜릿(코코아엑상덩어리, 설탕, 코코아버터, 유화제(인지질, 지방산카르토르에스테르(PGPR)), 식용에센스, 착색제(레몬황)), 포도당시럽, 식품첨가제(유화제(프로필렌글리콜지방산에스테르), 증점제(카라기난, 구아검), 착색제(아나토)), 맥아텍스트린, 식용향료

부록 C) : 부분 품목 라벨링에 대한 추천 표시양식

C.1 요약

본 부록은 부분 정량포장식품에 대한 라벨링 추천 양식 예시를 통해 매칭 된 항목을 표기할 때 사용할 수 있지만 이러한 양식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만약 식품의 특성이나 포장의 특징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조정을 통해 사용 시 반드시 추천 양식의 기본 함의와 일치해야 한다.

C.2 내용량과 규격 표시

내용량을 표시 할 때 계량단위는 통일적으로 g을 사용하며 구분 기호로는 콜론을 사용한다. 라벨링 시 실제 상품의 계량단위를 사용해야 하고 빈칸 혹은 기타 부호를 사용함으로써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C.2.1 단일 정량포장식품의 내용량(규격)의 표시

净含量(혹은 净含量/规格): 450g

净含量(혹은 净含量/规格): 225g(200g+25g)

净含量(혹은 净含量/规格): 200g+25증정

净含量(혹은 净含量/规格): (200+25)g

C.2.2 내용량과 고형물의 표시(ex: “통조림배시럽”)

净含量(혹은 净含量/规格): 425g 沥干物(혹은 固形物 혹은 배 토막): ≥250g

(혹은 $\geq 60\%$)

C.2.3 동일 정량포장 내 다양한 동질 정량포장식품 포함 시, 내용량과 규격의 표시

- 净含量(혹은 净含量/规格): 40g×5;
- 净含量(혹은 净含量/规格): 5×40g;
- 净含量(혹은 净含量/规格): 200g(5×40g);
- 净含量(혹은 净含量/规格): 200g(40g×5);
- 净含量(혹은 净含量/规格): 200g(5가지);
- 净含量: 200g 规格: 5×40g;
- 净含量: 200g 规格: 40g×5;
- 净含量: 200g 规格: 5가지;
- 净含量(혹은 净含量/规格): 200g(100g+50g×2);
- 净含量(혹은 净含量/规格): 200g(80g×2+40g);
- 净含量: 200g 规格: 100g+50g×2;
- 净含量: 200g 规格: 80g×2+40g;

C.2.4 동일 정량포장 내 다양한 이질 정량포장식품 포함시, 내용량과 규격의 표시

- 净含量(혹은 净含量/规格): 200g(A상품 40g×3, B상품 40g×2);
- 净含量(혹은 净含量/规格): 200g(40g×3, 40g×2);
- 净含量(혹은 净含量/规格): 100g A상품, 50g×2 B상품, 50g C상품;
- 净含量(혹은 净含量/规格): A상품: 100g, B상품: 50g×2, C상품: 50g;
- 净含量/规格: 100g(A상품), 50g×2(B상품), 50g(C상품);
- 净含量/规格: A상품 100g, B상품 50g×2, C상품 50g;

C.3 일자 표시

일자 중 년, 월, 일은 빈칸, 사선, 하이픈, 기간 등 부호로 분리하거나 구분기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년은 보통 4자리 수로 표시하며 작은 포장 식품의 경우 2자리 수로 표시하고 월, 일은 2자리 수로 표시한다.

일자의 표시형식

2010年 3月 20日:

2010 03 20; 2010/03/20; 20100320; 20일3월2010년; 3월20일2010년;

(月/日/年): 03202010; 03/20/2010; 03202010;

C.4 품질보증기한 표시

품질보증기한의 표시형식

....전 까지 식용 권장 함; (最好在....之前食(饮)用)

....전 까지 식용이 제일 좋다; (...之前食(饮)用最佳)

...전까지 제일 좋다; (...之前最佳)

해당 날짜까지 제일 좋다....; (此日期前最佳....)

해당 날짜까지 식용이 제일 좋다...; (此日期前食(饮)用最佳....)

유통기한은까지 입니다; (保质期至....)

유통기한 **개월(保质期....个月)(혹은 *日, 혹은 *天, 혹은 *周, 혹은 *年)

C.5 보관조건 표시

보관조건 표시 시 “贮存条件”, “贮藏条件”, “贮藏方法” 등 제목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보관조건의 표시 형식

상온(혹은 냉동, 냉장, 어두운 곳, 서늘하고 건조한 곳) 보관:

(常温(혹은 冷冻, 冷藏, 避光, 阴凉干燥处)保存)

-℃ 보관; (**-**℃保存)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 하십시오; (请置于阴凉干燥处)

상온에 보관하시고 개봉 후 냉장 보관 하십시오; (常温保存, 开封后冷藏)

온도: <<**℃, 습도: <<**℃ (温度: <<**℃, 湿度: <<**℃)

나. 정량포장식품영양라벨통칙 GB28050-2011(위생부, 2013.01.01실시)

- 1 범위 : 본 표준 정량포장식품영양라벨에 제시하는 영양정보의 묘사와 설명에 적용된다. 본 표준 보건의약품 및 정량포장식품특수음식용식품(预包装特殊膳食用食品)의 영양라벨표기에 적용하지 않는다.
- 2 용어와 정의
 - 2.1 영양라벨 : 정량포장식품라벨에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식품영양정보와 특성의 설명이며 영양성분표, 영양성명 및 영양성분기능성명을 포함한다. 영양라벨은 정량포장식품라벨의 일부분이다.
 - 2.2 영양소 : 식품 중에 특정한 생리역할을 갖추어 기체생장, 발육, 활동, 번식 및 정상적 다사를 유지에 필요한 물질을 말하며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광물질 및 비타민을 포함한다.
 - 2.3 영양성분 : 식품중의 영양소 및 영양소 이외의 영양과(혹은) 생리기능을 갖추는 기타 식물성분을 가리킨다. 각 영양성분의 정의는 GB/Z21922 <식품영양성분기본용어>에서 참조할 수 있다.
 - 2.4 핵심영양소 : 영양라벨 중의 핵심영양소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과 나트륨을 포함함.
 - 2.5 영양성분표 : 식품영양성분명칭, 함량 및 그 영양소참고시치에 차지한 백분비를 표기하는 규범한 표.
 - 2.6 영양소기준치 (NRV) : 식품영양라벨만 적용하여 식품영양성분 함량의 참고치를 비교하는 데에 적용됨.
 - 2.7 영양성명 : 식품영양특성에 대한 묘사와 성명, 예를 들어 열량 수준, 단백질 함량 수준. 영양성명은 함량성명과 비교성명을 포함한다.
 - 2.7.1 함량성명 : 식품 중 열량 혹은 영양성분 함량수준에 관한 성명. 성명용어는 '높' '낮' 혹은 '없음'등 포함한다.

2.7.2 비교성명 : 소비자가 알고 있는 같은 종료 인 식품의 영양성분함량 혹은 열량을 비교한 후의 성명. 성명용어는 ‘증가’ 혹은 ‘감소’등을 포함한다.

2.8 영양성분기능성명 : 한 영양성분이 인체 정상적 성장, 발육 및 정상생리기능 등 유지할 수 있는 역할의 성명.

2.9 반올림 간격 : 반올림 수치 최소한 수치의 단위.

2.10 식용 가능 부분 : 정량포장식품의 내용량은 식용 불가부분을 제거하여 남은 부분.

3 기본요구

3.1 정량포장식품영양라벨 표기하는 모든 영양정보가 진실해야 하며 객관적이어야 한다. 허위정보를 표기하는 것과 식품의 영양역할 및 기타 역할을 과대하면 안 된다.

3.2 정량포장식품영양라벨은 중문을 사용해야 한다. 정량포장식품 라벨은 동시에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지만 글자크기는 해당 중국어보다 작아야 한다.

3.3 영양성분표는 ‘블록다이어그램’형식으로 표시하여 하며 블록 사이즈가 제한 없음, 포장의 기선과 수직해야 한다. 표의 제목은 ‘영양성분표’이어야 함.

3.4 식품영양성분함량은 구체적 수치로 표기해야 하며 수치는 원료계산 혹은 제품 점검으로 취득할 수 있음. 각 영양성분의 영양소기준치(NRV)는 부록A 참조.

3.5 영양라벨의 양식이 부록B 참조, 식품업체가 식품의 영양특성, 포장면적의 크기와 모양 등 요소에 따라 그 중의 한 가지 양식을 선택할 수 있다.

3.6 영양라벨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최소한 포장단위에 표기해야 한다.

4 강제표기내용

4.1 모든 정량포장식품의 영양라벨이 강제로 표기해야 하는 내용은 열량, 핵심영양소의 함량 및 그 영양소기준치(NRV)에 차지한 백분비를 포함한다. 기타 성분을 표기할 때 적당한 형식을 취하여 열량과 핵심영양소의 표기를 더 눈에 띄이

게 해야 한다.

- 4.2 열량과 핵심영양소 이외에 기타 영양성분에 대하여 영양성명 혹은 영양성분기능성명을 할 때 영양성분표에서 해당되는 영양성분의 함량 및 그 영양소기준치에 차지한 백분비도 표기해야 함.
- 4.3 영양강화제를 사용한 예포장식품은 4.1 제시한 내용 이외에 영양성분표 중에 강화한 후 식품 중 해당된 영양성분의 함량 및 그 영양소기준치(NRV)에 차지한 백분비도 표기해야 함.
- 4.4 식품배합재료가 수소화와 (혹은) 부분 수소화유지를 함유할 경우, 영양성분표에 트랜스지방(산)의 함량도 표기해야 함.
- 4.5 상술 규정하지 않는 영양소기준치(NRV)의 영양성분은 함량만 표기하면 됨.

5 선택표기내용

- 5.1 강제표기내용을 제외하고 영양성분표 중에 표1 제시한 기타 성분도 선택 표기할 수 있음.
- 5.2 한 영양성분 함량 표기수치 표C.1의 함량요구와 제한여건에 부합할 경우, 해당된 성분이 함량성명을 표기할 수 있다. 성명방식이 표C.1 참조. 한 영양성분 함량은 표C.3의 요구와 여건에 부합할 경우, 해당된 성분이 비교성명을 표기할 수 있다. 성명방식은 표C.3 참조. 한 영양성분은 동시에 함량성명 및 비교성명의 요구에 부합할 경우, 두가지 성명방식을 동시 사용할 수 있거나 함량성명만 사용해도 됩니다. 함량성명과 비교성명의 동의어는 표C.2와 표C.4참조.
- 5.3 한 영양성분의 함량 표기수치 함량성명 혹은 비교성명의 요구와 여건에 부합할 경우, 부록D 제시하는 상응한 하나 혹은 여러 개의 영양성분기능성명 기준용어를 사용할 수 있음. 기능성명용어에 대하여 어떤 형식의 수정, 첨가 및 합병을 하면 안 된다.

6 영양성분의 표기방식

- 6.1 정량포장식품 중 열량과 영양성분의 함량은 매100그램(g)과(혹은) 매100밀리

리터(mL)과(혹은) 한 몫의 식품가능부분 중의 구체적인 수치로 표기해야한다. 한 몫으로 표기할 때 식품의 양을 표기해야 함. 한 몫의 크기 식품의 특점 혹은 추천물량에 의거하여 규정함.

6.2 영양성분표 중 강제표기 및 선택 가능 표기의 영양성분의 명칭, 순서, 표기단위, 반올림 간격, '0'경계치 등 표1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한 영양성분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 순서대로 위로 이동함.

6.3 표1를 제외하고 GB14880과 고생부 공고 중 강화를 허락된 기타 영양성분을 표기할 때 표1에 나열한 영양소 뒤에 표기하여야 한다.

▮ 표1 열량, 영양성분명칭, 순서, 단위, 반올림 간격 및 '0'경계치 ▮

열량, 영양성분의 명칭 및 순서	단위	반올림 간격	'0'경계치(매100g 혹은 100ml)
열량	킬로줄(kJ)	1	≤17kJ
단백질	그램(g)	0.1	≤0.5g
지방	그램(g)	0.1	≤0.5g
포화지방(산)	그램(g)	0.1	≤0.1g
트랜스지방(산)	그램(g)	0.1	≤0.3g
단불포화지방(산)	그램(g)	0.1	≤0.1g
다불포화지방(산)	그램(g)	0.1	≤0.1g
콜레스테롤	밀리그램(mg)	1	≤5mg
탄수화물	그램(g)	0.1	≤0.5g
설탕(유당)	그램(g)	0.1	≤0.5g
식이섬유(혹은 단체성분, 혹은 수용성 식이섬유, 비수용성 식이섬유)	그램(g)	0.1	≤0.5g
나트륨	밀리그램(mg)	1	≤5mg
비타민A	(μgRE)	1	≤8μgRE
비타민D	마이크로그램(μg)	0.1	≤0.1μg
비타민E	(mg α-TE)	0.01	≤0.28mg α-TE
비타민K	마이크로그램(μg)	0.1	≤1.6
비타민B1 (티아민)	밀리그램(mg)	0.01	≤0.03mg
비타민B2	밀리그램(mg)	0.01	≤0.03mg
비타민B6	밀리그램(mg)	0.01	≤0.03mg
비타민B12	마이크로그램(μg)	0.01	≤0.05μg

열량, 영양성분의 명칭 및 순서	단위	반올림 간격	'0'경계치(매100g 혹은 100ml)
비타민C(아스코르브산)	밀리그램(mg)	0.1	≤2.0mg
니코틴산	밀리그램(mg)	0.01	≤0.28mg
엽산	(μg) 혹은 (μg DFE)	1	≤8μg
판토텐산	밀리그램(mg)	0.01	≤0.10mg
비오틴	마이크로그램(μg)	0.1	≤0.6μg
콜린	밀리그램(mg)	0.1	≤9mg
인	밀리그램(mg)	1	≤14mg
칼륨	밀리그램(mg)	1	≤20mg
마그네슘	밀리그램(mg)	1	≤6mg
칼슘	밀리그램(mg)	1	≤8mg
철	밀리그램(mg)	0.1	≤0.3mg
아연	밀리그램(mg)	0.01	≤0.30mg
요오드	마이크로그램(μg)	0.1	≤3.0μg
셀레늄	마이크로그램(μg)	0.1	≤1.0μg
구리	밀리그램(mg)	0.01	≤0.03mg
불소	밀리그램(mg)	0.01	≤0.02mg
망가니즈	밀리그램(mg)	0.01	≤0.06mg

- a. 영양성분의 표기단위가 표 중의 중문 혹은 영문으로 표기할 수 있거나 둘 다 사용할 수 있음
 b. 한 영양성분 함량수치 ≤'0'경계치, 함량은 '0'로 표기해야 함. '뉘'으로 계량단위를 할 사용할 때 매100mg 혹은 100ml의 '0' 경계치 규정에 부합해야 함.
 c. 유 및 유제품의 영양라벨은 직접 유당을 표기할 수 있음.

6.4 제품 유통기한 안에 열량과 영양성분함량 허용오차범위는 표2 제시한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 표2 열량 및 영양성분함량의 허용 오차범위 】

열량과 영양성분	허용오차범위
식품의 단백질, 다불포화지방(산), 탄수화물, 설탕(유당만), 수용성 식이섬유, 비수용성 식이섬유 및 그 단체, 비타민(비타민D, 비타민A 제외), 광물질(나트륨 제외), 강화한 기타 영양성분	≥80% 표기치
식품 중 열량 및 지방, 포화지방(산), 반식지방(산), 콜레스테롤, 나트륨, 당(유당 제외)	≤120% 표기치
식품 중 비타민A와 비타민D	80%~180% 표기치

7 영양라벨 강제표기를 면제한 정량포장식품

- 생선식품, 날고기, 물고기, 야채, 과일, 난류
- 알코올함량 \geq 0.5%의 음료주류
- 포장 총면적 \leq 100cm² 혹은 최대 표면면적 \leq 20cm²의 식품
- 즉시 제작하여 판매하는 식품
- 포장하는 음용수
- 매일식용량 \leq 10g 혹은 10ml의 예포장식품
- 기타법률법규표준에 규정하는 영양라벨을 안 표기해도 되는 정량포장식품
영양라벨 강제표기를 면제한 정량포장식품이 포장에 어떠한 영양정보를 나타
날 경우, 본 표준을 참조하여 이행하여야 함.

부록 A) : 식품라벨영양소기준치(NRV) 및 그 사용방법

A.1 식품라벨영양기준치(NRV)

영양성분	NRV	영양성분	NRV
열량 ^a	8400kJ	엽산	400 μ g DFE
단백질	60g	판토텐산	5mg
지방	\leq 60g	비오틴	30 μ g
포화지방산	\leq 20g	콜린	450mg
콜레스테롤	\leq 300mg	칼슘	800mg
탄수화물	300g	인	700mg
식이섬유	25g	칼륨	2000mg
비타민A	800 μ gRE	나트륨	2000mg
비타민D	5 μ g	마그네슘	300mg
비타민E	14mg α -TE	철	15mg
비타민K	80 μ g	아연	15mg
비타민B1	1.4mg	요오드	150 μ g
비타민B2	1.4mg	셀레늄	50 μ g
비타민B6	1.4mg	구리	1.5mg
비타민B12	2.4 μ g	불소	1mg
비타민C	100mg	망가니즈	3mg
니코틴산	14mg		

^a열량은 2000kcal와 대등.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제공하는 열량은 각각 총열량의 13%, 27%, 60%

A.2 사용목적 및 방식

열량 혹은 영양성분의 함량을 비교하는 것과 묘사에 적용됨. 영양성명과 0 수치 표기할 때 기준으로 삼음.

사용방식은 영양성분 함량이 영양소기준치(NRV)에서 차지하는 백분비.

A.3 계산

영양성분함량이 영양소기준치(NRV)에서 차지하는 백분비 계산공식(A.1):

$$NRV\% = X/NRV \times 100\%$$

X=식품중 모 영양소의 함량

NRV=해당된 영양소의 영양소기준치

부록 B) : 영양라벨형식

B.1 본 부록이 예포장식품 영양라벨의 형식을 규정한다.

B.2 아래 6가지 형식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영양라벨을 표기해야 한다.

B.2.1 열량과 핵심영양소만 표기하는 형식

열량과 핵심영양소만 표기하는 형식 예1 참조

예1

■ 营养成分表(영양성분표) ■

项目	每100克(g) 혹은 100毫升(ml) 혹은 每份	营养素参考值% 혹은 NRV%
能量 (열량)	千焦(kJ)	%
蛋白质 (단백질)	克(g)	%
脂肪 (지방)	克(g)	%
碳水化合物 (탄수화물)	克(g)	%
钠 (나트륨)	毫克(mg)	%

B.2.2 더 많은 영양성분을 표기하는 형식

더 많은 영양성분을 표기하는 형식 예2 참조

예2

| 营养成分表(영양성분표) |

项目	每100克(g) 혹은 100毫升(ml) 혹은 每份	营养素参考值% 혹은 NRV%
能量 (열량)	千焦(kJ)	%
蛋白质 (단백질)	克(g)	%
脂肪 (지방)	克(g)	%
-饱和脂肪 (포화지방)	克(g)	
胆固醇 (콜레스테롤)	毫克 (mg)	%
碳水化合物 (탄수화물)	克(g)	%
-糖 (설탕)	克(g)	
膳食纤维 (식이섬유)	克(g)	%
钠 (나트륨)	毫克 (mg)	%
维生素A (비타민A)	微克视黄醇当量(μgRE)	%
钙 (칼슘)	毫克 (mg)	%

주의: 적당한 형식을 사용하여 핵심영양소를 더 뜨이게 해야 함.

B.2.3 외국어 표기하는 형식

외국어를 표기하는 영양라벨 예3 참조

예3

【 营养成分表/nutrition information 】

项目 Items	每100克(g) 혹은 100毫升(ml) 혹은 每份 per 100g/100ml or per serving	营养素参考值% NRV%
能量 energy	千焦(kJ)	%
蛋白质 protein	克(g)	%
脂肪 fat	克(g)	%
碳水化合物 carbohydrate	克(g)	%
钠 sodium	毫克 (mg)	%

B.2.4 가로형식

가로형식

가로형식 영양라벨 예4 참조

예4

【 营养成分表(영양성분표) 】

项目	每100克(g) 혹은 100毫升(ml) 혹은 每份	营养素参考值 % 혹은 NRV%	项目	每100克(g) 혹은 100毫升(ml) 혹은 每份	营养素参考值 % 혹은 NRV%
能量 (열량)	千焦(kJ)	%	蛋白质 (단백질)	克(g)	%
碳水化合物 (탄수화물)	克(g)	%	脂肪 (지방)	克(g)	%
钠 (나트륨)	毫克 (mg)	%	-	-	%

주의: 포장특성에 따라 영양성분 좌에서 우까지 나열하여 2칸 혹은 이상 표기한다.

B.2.5 문자형식

포장의 총면적이 100cm²보다 작을 때 영양성분을 표기하는 경우, 표 아니

다른 형식으로 표기할 수 있으며 영양기준치(NRV) 생략해도 된다. 포장특성에 따라 영양성분 좌에서 우까지 혹은 위에서 아래로 나열해도 된다. 예5 참조.

예 5:

营养成分表(영양성분표)/100g, 能量(열량)××kJ, 蛋白质(단백질)××g, 碳水化合物(탄수화물)××g, 钠(나트륨)××mg.

B.2.6 영양성명과 영양성분기능성명을 표기하는 영양라벨 예6참조

예6

Ⅰ 营养成分表(영양성분표) Ⅰ

项目	每100克(g) 혹은 100毫升(ml) 혹은 每份	营养素参考值% 혹은 NRV%
能量 (열량)	千焦(kJ)	%
蛋白质 (단백질)	克(g)	%
脂肪 (지방)	克(g)	%
碳水化合物 (탄수화물)	克(g)	%
钠 (나트륨)	毫克(mg)	%

영양성명: 저지방××

영양성분기능성명: 매일 음식 중 지방이 제공하는 열량 비례는 총열량의 30% 초과하면 적당하지 않다.

영양성명, 영양성분기능성명이 라벨의 임의 위치에 표기해도 됨. 글자크기는 식품명칭과 상표보다 크면 안 됨.

부록 C) : 열량과 영양성분함량성명과 비교성명의 요구, 여건과 동의어

C.1 표C.1 정량포장식품열량과 영양성분함량성명의 요구와 여건

C.2 표C.2 정량포장식품열량과 영양성분함량성명의 동의어

C.3 표C.3 정량포장식품열량과 영양성분비교성명의 요구와 여건

C.4 표C.4 정량포장식품열량과 영양성분비교성명의 동의어

【 표C.1 영양성분함량성명의 요구와 여건 】

구분	함량성명방식	함량요구	제한여건
열량	무열량	≤17kJ/100g(고체) 혹은 100ml(액체)	지방에서 생긴 열량≤총열량의 50%
	저열량	≤170kJ/100g 고체 ≤80kJ/100ml 액체	
단백질	저단백질	단백질에서 생긴 열량≤총 열량의 5%	
	저단백질 내원, 혹은 단백질 함유	매 100g 함량≥10% NRV 매 100ml 함량≥5% NRV 혹은 매 420kJ 함량함량≥5% NRV	
	단백질함량이 높다. 혹은 풍부하다.	매 100g 함량≥20% NRV 매 100ml 함량≥10% NRV 혹은 매 420kJ 함량함량≥10NRV	
지방	무지방 혹은 불포함	≤0.5g/100g(고체) 혹은 100ml (액체)	
	저지방	≤0.3g/100g 고체; ≤1.5g/100ml 액체	
	비계가 적다	지방함량≤10%	축육과 가금만 제한
	탈지	액체 우유과 요구르트: 지방함량≤0.5%; 분유: 지방함량≤1.5%	유제품만 제한
	불포화지방이 없음 혹은 불포함	≤0.1g/100g(고체) 혹은 100ml (액체)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의 총화만 가리킨다.
	저포화지방	≤1.5g/100g 고체 ≤0.75g/100ml 액체	1.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의 총화만 가리킨다. 2. 여기에서 생긴 열량≤총열량의 10%
	트랜스지방이 없음 혹은 불포함	≤0.3g/100g(고체) 혹은 100ml (액체)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이 없음 혹은 불포함	≤5mg/100g(고체) 혹은 100ml (액체)	동시에 저포화지방과 지방의 성명함량요구 및 제한여건에 부합

구분	함량성명방식	함량요구	제한여건
	저 콜레스테롤	≤20mg/100g 고체 ≤10mg/100ml 액체	하여야 함
탄수화물 (설탕)	설탕이 없음 혹은 불포함	≤0.5g/100g(고체) 혹은 100ml (액체)	
	저당	≤5g/100g(고체) 혹은 100ml (액체)	
	저유당	유당함량≤2g/100g(ml)	
	유당이 없음	유당함량≤ 0.5g/100g(ml)	유제품만 제한
식이섬유	식이섬유 내원 혹은 식이섬유를 함유함	≥3g/100g(고체) ≥1.5g/100ml(액체) 혹은 ≥1.5g/420kJ	식이섬유 총량이 함량요구에 부 합하거나 수용성 식이섬유, 비 수용성 식이섬유 혹은 단체성분 중 임의의 하나에 함량요구에 부합함
	식이섬유 함량이 높 다 혹은 풍부하다, 혹은 내원이 좋다.	≥6g/100g(고체) ≥3g/100ml(액체) 혹은 ≥1.5g/420kJ	
나트륨	나트륨이 없음 혹은 불포함	≤5mg/100g(고체) 혹은 100ml (액체)	‘나트륨’ 성명의 성명에 부합한 경우 ‘염’자로 ‘납’자를 대체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저염’, ‘염 분 줄임’
	나트륨 함량이 아주 낮다.	≤40mg/100g(고체) 혹은 100ml (액체)	
	나트륨 함량이 적다.	≤120mg/100g(고체) 혹은 100ml (액체)	
비타민	비타민×내원 혹은 비타민 함유×	매 100g≥15% NRV 매 100ml≥7.5% NRV 혹은 매 420kJ≥5%NRV	‘다양한 비타민’ 함유하는 것은 3가지 및(혹은) 3가지 이상의 비타민함량이 ‘함유’의 성명요구 에 부합하는 것을 의미
	비타민 함량이 높다 혹은 풍부하다.	매 100g≥30% NRV 매 100ml≥15% NRV 혹은 매 420kJ≥10%NRV	‘다양한 비타민’ 대량으로 함유 하는 것은 3가지 및(혹은) 3가 지 이상의 비타민함량이 ‘함유’ 의 성명요구에 부합하는 것을 의미
광 물 질 (나트륨 불포함)	×내원, 혹은 ×함유	매 100g≥15% NRV 매 100ml≥7.5% NRV 혹은 매 420kJ≥5%NRV	‘다양한 광물질’ 함유하는 것은 가지 및(혹은) 3가지 이상의 광 물질함량이 ‘함유’의 성명요구에 부합하는 것을 의미
	높다. 혹은 ×풍부하다	매 100g≥30% NRV 매 100ml≥15% NRV 혹은 매 420kJ≥10%NRV	‘다양한 광물질’ 대량으로 함유 하는 것은 3가지 및(혹은) 3가 지 이상의 광물질함량이 ‘함유’ 의 성명요구에 부합하는 것을 의미

‘뭉’으로 식품계량단위로 삼을 때 100g(ml)의 함량요구에 부합하여야만 성명할 수 있음

Ⅲ C.2 영양성분함량성명의 동의어

표준어	동의어	표준어	동의어
불포함, 무	영 '0', 없음, 100% 불포함, 무, 0%	함유, 내원	제공, 함유, 있음
아주 낮다.	아주 적다.	대량으로 함유, 높다.	내원이 좋다. ×× 풍부하다. 풍부한 ××, 높은×× 제공함
낮음	적음, 지방이 적다*.		

* '지방이 적다.' 저지방성명에만 적용됨

Ⅲ C.3 열량과 영양성분비교성명의 요구와 여건

비교성명의 방식	요구	여건
열량 감소	참고식품과 비교하여, 열량이 25% 이상 감소함	참고식품(기준식품)이 소비자들이 잘 알고 있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같은 종류 혹은 같은 속성의 식품이어야 함
단백질 증가 혹은 감소	참고식품과 비교하여, 단백질이 25%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함	
지방 감소	참고식품과 비교하여, 지방이 25% 이상 감소함	
콜레스테롤 감소	참고식품과 비교하여, 콜레스테롤이 25% 이상 감소함	
탄수화물 증가 혹은 감소	참고식품과 비교하여, 탄수화물이 25%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함	
설탕 감소	참고식품과 비교하여, 설탕이 25% 이상 감소함	
식이섬유 증가 혹은 감소	참고식품과 비교하여, 식이섬유가 25%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함	
나트륨 감소	참고식품과 비교하여, 나트륨이 25% 이상 감소함	
광물질 증가 혹은 감소	참고식품과 비교하여, 광물질이 25% 이상 감소함	
비타민 증가 혹은 감소	참고식품과 비교하여, 비타민이 25% 이상 감소함	

Ⅲ C.4 비교성명의 동의어

표준어	동의어	표준어	동의어
증가	증가 ×% (×배)	감소	감소×% (×배)
	증 ×% (×배)		감 ×% (×배)
	가 ×% (×배)		소 ×% (×배)
	제고×% (×배)		줄임 ×% (×배)
	첨가×% (×배)		하락 ×% (×배)
	증가×%, 제고(×배)		하락 ×% (×배) 등

부록 D) : 열량 및 영양성분 기능 표준용어 성명

D.1 본 부록은 열량 및 영양성분 기능 표준용어 성명에 대해 규정했다.

D.2 열량

인체는 생명활동을 지속함에 있어서 열량이 필요하다.

생물체의 성장발육과 일체 행동은 열량이 필요하다.

일정한 열량은 양호한 건강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열량과다섭취, 운동부족은 비만 및 과다체중과 관련이 있다.

D.3 단백질

단백질은 인체의 주요한 구성물질이자 각종 아미노산을 제공하고 있다.

단백질은 인체생명활동 중에 꼭 필요한 중요물질이며 조직의 형성과 성장에 도움이 된다.

단백질은 인체조직의 구성 및 회복에 도움이 된다.

단백질은 조직의 형성과 성장에 도움이 된다.

단백질은 조직형성과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영양성분이다.

D.4 지방

지방은 고 열량을 제공한다.

하루당 섭취하는 음식 중에서 지방이 제공하는 열량은 총 열량의 30%을 초과하면 안 된다.

지방은 인체의 중요한 조성성분이다.

지방은 지용성비타민의 흡수에 도움이 된다.

지방은 인체 필수 지방산을 제공한다.

D.4.1 포화지방

포화지방은 식품 중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촉진한다.

포화지방의 섭취량이 많을 경우 건강에 해롭다.

포화지방을 과다 섭취하였을 경우 콜레스테롤의 수치가 높아지므로 섭취량은 하루당 총 열량의 10%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D.4.2 트랜스 지방산

트랜스 지방산은 과다 섭취 시 건강에 해로움으로 하루당 섭취량은 2.2g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트랜스 지방산은 과다 섭취 시 건강에 해로움으로 섭취량은 하루 총 열량의 1%보다 적어야 된다.

트랜스 지방산을 과다 섭취 시 콜레스테롤의 수치가 높아짐에 따라 심 혈관 질병의 발병률이 높아진다.

D.5 콜레스테롤

성인 하루당 섭취하는 음식 중 콜레스테롤 섭취량은 300mg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D.6 탄수화물

탄수화물은 인간이 생존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물질이자 열량 주요 근원이다.

탄수화물은 인간이 필요 되는 열량의 주요 근원이다.

음식 중 탄수화물은 총 열량의 60%좌우를 차지한다.

D.7 식이섬유

식이섬유는 정상적인 장 기능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식이섬유는 저 열량 물질이다.

D.8 나트륨

나트륨은 인체의 수분을 조절 할 수 있고 산알칼리 평형을 유지한다.

성인 한 명이 하루당 소금섭취량은 6g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나트륨을 과다 섭취 시 건강에 해롭다.

D.9 비타민 A

비타민 A는 암 시력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비타민 A는 피부와 점막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D.10 비타민 D

비타민 D는 칼슘의 흡수를 촉진한다.

비타민 D는 골격과 이발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비타민 D는 골격형성에 도움이 된다.

D.11 비타민 E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이 있다.

D.12 비타민 B1

비타민 B1은 열량대사 중 꼭 필요한 성분이다.

비타민 B1은 신경계통의 정상적인 생리기능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D.13 비타민 B2

비타민 B2은 피부와 점막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비타민 B2은 열량대사 중 꼭 필요한 성분이다.

D.14 비타민 B6

비타민 B6은 단백질의 대사와 이용함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

D.15 비타민 B12

비타민 B12는 적혈구의 형성에 도움이 된다.

D.16 비타민 C

비타민 C는 피부와 점막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비타민 C는 골격과 이발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비타민 C는 철의 흡수를 촉진하는 작용을 한다.

비타민 C는 항산화 작용이 있다.

D.17 니코틴산

니코틴산은 피부와 점막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니코틴산은 열량대사 중 꼭 필요한 성분이다.

니코틴산은 신경계통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D.18 엽산

엽산은 태아의 두뇌와 신경계통의 정상적인 발육에 도움이 된다.

엽산은 적혈구의 형성에 도움이 된다.

엽산은 태아의 정상적인 발육에 도움이 된다.

D.19 판토텐산

판토텐산은 열량대사와 조직형성의 중요한 성분이다.

D.20 칼슘

칼슘은 인체 골격과 이발의 주요한 조성성분으로서 많은 생리기능들이 칼슘이 필요하다.

칼슘은 골격과 이발의 주요성분으로서 골밀도를 유지한다.

칼슘은 골격과 이발의 발육에 도움이 된다.

칼슘은 골격과 이발을 더욱 단단하게 한다.

D.21 마그네슘

마그네슘은 열량대사, 조직형성 및 골격발육의 중요한 성분이다.

D.22 철

철은 적혈구 형성의 중요한 성분이다.

철은 적혈구 형성의 필요 물질이다.

철은 적혈구의 형성에 꼭 필요하다.

D.23 아연

아연은 어린이들의 발육을 함에 있어서 필요물질이다.

아연은 식욕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

아연은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된다.

D.24 요오드

요오드는 갑상선이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함에 있어서의 필요물질이다.

다. 정량포장특수식용식품라벨통칙

GB13432-2004(국가질검총국, 2005.10.01실시)

□ 특수식용식품(foods for special dietary uses)의 정의

- 부분 특수소비자들의 생리수요 혹은 부분 질환환자의 영양수요에 따라 특수 배합방법으로 가공한 식품으로 성분함량이 일반식품에 비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음

□ 기본요구

- 정량포장식품라벨통칙의 규정에 부합되어야하며 이하 내용 표기금지
 - 질병 예방, 완화, 치료 혹은 치유작용
 - 회춘, 연녀익수, 검은머리재생, 치아갱생, 항암, 암치료 혹은 유사용어
 - 식품명칭에 약물명칭 혹은 약물도안 추가, 피료, 보건기능을 암시하는 명칭

□ 강제표기내용

- 식품명칭
 - 정량포장식품라벨통칙 규정에 따라 표기
 - 특수식용식품 정의에 부합되는 식품명칭에만 영아조제분유, 무당두유(당뇨병환자용), 철강화고단백두유(빈혈환자용) 등 특수의미가 있는 수식어 사용 가능
- 배합원료 리스트 및 배합원료정량표기
 - 정량포장식품라벨통칙 규정에 따라 표기
- 칼로리 및 영양소
 - 제품의 실제 영양소로 표기, 영양강화제 첨가시 강화영양제함량 표기
- 내용량 및 고형물함량
 - 정량포장식품라벨통칙 규정에 따라 표기
- 제조사, 경소상 명칭 및 주소
 - 정량포장식품라벨통칙 규정에 따라 표기
- 일자표기 및 저장설명

- 정량포장식품라벨통칙 규정에 따라 생산일자와 품질보증기한 표기
- 품질보증기한 혹은 유통기한이 저장조건과 관련되는 경우 특수저장조건 표기
- 개봉 후 저장이 적당하지 않거나 원 포장내 저장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제시
- 식용방법 및 적합군체
 - 식용방법, 매일 혹은 매찬 식용량 표기
 - 식용에 적합한 소비자 군체 표기
- 제품표준번호 & 품질등급 & 기타강표기내용 & 강제표기내용의 면제
 - 정량포장식품라벨통칙 규정에 따라 표기

표기 허용내용

- 칼로리, 영양소 함량 수준 성명
- 칼로리, 영양소 함량 비교 성명
- 영양소 작용 성명

추천 표기내용

- 영양성분 표기에 <중국주민식사영양소참고섭취량>중 추천 섭취량과 비교분석 표기
- ※ 자료원 :
http://www.sac.gov.cn/SACSearch/outlinetemplate/gjcxjg_qwyd.jsp?bzNum=GB13432-2004

라. 정량포장음료주라벨통칙 GB10344-2005(국가질검총국. 2006.10.01실시)

음료주(alcoholic beverage) 정의

- 알코올 도수가 0.5%vol 이상 알코올음료로 발효주, 증류주와 배합주 포함

□ 기본요구

- 정량포장식품라벨통칙의 규정에 부합

□ 강제표기내용

- 명칭
 - 정량포장식품라벨통칙의 규정에 부합
- 배합원료리스트
 - 정량포장식품라벨통칙의 규정에 부합
- 알코올도수
 - 酒精度로 알코올도수 표기
- 맥아즙, 과즙함량
 - 맥주는 맥아즙 농도(°P 혹은 °) 표기
 - 과실주(포도주 제외)는 과즙함량 % 표기
- 제조사, 경소상 명칭 및 주소
 - 정량포장식품라벨통칙의 규정에 부합
- 일자 및 저장설명
 - 포장일자와 품질보증기한 년, 월, 일 순으로 표기
 - 품질보증기한 혹은 유통기한이 저장조건과 관련되는 경우 저장조건 표기
- 내용량
 - 정량포장식품라벨통칙의 규정에 부합
 - 일반 毫升 혹은 mL(ml), 升 혹은 L, l로 표기, 대용량 황주는 千克 혹은 kg 표기 가능
- 제품표준 & 품질등급
 - 정량포장식품라벨통칙의 규정에 부합
- 경고문구
 - 유리병 포장 맥주는 GB4927-2001 규정에 부합

- 생사허가증
 -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관리를 실시하는 주류는 생산허가증표기와 번호 표기
- 강제표기내용의 면제
 - 포도주와 알코올도수 10%vol 이상 기타 음료주는 품질보증기한 면제

□ 비 강제표기내용

- 생산로트번호
- 음용방법
- 칼로리 및 영양소
- 제품유형

※ 자료원 :

http://www.sac.gov.cn/SACSearch/outlinetemplate/gjcxjg_qwyd.jsp?bzNum=GB10344-2005

제 3 절 라벨링 사례

1. 막걸리 등록사례



중문 표기내용 : 제품명칭, 배합원료, 제품유형, 알코올도수, 원산국, 저장조건, 생산업체, 포장일자, 품질보증기한, 수입사&주소&연락처, 내용량

2. 커피음료 등록사례



중문 표기내용 : 제품명칭, 제품류형, 배합원료표, 내용량, 원산국, 제조사, 수입사&주소&전화, 생산일자, 품질보증기한, 저장방법, 영양성분

3. 고추장 & 탄산음료 등록사례

<p>2012.09.17 중국_비빔고추장 450 g</p> <p>103*61 금직 금박 6도</p>  <p>92*48</p>  <p>90*49 2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문 표기내용 - 제품명칭 - 상표 - 무색소, 방부제표기 - 내용량 - 수입표기 - 배합원료 - 원산국 - 생산일자 - 품질보증기한 - 생산업체&주소 - 수입상&주소&전화 - 주의사항 - 식용방법 - 영양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문 표기내용 - 제품명칭 - 제품류형 - 내용량 - 수입표기 - 배합원료 - 원산국 - 생산일자 - 품질보증기한 - 생산업체 - 수입상&주소&전화 - 영양성분
--	---	---	--

자료출처 및 참고자료

가. 웹사이트

- 국가질검총국 : <http://www.aqsiq.gov.cn>
-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 <http://www.cnca.gov.cn>
- 위생부 : <http://www.moh.gov.cn>

나. 관련법규

- 식품라벨관리규정
- 수출입정량포장식품라벨검험감독관리규정
- 정량포장식품라벨통칙(GB7718-2011)
- 정량포장특수식용식품라벨통칙(GB13432-2004)
- 정량포장음료주라벨통칙(GB10344-2005)
- 정량포장식품영양라벨통칙(GB28050-2011)

통관보류 및 억류사례

제 1 절 수입식품의 반품, 폐기사례

■ 2012년 상반기 한국산 수입식품 반품, 폐기사례 ■

구분	HSCODE	상품명칭	중량(톤)	불합격사유	조치 내역	세관
1월	1902200000	돼지고기만두	0.004	세균초과	폐기	심천
	1902200000	돼지고기만두	0.004	세균초과	폐기	심천
	1902303000	라면	0.24	수분초과	반품	심천
	1902303000	라면	0.36	수분초과	반품	심천
	2008993100	조미김	0.02	세균초과	반품	심천
	2008993100	조미김	0.02	세균초과	반품	심천
	2008993100	조미김	0.09	세균초과	반품	심천
2월	0401200000	우유	0.036	유통기한초과	폐기	산둥
	1905310000	과자	0.246	세균초과	폐기	산둥
	2104200000	즉석식품	0.00056	검역준입 미 획득	폐기	상해
	2104200000	즉석식품	0.00057	검역준입 미 획득	폐기	상해
	2104200000	즉석식품	0.00042	검역준입 미 획득	폐기	상해
	2104200000	즉석식품	0.00048	검역준입 미 획득	폐기	상해
	2104200000	즉석식품	0.00048	검역준입 미 획득	폐기	상해
3월	1704900000	무설탕 타블렛	0.017	서류미비	폐기	광둥
	1806900000	고체음료	0.017	세균초과	폐기	중경

구분	HSCODE	상품명칭	중량(톤)	불합격사유	조치 내역	세관
	2008199990	견과스낵	0.017	세균초과	폐기	광둥
	2106909090	현미녹차	0.018	세균초과	폐기	광둥
	2106909090	오미자차	0.14	서류미비	반품	광둥
	2106909090	옥수수수염차	0.036	세균초과	폐기	광둥
4월	1504200000	어유	0.1530	EPA, DHA 함량 불합격	반품	상해
	1504200000	어유 추출물	0.1500	EPA, DHA 함량 불합격	반품	상해
	1901900000	떡볶이	0.168	세균초과	반품	산둥
	1905900000	케익	0.264	화학물 검출	폐기	심천
	2201101000	광천수	1	세균초과	반품	산둥
5월	1701991010	설탕	115.2	세균초과	반품	주해
	1902303000	쌀국수	0.414	세균초과	폐기	북경
	1902309000	떡국	0.01304	세균초과	폐기	북경
	2202900099	토마토음료	2.0016	서류미비	반품	주해
6월	0401400000	목장우유	0.0252	유통기한초과	폐기	산둥
	1900590000	롯데파이	2.428	세균초과	폐기	요녕
	1902303000	라면	2.020196	원료 검역준입 미 획득	폐기	산둥
	2106909090	인삼엑기스	0.02	서류미비	반품	광서
	2106909090	인삼엑기스	0.006	서류미비	반품	광서

■ 2012년 6월 기타국산 수입식품 반품, 폐기사례(부분) ■

구분	HSCODE	상품명칭	산지	중량(톤)	불합격사유	조치 내역	세관
6월	0207142100	닭날개	브라질	4.95	화물 증서 불일치	폐기	상해
	0303540000	냉동고등어	인도네시아	0.0248	부패변질	폐기	산둥
	0303899090	냉동삼치	일본	0.007	증서 미제공	폐기	산둥
	0403100000	요구르트	호주	0.024	유통기한 초과	폐기	상해
	0403100000	딸기요구르트	스페인	1.782	증서 미제공	폐기	북경
	0409000000	꿀	브라질	0.0224	푸라실린 검출	반품	심천
	0813200000	건매실	말레이시아	0.312	소르브산 칼륨 초과	반품	산둥
	0902101000	국화차	미국	0.01188	세균초과	폐기	북경
	1211201000	서양삼	캐나다	7.98336	DDT 검출	반품	강소
	1601002090	독일소시지	독일	3.6502	검역준입 미 획득	반품	요녕
	1704900000	사탕	대만	0.019	라벨 불합격	반품	닝파

구분	HSCODE	상품명칭	산지	중량(톤)	불합격사유	조치 내역	세관
	1806310000	초콜릿	벨기에	0.024	증서 미비	폐기	상해
	19011000	조제분유	호주	0.072	세균초과	반품	강서
	1901100090	밀크	프랑스	0.80784	아세틸아디핀산이전분 검출	폐기	상해
	1902200000	물만두	호주	0.016	유통기한 초과	폐기	상해
	1904900000	시리얼	영국	0.01	수분 초과	폐기	상해
	1904900000	현미죽	대만	0.043	라벨 불합격	반품	녕파
	1905310000	과자	스페인	0.16	수분 초과	폐기	사천
	1905310000	쿠키	베트남	0.081	레몬향 사용	폐기	심천
	2007999000	블루베리잼	미국	0.0095	라벨 불합격	폐기	상해
	2008119000	땅콩스낵	인도네시아	0.51841	세균 초과	폐기	광둥
	2009610000	포주주스	캐나다	13.356	포장 파손	폐기	요녕
	2103909000	고추소스	호주	0.016	유통기한 초과	폐기	상해
	2104100000	버섯수프	대만	0.1038	세균 초과	폐기	북경
	2106909090	살구씨유	영국	0.0005	과산화 수치 초과	폐기	상해
	2106909090	두유	대만	0.18	라벨 불합격	반품	녕파
	2201901000	음용수	체코	15.66	세균 초과	반품	북경
	2201909090	설산수	이탈리아	3.696	세균 초과	폐기	절강
	2204210000	포도주	프랑스	0.45	철 초과	반품	심천
	2208200000	XO꼬냑	프랑스	0.135	감관 불합격	반품	심천
	2208902000	고량주	대만	2.05234	메틸알코올 초과	반품	강소
	2853009010	물	말레이시아	0.96	ph수치 초과	반품	심천
	3203001990	고추 추출물	인도	5.5	DDT 검출	반품	강소

제 2 절 지식재산권 보호사례

■ 2010년 지식재산권 보호 10대 사례 ■

일자	소속세관	수출입	관련 지식재산권	화물가치/건수	조치
2010.08.26	상해세관	수출	tiger 발전기	100만위안 -	압류 및 공안기관 통보 입안 수사
2010.06.29	의우세관	수출	nike, adidas 의류	- 8,580건	압류 및 공안기관 통보 입안 수사
2010.04.25	녕파세관	수출	adidas, lacoste, lv, chanel 등 모자 가방	2.3억위안 31,700건	압류 및 공안부 통 보 입안 수사
2010.11.06	하문세관	수출	marlboro 담배	621만위안 48,567보루	압류 및 공안기관 통보 입안 수사
2010.09.30	청도세관	수출	nike 의류	56,628불 2,788건	압류 및 공안기관 통보 입안 수사
2010.03.05	광주세관	해외주문 수출	gucci 의류	- 20,856건	벌금
2010.11.18	심천세관	수출	playstation 게임기	- 24,250건	압류 및 공안기관 통보 입안 수사
2010.04.23	공북세관	수입	2010상해엑스포표기 도용 차입	7,896불 2,400건	압류 및 벌금
2010.07.20	황포세관	수출	nivea 립스틱 montblanc 가방 등	- 1,640,000건	압류 및 공안기관 통보 입안 수사
2010.07.04	북경세관	수입	nissan 자동차부품	20,018불 482건	압류 및 입안 조사

주요국 수출현안 모니터링 - 중국

발 행 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발 행 일 : 2012년 12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7(양재동 aT센터)

문 의 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식품수출정보팀
02)6300-1408

※ 우리 공사는 임직원에 대한 부정비리 신고 편의를 도모하고자 수신자부담 「24시간 부정비리 신고 모바일 핫라인(080-112-2580)」을 개설하였습니다. 신고 내용은 비밀이 절대 보장되오니 안심하시고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KATI(www.kati.net)>자료실>발간책자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